

2015년도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시청자미디어재단

일시 2015년9월10일(목)

장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의 2015년도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 시정함과 동시에 예산안 심사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국감은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지혜와 경험을 살려 국민들의 고충을 잘 헤아리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국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국정감사 대상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4개 기관은 방송통신의 공적 책임성 확보,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방송광고 진흥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 속에서 언론의 자유와 방송통신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수감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ICT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방송과 통신의 파급력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등 국민들의 피해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재전송료를 둘러싼 분쟁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적정성과 그 한계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어 방송의 공정성과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통위, 방심위 등 관계기관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방송통신 규제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방송과 통신의 공익적 가치가 한층 강화될 수 있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방통위를 비롯한 수감기관에서도 국감 본연의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방송에서 전 과정을 녹화해서 중계방송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연대기구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국정감사 방청을 요청해 와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방청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을 요구한 참고인은 대부분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전부터 하루 종일 출석하기보다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질의가 끝나고 오후 추가질의가 시작할 때 출석해서 신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간사 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 시간은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관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서를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9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장	최성준
부위원장	장	허원제
상임위원	원	김재홍
상임위원	원	이기주
상임위원	원	고삼석
기획조정실장	장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장	전영만
이용자정책국장	장	박노익
방송기반국장	장	김재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장	박효종
부위원장	장	김성목
상임위원	원	장낙인
사무총장	장	허의도
기획조정실장	장	조기진

방송심의1국장	이종대
방송심의2국장	김인곤
통신심의국장	조광희
권익보호국장	박우귀
인터넷피해구제센터장	이은경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곽성문
감사	장태진
전무이사	홍지일
광고진흥본부장	이민주
미디어사업본부장	신성용
영업본부장	민원식
기획조정실장	김종량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이석우
경영기획실장	최수영
시청자진흥본부장	박태옥
부산센터장	이상조
광주센터장	배승수
강원센터장	신현상
대전센터장	홍미애
인천센터장	이충환
서울센터장	직무대행 류위훈

○위원장 홍문종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다시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존경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4년 4월에 출범한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방송서비스 활성화,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등 7대 주요 정책과제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임기의 절반이 다 되어가는 만큼 그간에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제들이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과 공공성 강화입니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6년 이후 적용되는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을 금년 4월에 사전공표하여 방송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으며 종편 PP 4사의 2014년도 재승인 조건 이행 실적을 점검, 콘텐츠 투자가 미흡하거나 재방 비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여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이행실적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 6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중소방송의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이나 자체 제작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방송의 제작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의 시청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118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46억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방송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일반 국민의 시청편의 제고를 위해 수화 화면의 크기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스마트 수화방송의 실험방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매체·다채널 환경에서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재난방송 의무대상 사업자를 지상파나 종편·보도PP 외에 SO, 위성방송, IPTV로 확대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9억 원의 예산으로 터널이나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 대한 중계설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방송통신서비스의 활성화입니다.

EBS가 초·중등 학습과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편성된 다채널 시범서비스, 즉 MMS를 매일 19시간씩 전국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고 국회, 미래부와 함께 지상파 UHD 방송용 주파수 분배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상파 UHD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침체되는 방송광고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방송콘텐츠 제작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방송광고총량제를 도입하고 가상·간접광고의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하여 전국 6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미디어꿈나무에 대한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방통위와 중국 광전총국 간 장관급 면담에서 한중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을 맺기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메르스로 한동안 주춤했던 한류의 바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입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가는 현재 이동통신시장이 보다 투명해지고 지원금 차별이 완화되었으며 요금과 서비스에 기반한 경쟁여건이 점차 조성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그간 단말기유통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강화하여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다단계 영업행위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제재하였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광고로 이용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과다경품을 지급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또 추가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콘텐츠를 소비하는 플랫폼은 다양화되고 방송광고시장도 인터넷과 모바일로 이동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업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둘러싼 대외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품질 방송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품격 있는 공영방송 실현을 위해서도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수신료 현실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이 지니는 공익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에 균형을 두어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노력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업무현황보고에 앞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허원제 부위원장입니다.

김재홍 상임위원입니다.

이기주 상임위원입니다.

고삼석 상임위원입니다.

정종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전영만 방송정책국장입니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입니다.

김재영 방송기반국장입니다.

그리고곽성문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입니다.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입니다.

(위원 및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업무현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존경하는 홍문종 위원장님,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박효종입니다.

계속되는 현안과 의정활동의 노고 속에서도 국정감사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정 정반을 면밀히 감독하고 살피는 엄숙한 자리에 출석하여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제언으로 말미암아 저희 위원회가 방송통신의 바람직한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건전한 의사 형성에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설립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9

명의 심의위원은 전문성과 합의제 정신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심의를 통하여 보다 민주적인 의사형성 과정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방송통신 미디어 이용은 삶 바로 그 자체라고 좋을 정도로 생활과 밀접합니다. 따라서 매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경쟁의 심화로 인한 방송의 상업화와 질적 저하, 올바른 인성과 양심을 파괴하는 인터넷 불법 유헤정보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러한 수많은 콘텐츠와 정보들의 광범위한 유통 및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방송과 통신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유익한 방송통신 융합환경 조성의 선두에 서서 사명감을 갖고 다음과 같이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공공성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공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한 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와 시청률 지상주의로 비롯되어 전방위에 걸쳐 확대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현저한 질적 저하와 저품격 프로그램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점 심의를 지속하는 등 단호하고도 실효성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서 공적 책임의 측면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제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신은 그 본래의 출발이 사적인 대화의 확장에 있는 만큼 통신정보의 심의는 명확한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 유헤정보로 한정하여 신속하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인터넷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하여 불법 유헤정보 유통경로를 조기에 차단하고 이용자·유관기관·사업자 간의 공동 협력체계 강화 및 사업자 자율심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허위로 확인되었거나 사실과 동떨어진 개연성 없는 정보의 무분별한 유포가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고조시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터넷상의 악성 게시글로 인해서 명예 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서 인터넷피해구제센터를 설치하고 권리침해 정보 심의 업무와 개인간 분쟁조정 업무를 통합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린i캠페인’을 통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미디어의 올바른 이용의식을 함양시키고 건전한 정보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전국적으로 교사 및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우수한 방송프로그램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 제작자들의 사기를 고양하고 질 좋고 우수한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문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위원회는 국민민복의 문화가치 창조에 공헌해야 한다는 엄중한 요구에 초심의 다짐을 다시 새기고 숨김과 보탬이 없는 정직하고도 성실한 자세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도·질책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각오를 새롭게 다져 방송통신의 품격을 제고하고 올바른 매체기준 정립을 위해서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원회가 주어진 역할과 소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관심어린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심의위원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목 부위원장입니다.

장낙인 상임위원입니다.

허의도 사무총장입니다.

조기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종대 방송심의1국장입니다.

김인곤 방송심의2국장입니다.

조광휘 통신심의국장입니다.

박우귀 권익보호국장입니다.

이은경 인터넷피해구제센터장입니다.

(위원 및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방심위 및 KOBACO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현황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고 부족하시면 1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우상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홍문종 예, 의사진행발언 하지시요.

○우상호 위원 이 발언을 해야 되는지 어제 밤부터 매우 고민을 했습니다만 침묵의 방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이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상임위에 소속된 야당 간사 입장에서 매우 괴롭습니다. 오늘 그 의원은 이 중대한 국정감사에도 참석을 못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정상적인 국회의원의 활동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역 국회의원이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참으로 황당한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마당에 비록 동료 위원이지만 국민의 질타를 받는 입장에서 과감하게 그 국회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리위원회에서 새누리당에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명분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조속히 국회의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제명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새누리당 위원님들에게 촉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미방위 위원들이 같은 상임위 소속이어서 생기는 마음의 부담과 고통을 덜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에게 제대로 복무하는 상임위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의사진행발언 또 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전병헌 위원 아니요, 자료요청을 하려고……

○위원장 홍문종 민병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민병주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지금 심학봉 의원님의 성폭행 관련된 내용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또 여성의 입장에서 있어서 안 되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또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들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명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여당이 시간을

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께 설명을 들었더니 시간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명 절차를 위한 과정으로서 얘기를 한 것 뿐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전병헌 위원 위원장, 자료요청을……

○위원장 **홍문종** 자료요청 하시지요.

○전병헌 위원 전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방통위가 보고한 내용 중에 종편 4사의 재승인 조건 등에 따른 2014년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측구 그리고 시정명령 통보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편 4사가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방안 및 이행실적 자료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 5월달에 방송평가개선자문단이 구성됐는데 구성된 인원의 명단과 인적사항도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방송언어 품격 제고와 관련하여 방송언어 품격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 중에 제출을 해 주시면 오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위원장 **홍문종** 또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요청 없으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 대전 유성구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민병주입니다.

방통위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민병주 위원 최근 광고시장 침체에 따라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영환경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게 물론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방통위가 올해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광고 종류별 간막이식 방송규제를 받아왔던 지상파 방송광고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리고 가상·간접광고는 허용

시간이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광고 제도개선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9월 2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민병주 위원 그래서 이미 경영 악화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사실 지상파의 광고총량제 도입 가지고 광고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KBS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서 KBS가 광고를 하지 않고 제대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광고 허용품목이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전체 방송 광고시장을 키울 수 있는 거시적인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도 이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민병주 위원 그래서 KBS가 광고를 줄이고 수신료 중심으로 운영될 때 비로소 진정한 공영방송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제가 미방위 와서부터 지금 3년째 수신료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500원이라는 수신료가 1981년에 정해졌을 때는 신문 한 달 구독료를 고려해서 책정된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34년간 2500원이 계속 유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민병주 위원 표를 한번 보십시오.

해외의 주요국들이 81년에 비해서 지금까지 거의 300% 가깝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그대로인 셈이지요.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면 4000원으로 올리는 KBS의 안이 적정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만 이러한 KBS의 수신료 문제는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정상화를 통해서 공영성 강화라는 차원으로 논의를 해야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KBS만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방송문화산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와 시청자 복지라는 큰 틀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민병주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장애인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미방위 소속기관들의 장애인 웹 접근성의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방통위 소속기관들 점수가 최하위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유관기관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70점대, 미흡인데 가장 또 나쁜 곳이 방문진, 44.7점으로 매우 미흡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느끼는 게 있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병주 위원** 그래서 뉴 스마트 미디어시대가 도래해서 일반인의 경우는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정보 접근이 용이해지는 반면에 장애인을 비롯한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방송정책을 추진하는 방통위에서는 이 소속기관들의 경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민병주 위원** 위원장님께서 방통위를 비롯한 소속기관들이 이러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확감 전까지 정보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바로 대책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세월호 이후에 재난방송 관련해서 제도개선안 마련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민병주 위원** 그 핵심이 크게 세 가지라고 들었는데 어떤 핵심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기본적으로 법률을 정비해서 재난방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

에 재난방송의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재난방송이 제대로 양적인 것뿐만 아니고 질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를 강화했고요. 또 재난방송 수신환경도 개선되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3024개소의 수신환경 실태조사 한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도로터널, 철도터널, 지하철, 이렇게 보시면 불량이 상당히 많지요? 대부분 90% 이상이 불량입니다. 왜 그럴까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원래 DMB의 경우에는 중계기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았고, 라디오의 경우에는 중계기 설치가 의무화는 되어 있었으나 그 시설관리주체가 한 번 중계기를 설치한 이후에는 그 시설의 보수라든지 이런 개선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런데요 재난방송 수신용 중계설비 지원 예산이 9억밖에 안 되어 있지요? 이거 해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앞으로 준비하실지 확감 전까지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위원** 위원장님, 종편이 방송이 되어가지고 방송 전체 환경과 우리 시청자 주권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 측면이 있었을까 하는 평가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우선 채널이 다양화돼서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이 좀 더 보장이 됐다고 생각을……

○**우상호 위원** 그동안 채널이 한 300개 됐는데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채널이 없었던 것 아니잖아요.

어쨌든 말씀하십시오. 채널 다양화, 그것은 종편이 잘한 것이 아니지요. 채널이 많아진 거지, 그냥. 종편이 잘한 것이 뭐냐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나름대로 방향을 정해서 또 방송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각 시청자들마다 욕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은 일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호 위원**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 사실 별로 없지요? 제가 볼 때 방송을 정치적 고려로 허용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없잖아요. 결국 채널만 늘어났다는 말씀 아니세요, 다양하게.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중편 출범 이후에 방심위 심의 결과 제재조치 168건, 권고와 의견제시, 행정지도 308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상파와 비교해 보십시오. 이 정도 제재 안 받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운영할 때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공영성에 대한 고민을 다른 데는 한다는 뜻이고, 이 정도 영향력 있는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제재를 받는 것은 그만큼 국가기관이 보더라도 ‘너희들은 좀 심하다.’ 이런 평가를 내린 겁니다.

TV조선, 주로 제재 프로그램별 유형을 보면 보도 55건, 교양 87건이에요. 예능은, 오락은 한 26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주로 보도·교양에 집중됐다는 것은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막말하고 근거 없는 사실 막 떠들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같은 프로그램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규제기관이 규제를 할 때는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벌을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런데 반복하여 위반하고 있는데 그러면 ‘네가 나를 아무리 처벌해도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태도로 나오고 있는데 왜 이것을 그냥 놔두느냐 말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로서도 지난번에 중편에 대해서 재승인을 하면서 재승인 조건에 그런 공적 책임, 공공성 부문에 대한 것을 넣었고, 그다음에 그것은 저희가 6개월 단위로 계속 이행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호 위원** 같은 말씀 계속하시는데……

방심위원장님, 계속 제재를 하시잖아요, 지금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이상호 위원** 그런데 계속 어길 때, 반복해서 어기는데 그러면 무력감 안 느끼세요? 같은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같은 프로그램이 한 번 벌을 줘도 계속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제재기관으로서 무력감 안 느끼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이렇게 느끼면서도 관계자들을 통해서 자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그런 메시지를……

○**이상호 위원** 제재가, 벌은 상대방이 두려워하는 수준에서 해야 되거든요. 과징금 부과는 1건도 없어요, 보면. 과징금은 왜 부과하지 않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글썄, 과징금에 대해서도 사실 사안이 정말 심각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까.

○**이상호 위원** 저는 상습범은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습범은. 그러니까 우연히 실수를 한 것은 경고해서 바꿀 수 있는데 상습범은 고의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시청률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야당을 괴롭히려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이 잘못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제대로 바로잡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협찬—제목에다 기업 광고 넣는 것—이것은 조금 과도한 것 아닌가요, 아무리 재원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이상호 위원** 한번씩 들어 보시고요.

‘삼성 갤럭시S6와 함께하는 무한도전’ 이런 것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SK와 함께하는 런닝맨’ 이것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 상업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이상호 위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15년 7월까지 5년간 개인정보 누출이 9218만 건입니다. 국민 1인당 두 번씩 누출된 거지요. 이것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개인정보 유출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파밍, 스미싱 등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 기관이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개인정보 유출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모니터링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정보통신망법을 또 개정해 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유출에 대한 인과관계를 묻지 않고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우상호 위원** 이것이 주로 해킹 때문에 나가는 데요. 그러면 주로 이동통신회사나 이런 데서 이런 것을 해킹해서 빠져나가는데 적어도 그런 고객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테일수록 보안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당연히 투자해야 됩니다.

○**우상호 위원** 돈을 몇조씩 벌어들이면서 그것 하나 제대로 못 해서 국민 정보 빠져나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대책을 엄중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책 세우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KT의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저희들로서는 그런 이동통신사나 또는 대형 포털이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을 때 통신이 20% 요금할인제 잘 홍보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우상호 위원** 그런데 결국 LG유플러스 과징금 매기셨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우상호 위원** 지금 대리점에서는 20% 할인제를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도를 만들면 뭐합니까? 저는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만 있는 제도도 제대로 관철이 안 돼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통신사들이 교묘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드리는 혜택을 숨기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LG유플러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징금 이후에 SK가 또 끝나자마자 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저희가 그 부분은 하여간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해서 또 다른 통신사든 같은 통신사든 위반행위가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배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덕광 위원** 해운대·기장갑 배덕광 위원입니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애슐리 매디슨(Ashley Madison)이라는 사이트 아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배덕광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이트 첫 화면에 뭐라고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보시다시피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내에서 여기 가입한 사람이 무려 20만 명이나 됩니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 아닌 바람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슐리 매디슨이 기혼 남녀가 불건전한 만남을 하도록 회원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사이트인 줄은 아마 위원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알고 있습니다.

○**배덕광 위원** 남자의 경우에는 9만 원을 받는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그런데 작년 4월달에 방심위가 이 사이트를 차단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당시에 간통법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간통법에 위배되는 불륜을 조장한다 그런 이유로 사실은 차단을 했었습니다.

○**배덕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됐는데 올 3월달에 방심위가 그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왜 풀어 줬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간통법이 현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는 바람에 근거가 되는 것이 차단의 근거였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없앨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덕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철회가 나기 전에 애슐리 매디슨은 방심위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알고 있습니다.

○**배덕광 위원** 화면 한번 보시지요.

차단이 부당하다는 것인데 주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애슬리 메디슨은 성인 사업이 아닌 소셜 네트워크 사업이다, 어떠한 불법 정보도 지원하지 않는다, 한국에 이런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애슬리 메디슨만 차단하면 한국 사이트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통이 위헌 결정이 나니까 간통 알선이 범위 행위가 아니게 되었고 이 때문에 애슬리 메디슨을 단속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니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방심위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화면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미성년자의 가입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기혼 남녀 간 성인 알선이 목적인 이 사이트에 미성년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안 되겠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안 됩니다.

○배덕광 위원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처럼 미성년자인 1997년생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이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성인인증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청소년 보호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7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청소년 유해정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영화나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폭력 수준이나 선정성에 따라서 청소년 사용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처럼 청소년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이트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는 어디를 봐도 그런 안내가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2조와 시행령 제24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현재 해외 사업자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애슬리 메디슨이라는 회사가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은 나중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인증절차가 없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

합니다. 왜냐하면 성적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의 특성상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두는 행위는 범죄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매체는 음란정보 게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본 의원실 직원이 애슬리 메디슨에 가입했을 때 받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지요.

자신의 얼굴도 있고 적나라하게 찍은 신체의 일부도 있습니다. 저런 사진은 포르노 사이트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심위는 포르노 사이트는 단속을 하면서도 이 사이트는 단속하거나 또는 차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째, 성매매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여성 회원들이 자신을 소개해 올려놓은 프로필인데 전부 또는 간접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자 회원들도 여기에 적당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아예 저렇게 조건만남을 내걸고 만나자는 사람은 연락을 하지 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많은 경우에 성관계와 금전 제공의 맞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강남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행위와 애슬리 메디슨에서의 성행위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이트에서 실제 대화가 어떤 식으로 오가는지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남녀가 저렇게 성매매 비용에 대해서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30을 부르고 여자는 더 부릅니다.

위원장님!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배덕광 위원 본 위원은 성인들의 일탈 행위나 인간의 내밀한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만남을 적극 장려하고 사업자가 소송까지 벌이면서 성 알선사업으로 돈을 벌겠다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과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적어도 방지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위원님의 우려에 제가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원해서 애슬리 메디슨을 갖다가 풀어 준 것은 사실 아닌데 어차피 우리가 법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의 결정에 순응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부득이하게 취했지만 역시 간통이나 이런 것들은 민법으로는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의 우려를 정말 저희들이 고려해서 이런 사이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배덕광 위원** 올 초 방심위 회의록을 보면서 일단은 차단을 풀어 주고 유통되는 정보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다시 폐쇄를 검토하자고 했는데 방심위원장, 다시 폐쇄를 검토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폐쇄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덕광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는 사이트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3월에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저는 사실 한국 사회의 미풍양속을 위해서 위원님의 그런 노력은 값진 노력이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정말 입법화되어서 저희들 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배덕광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그리고 정부 여당의 인터넷 포털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에서는 ‘새누리당 및 정부 관련 부정적 기사 표현이 포털 모바일뉴스 메인 화면에 더 많다’ 이런 연구보고서가 나왔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및 정부 관련 부정적 기사가 야당에 비해서 매우 많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 유치하기조차 한데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 대표보다 더 많이 등장한다, 포털의 제목을 임의로 편집하고 있다’ 등등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어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포털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데 왜곡되거나 편향되고 과장된 뉴스를 하면, 중립성 문제를 운운하면서 비윤리적인 광고·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이런 한계를 넘은 상태라고 지적을 하면서 포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의 보고서도 아주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객관적 시스템으로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고 오차 범위가 긍정 5%, 부정 5%, 중립 10% 그다음에 통계 신뢰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뉴스 제목만으로는 긍정, 부정을 그리고 중립을 분류할 수 없다는 점이지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누락된 기사가 한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정부를 제외할 경우에 여야의 부정적 기사 건수가 사실은 야당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전반을 다루는 기사에 있어서는, 4월에 성완중 전 의원 사건이라든지 5월·6월 메르스 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정부 여당이 잘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호적인 사건이 없는 상황의 분석보고서에서 정부 비판에 대한 기사가 당연한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편파적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에 대한 또 권력자를 상대로 한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희 위원**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이 돼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프리덤하우스에 의하면 2011년 한국을 자유국가에서 부분자유국가로 강등해서 평가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제가 매번 지적하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지금 좀 좋아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포털에 매우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표현

의 자유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포털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하고 직접 연관되는 부분도 있지만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인터넷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희 위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창조경제가 제대로 되려면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창조적으로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가기 때문에 당연히……

○**유승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총선이 내년인데 바로 앞두고 갑자기 포털 길들이기 아니냐 그다음에 재갈 물리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표현의 자유 부분자유국에서, 그러니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부분자유국으로 강등이 됐는데 완전자유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 아닙니까? 임무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포털 부분은 저희가 관장하는 부분이 아니어 가지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유승희 위원** 관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보장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방심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저희들은……

○**유승희 위원** 우리나라가 완전자유국에서 부분자유국으로 강등된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책임이 있으시지요? 책임 있잖아요? 엉뚱한 것만 자꾸 심의하니까 책임이 있지요.

지금 제3자 명예훼손 심의 신청을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

○**유승희 위원** 지금 권력자를 비판하거나 이러면 본인이 아닌 제3자, 전혀 관계없는 단체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또 검찰이 기소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심위까지 나서서 이것을 심의하

겠다고 해요. 인터넷 명예훼손을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법률도 아니고 규정 제10조2항을 개정해서 인터넷 명예훼손을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것은 이런 식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후퇴하게 하는 바로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얘기해 보세요, 심의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명예훼손 제3자 신고를 허용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은 물론 정치인들이나 공인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도 많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어불성설이기도 하고 심의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한 것을 알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해괴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제3자 신고가 현재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통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시면 안 되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3자……

○**유승희 위원** 본 위원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낸 것 알고 계시지요? 형법과 정보통신망 개정안도 발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심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을 보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아무튼 위원님의 그 우려에 어쨌든 저희들이……

○**유승희 위원** 저는 방심위원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권력의 홍위병이 돼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억압하려 해서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양지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하여튼 표현의 자유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제가 꼭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께, 협찬주 방송프로그램 제목광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

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패널을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 보이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유승희 위원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유승희 위원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딱 무엇을 제가 가렸어요. ‘부탁해’, 냉장고 광고가 같이 딱 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 광고 효과가 굉장히 높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이 협찬주 방송프로그램 제목광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10초만 주세요.

○위원장 홍문종 이따 하시지요.

○유승희 위원 이것 질의만 마저 끝내고 답변 듣고……

○위원장 홍문종 10초 안에 하실래요?

○유승희 위원 예, 10초 안에.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 스폰서십을 하게 되면 광고보다 타이틀 스폰서십을 선호하게 되고 광고 시장의 투명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지배적인데 이것을 왜 도입하려고 합니까? 광고 시장 변화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원래 그런 것을 생각을 한 것이 워낙 지금 방송광고시장이 위축되면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재원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또 외국의 경우에는 많은 나라가 타이틀 스폰서십을 허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안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각계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장낙인 방심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상임위원 장낙인 상임위원입니다.

협찬고지 규칙 6조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송심의규정 46조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협찬고지 규칙 4조, 5조하고 6조하

고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협찬고지 규칙 4조에는 ‘방송사업자는 협찬고지 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및 제49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49조는 시상품 관련이니까 이걸 별개라 하더라도 광고효과를 제한하고 있는 46조에 지금 규칙 6조를 개정하는 부분이 여기에 충돌이 되고 있고, 또 협찬고지 규칙 5조에도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는 광고나 또는 프로그램의 예고나 모두 프로그램이라고 같이 보고 있고 그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6조를 개정하지 않는 한 방통위에서 이 규칙 6조를 개정하신다 하더라도 저희는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심의를 해서 방통위에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방통위에서 내리시겠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 충돌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런 충돌이 생기지 않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류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지영 위원 방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휴대폰이나 인터넷 무료교체 전화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류지영 위원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이런 전화를 일주일에 세 번 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장님, 현재 텔레마케팅 업체가 몇 개나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그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려면 어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50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영업을 하려면 방판법에 의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런데 그런 법적 절차와 또 정부의 반복되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가 계속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무래도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환경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류지영 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 방통위에서 불법 텔레마케팅 관련해서 논의한 바가 있는지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의안으로 상정된 바가 전혀 없고, 또 현재 이동통신사와 사업자,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불법텔레마케팅신고센터에 지속적인 참여, 사업자 확대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만 왔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한 국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그것도 당연히 강화가 돼야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불법 텔레마케팅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인 수단으로 수집을 해 가지고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지금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런데 현재 자질 미달 업체들도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류지영 위원 그런데 단순히 상호라든가 연락처 등 어떤 기본적인 사항을 신고하는 것만으로 영업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문판매법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텔레마케팅 영업은 준수해야 될 법령도 많고 또 영업직원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업체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행 방문판매법상 신고제를 정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영업의 자격을 부여하는 등록제로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 일정기간 재등록을 불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최근에 텔레마케팅 불법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감안하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방법도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방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지영 위원 방문판매법은 방통위 소관 법령은 아니지만 불법 텔레마케팅 발생 시에 망법과 또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으로 방통위도 업체를 조사하고 제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위에 관련 의견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다음은 방심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앱이 발달함에 따라서 다양한 SNS가 사용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SNS가 있으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카카오톡 같은……

그런데 페이스북도 해 보셨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좀 해 봤습니다.

○류지영 위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SNS는 유사점도 많지만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류지영 위원 특히 인스타그램의 경우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 메시지를 공개하는 방식인데요. 최근 이 인스타그램에서 공개되는 사진의 선정성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저희들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해시태그라고 하지요. 검색란에 샵(#)을 치고 검색어, 예를 들어서 ‘19금’, ‘야한 사진’ 이렇게 검색을 하면 개인 계정에 담긴 각종 음란 사진들이 여과 없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너무 낮이 뜨거워서 아주 처리를 많이 했는데요. 페이스북도 수위는 좀 덜하지만 공유된 사진이라면 자신의 친구가 ‘좋아요’만 누르더라도 필터링 없이 자동으로 뉴스피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들 SNS 회원가입 절차 중에 성인 인증 과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이게 해외 사이트기 때문에 인증 절차가 없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들 SNS는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또 게다가 별다른 성인인증 과정도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이런 유해 콘텐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지요. 이러한 SNS상 유해 콘텐츠에 대한 방심위 제재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사실 국내법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 심의를 통해서 접속 차단이라고 하는 그런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러한 SNS상 유해 콘텐츠에 대한 방심위의 관리 방법이 사후약방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유해 콘텐츠를 올리는 것 자체를 막기 어렵다면 특정 음란 검색어에 대한 해시태그 기능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아무튼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실 그런 문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지영 위원** 본 위원은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서 청소년 보호 장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성인인증 절차에 따라서 콘텐츠 접촉에 대한 필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안 된다거나 어렵다거나 이런 말씀보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상파나 케이블TV에서만 제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물 접근이 쉽다면 아무리 방송에서 해도 소용이 없고 헛수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계 자율제재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위원님의 말씀을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 등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방송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이개호 위원**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에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문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인위적인 어떤 작용에 의해서 변한 것도 있겠습니까마는 그대로 내버려 뒀도 생기는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송미디어 광고시장은 그대로 두어도 변화가 되는 자연스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상파 방송의 광고시장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 지상파 방송은 그 심각성 정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방송을 제외한 타 매체는 전부 광고시장이 더 확대가 됐습니까마는 지상파 방송은 5년 동안에 한 13% 정도 광고가 줄어들었고, 지역민방은 더욱 심각합니다. 한 23%, 24% 정도 광고시장이 침체가 되고 있어서 과연 존재의 기로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사들 경영 내용을 살펴보면 인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광고 수익은 급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질도 과거에 비해서 나아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이제 시행 1년이 다 돼 갑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 또한 큰 것 같습니다.

우선 프로그램 콘텐츠 지원 사업비, 그러니까 지역민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특별법 시행 이전에 지원했던 금액이 23억인데 내년도에 30억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23억이나 30억은 지역민방사가 방발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 과연 이 특별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취지에 맞게 시행이 되는 것인지 굉장히 걱정과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예산편성안에 30억이 반영이 돼 있던데 우선 30억을 대폭 확대를 해야 된다,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저희들로서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예산이 워낙 적었던 것이어서 증액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올해 예산안 심의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역방송에 대한 전과료 배분 문제,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간접광고와 CM순서지정제에 대해서 지역방송에 대해서 전혀 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방통위에서 합리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조정안을 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나 복안이 있으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KISA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할 부분이기에는 합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민방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라든지 또는 미디어랩을 재허가할 때에 지역민방에 대한 배려를 저희가 재허가 조건에 넣는다는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체 같은 걸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건설적인 방안이 나오는 것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실효성이 있는 방향으로 꼭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이사회, 특히 이사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사들의 반대가 있었는데 그 반대하는 분들이 퇴장을 하고 나서 금방 처리를 했더라고요. 남아 있는 분들만 표결 처리를 한 것 같은데, 합의제 기관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도 합의제 기관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다 같이……

○이개호 위원 위원장님,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방통위도 꼭 반대하는 위원들이 나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의결한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방통위한테 배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로서도 가능하면 대화와 또 논의를 통해

가지고 서로 있는 상태, 다 계신 상태에서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었을 것이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최근에 KBS 이사진 그리고 방문진 이사도 또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당수의 인사들이 그동안은 막말 또 아주 원칙과 기준이 없는 얘기들, 이런 말씀들을 막 쏟아냈던 그런 인사들이 참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KBS 이인호 이사장은 작년 국감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분의 편향된 역사관 또 역사 인식에 대해서, 그러한 편향된 역사관이 프로그램 편성이나 뉴스 보도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물론이거니와 당시 KBS 사장도 그러한 답변을 했는데 그 후에 행태를 좀 보면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도·감독 기관인 방통위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늘 관찰하면서 잘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리 이사라도 방통위 편성에 그런 개입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심각한 상황은 아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개호 위원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자료 요청이요?

하지요.

○최민희 위원 지금 이인호 이사장에 대한 질의가 나와서, 이인호 이사장이 개인적인 해외출장을 가면서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혹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KBS에 관련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런데 지금까지 자료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 좀 꼭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 **홍문종** KBS에 달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민희 **위원**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위원장 **홍문종** 어떻게 해야 되나……

○장병완 **위원** 행정실에서 한번 특별요청을 해 보세요.

○위원장 **홍문종** KBS에 요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徐相箕 **委員** 대구 북구를 서상기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월 21일,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위한 광고총량제가 시행되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徐相箕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방송들의 상황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직접?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역방송들은 광고총량제로 인해서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러시니까 지금 여쭙 보는 건데, 지역방송의 상황을 제대로 안 들어 보신 것 같습니다. 국감 기간을 맞아서 지역방송에서 여기 계시는 여야 위원들 다 찾아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분야나 마찬가지로 방송광고도 결국은 광고총량제를 만들어도 중앙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발효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이 법도 중앙에 집중되는 그런 현실을 놓고 볼 때 미진한 부분이 많다 하는 이런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숫자상으로도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래서 이 광고총량제 도입이 지방방송에 좀 도움이 되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은 지방방송을 옥죄게 만들고 지방방송의 경영 상태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 하는 그런 의견이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과료

배분방식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배분방식 두 가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액제 그다음에 정률제. 그런데 지금은 정액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것을 정률제로 바뀌어야만 광고총량제 도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해서 지방방송 경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인데, 그런 의견이라기보다는 지방방송의 호소입니다, 호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역방송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에 있는 KISA가 여유가 있고 지역방송이 어려우면 그런 지역방송의 의견을 좀 쉽게 수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사실은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중앙도 어렵고 지역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사이에서 절충점으로 현명한 방안을 찾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러면 정률제와 정액제의 어떤 절충점을 찾으시겠다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제도의 절충점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제도를, 그것은 둘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현재 정액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전과료 배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역방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지역방송에서는 전과료 배분이 거의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지역방송의 경영 상태를 배려를 하셔서 가지고 지역과 중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이것은 매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 문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국민들도 많고 또 무관심한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국민부담의 가중을 우려해서 월 1500원을 올리겠다는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徐相箕 委員** 이게 지금 몇 년 만입니까, 34년?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徐相箕 委員** 5년입니까, 4년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올해가 35년째입니다.

○**徐相箕 委員** 5년이나 4년이나,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간입니다.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35년 동안 수신료를 인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19대 국회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1500원 전액은 해결을 안 하더라도 일부라도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가능하면 1500원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다른 중간선을 만들어 주시면 그것도 좋고 그다음에 거기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 기회에 객관적으로 수신료를 산정할 수 있는 그런 수신료산정위원회 같은 기구도 구성이 돼서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徐相箕 委員** 그러시고 꼭 좀 19대 국회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여당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마는 같이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리고 지금 KOBACO 경영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徐相箕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물론 여러 가지, KOBACO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방송광고시장의 문제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방송광고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徐相箕 委員** 하여튼 경영 악화가 지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KOBACO의 경우에 지금 방송광고만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업무영역도 조금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徐相箕 委員** 위원장님, 1분만……

말씀 계속하세요. 업무영역 확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두고 말씀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통신에 있어서의 광고에 관해서도 업무영역을 좀 확장해서 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는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금 다양하게 살펴보면서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은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담당하시나요, 누가 담당하시나요? 방송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무래도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새로 생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 확보서부터 다 필요하기 때문에 큰 틀은 저희가 하고 실무적 일은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徐相箕 委員** 이사장님 와 계시나요?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이석우** 예, 나와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지금 대도시 중에 공교롭게 대구만 빠지고 다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이석우** 지금 미디어의 대국민 보편적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미디어가 굉장히 급격하게 진화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6개 광역시 가운데 대구만 센터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 중에서도 일부 빠져 있는데 6개 광역시가 그중에 빠져 있어서 필요합니다. 다만 기존 센터 안정화라든지 또 정부와 국회의 의견도 저희들이 청취하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감안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별도 너무 심한 차별 아닙니까?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광주 남구 장병완 위원입니다.

마침 또 본 위원 질의시간에 맞춰서 김무성 대표님께서 오셔서 가지고, 제 질의를 경청해 주시려고 오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저는 전임 방통위위원장님들에 비해서 최성준 위원장님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특히 방통위의 새로운 인재채용과 관련돼 가지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를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특정 정부부처에 특정 학교 출신이라거나 또는 특정 성향 내지는 특정 전공한 사람들이 편중할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 해양수산부가 발족하기 전에 수산청이 있었습니다. 수산청은 구성이 부산수산대학교 졸업생이 아주 일률적으로, 청장부터 간부들이 온통 부산수산대학교 출신이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 버렸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로 되면서 항만청 출신들이 다시 완전히 해양수산부를 장악하고 수산청 출신들은 거의 전멸해 버렸습니다. 즉 말해서 특정 성향의 사람들이 저기했을 경우에는 결국 거기의 대외환경에 적응을 못 하는 문제가 나타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과거 국세청이 사실은 세무대학교 출신들이 전국 세무관서에 거의 상당한 많은 수가 포진함으로써 해서 사실은 행정의 어떤 영이 서지 않고 아주 굉장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서 세무대학교라는 학교 자체를 폐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성준 위원장님이 취임하신 이래로 방통위에서 6급 신규채용을 제가 보니까 11명을 했어요. 11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별정직이 3명이고 나머지 일반직들이 8명인데 일반직 8명 중에서 1명 회계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7명 전원이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채용을 하는 그 부서들을 보니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방송시장조사과, 방송광고정책과, 단말기유통조사과, 이용자보호과, 즉 말해서 이 조직들이, 반드시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나 덕목이 꼭 변호사의 자격을 가져야만 하는 자리냐? 대한민

국의 거의 모든 정부부처의 대부분의 이런 업무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방통위의 직원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를 좀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이 규제업무이고 규제업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법을 적용해 가지고 제재를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 적용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장병완 위원** 저는 위원장님이 어떤 사적인 편향된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선한 의도로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조직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회사 부서의 그 직위들이 제가 죽 보니까 어떤 법률의 전문적인 지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채용의 절차를 보더라도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채용에 있어서 변호사자격증 소지자가 사전적으로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셨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 내부에서는 수렴 절차를 거쳐서 각 과에서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발을 한 것입니다.

○**장병완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변호사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아예, 2015년 3월 16일 11시 35분에 6급 경력직 채용, 그런데 변호사자격증 소지자에 딱 한정을 해 가지고 '있을 예정이니 채용할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알려 달라', 그것도 오후 5시까지. 그러니까 점심시간 직전에 통보를 해 가지고 불과 몇 시간 후에 회신하라. 그것도 아예 미리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라는 전제를 해 놓고 수요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대로 된 채용 절차가 아니고,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방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결국은 공정성과 공공성

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방송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방통위의 업무인데 사실은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어떤 의미에서는 방통위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예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도 결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법무성에 독점금지국이라고 있는데 법무성의 독점금지국에도 절반은 이코노미스트예요, 로이어(lawyer)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저기를 하시더라도 8명의 직원을 뽑으면서 7명을 변호사 자격증으로 충원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위원장님께서 어떤 사심이 있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조직의 미래를 바라볼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양성이 보장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균형된, 즉 말해서 특정……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직위에 특정 자격이라거나 요구되는 특별한 덕목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채용을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력과 자격의 소지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저기면 가급적 다양성과 균형성이 보장되게 채용을 해야 맞는 거다……

이처럼 사전적으로 ‘변호사 소지자’ 해 놓고 특정 정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정원 내에서 배치한다 하는 의미로 해 버릴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정부 부처의 조직을 운영해 본 입장에서 앞으로 채용을 하실 때 이런 편향성을 해소하고 또 방통위의 본질적인 설립 취지에 맞도록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인재 채용을 해 주시기를 특별히 요망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 할 때 다양성을 제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해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최성준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조해진 위원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 때 보도를 보니까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재난보도준칙이 별로 안 지

켜지는 것 같고 보도 양태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초기에 속보 경쟁을 막 벌이면서 원래 재난보도준칙에는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 이것을 확산 안 되게 노력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전혀 안 지켜지면서, 객관적으로 또 냉정하게 보도를 해야 된다는 그게 안 지켜지고 결과적으로 실제 이상의, 우리가 기울어야 될 주의나 또 염려 또 조치 이것 이상의 과도한 전 국민적 심리적 공포가 조장이 돼 가지고 경제에까지 바로 타격이 왔지 않습니까?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고 아무 관련 없는, 메르스하고 아무 관련 없고 전염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까지도 다, 저희 지역의 크고 작은 공식 행사·비공식 또 사적 모임까지 다 취소되는 걸 봤습니다, 중국 관광객들도 발 다 끊어지고, 그래서 경기가 완전 냉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또 언론이 완전히 논조를 바꿔 가지고 앞뒤 언론의 논조가, 특히 방송의 논조가 완전히 널뛰기를 해 가지고 초기에는 ‘차분하게 대응하자, 너무 과민하게 대응하면 안 된다. 너무 공포심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용단 폭격을 맞았습니다. 역적 취급을 받았습니다, 무사안일한 것 같이, 위험성을 모르는 것 같이,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 같이. 그러다가 뒤에 과도한 공포가 조장이 돼 가지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패닉 상태에 빠지고 경제에까지 직격탄을 맞으니까 그때는 조금 이 사태를 심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거꾸로 용단 폭격을 받았습니다.

이래 가지고 저는 조금도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방통위에서 그런 보도 흐름을 모니터하시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준칙에 맞게 조정된 보도가 되도록 하는 계도라든지 이런 조치가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기본적으로 방송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관여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겨 보고 그다음에 제가 다양한 경로로 방송사에 그 뜻도 전달해서 너무 과도한 불안이 되지 않도록 재난보도준칙에 맞는 보도를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보다 제가 보기에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마는 그게 그

렇게 저희가 원했던 것만큼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 재난보도준칙에 맞는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제 생각에는 사후적으로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스크린해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였고, 그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조치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는데 그게 수용이 됐다 안 됐다, 시정 조치가 중간 과정에서 있었다 없었다, 전체를 스크린하고 평가해 가지고 사후적으로라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다만 저희의 한계는 기본적으로 방송 내용 전체를 늘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방심위하고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사이버 폭력 실태가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한 자료도 작년 조사 결과에 학생들의 10%, 성인의 31%가 사이버 폭력 경험이 있다고 돼 있고 이게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 게 국민의 77%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 40%가 SNS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상의 폭력 이게 유명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문제로 지금 돼 가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제가 잘 아는 여중생이 사이버상에서 친구들한테 왕따가 지속돼 가지고 개선이 안 돼서 기억상실증에 걸려 버렸습니다. 다 잊어 버렸어요. 저도 못 알아보지요. 그래서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라지만 방통위에서 하는 것들이……

사이버안심존사업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조해진 위원**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평가해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유를 너무 제한한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조해진 위원**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글썄, 효과 같은 것을

저희가 수치적으로 계량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배포해 가지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만 파악을 하고 있지 그걸로 인한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본 바가 없는데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하나 대책 사업을 지금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 예를 들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셔서 효과가 있으면 더 확산시키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경기도 안에서만 이게 시행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성과가 있으면 더 확대하시고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리고 방심위원장님께 하나 여쭙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건강·의료 관련 방송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서 방심위에서 심의되고 또 위반 조치되는 허위·과장 방송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만큼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맞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방심위원회에서 올해 상반기만 해도 46건을 적발해 가지고 그중에 43건인가를 조치하셨는데 조치된 건들에 대해서 사후에 정정이나 또 사과 방송 이런 게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지도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안 하지만 법정 제재, 주의사항으로 나왔을 때는 방송사가 지체 없이 제재 조치사항을 공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조치는 아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지적을 하셨으니까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전병헌입니다.

작년 10월달에 단통법이 시행됐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전병헌 위원** 단통법의 입법 취지는 사실 시장

의 혼란과 무질서를 정비하고 세계 최고·최대의 가계통신비 부담 비율을 낮추자라는 취지였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전병헌 위원** 우리가 금년 9월달에 들어와서 사실상 만 1년이 됐는데 최 위원장님께서는 단통법 시행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용자 차별이 많이 완화가 됐고 그다음에 이통사들이 과거의 보조금 경쟁에서 탈피를 해서 서비스나 요금 경쟁을 통해 가지고 가입자를 유치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동통신요금도 일부 좀 내려가고 또 최근에 출시된 단말기들도 과거에 출시된 것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거에 출시된 것보다는 가격이 내려가는 등 일종의 경쟁효과를 일부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위원** 부작용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같은 기간 동안에 번호이동 비율이 40% 이상 격감을 했고 또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도 110만 대가 감소해서 사실상 새로운 통신단말기 유통구조 혁신이 더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고요.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에 통신시장 전체의 규모나 소위 역동성 또 판매저하 이런 결과로 인해서 중소 유통점이 많이 폐업을 하고 있고 골목상권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단말기 출고가 인하 성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1년의 평가를 본다고 한다면 가계통신비 지출을 완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부담을 감소시키자라는 취지가 무색해졌고 정보통신 시대에 국민들의 정보통신 생활복지의 지표는 사실상 오히려 시장의 역동성 저하로 떨어진 것이라라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위 이용자들이 단말기를 자유롭게 비교하고 판단해서 구매할 수 있는 단말기자금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저는 갖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단말기 자금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강제적으로 단말기 자금제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금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20% 요금 할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20% 요금 할인이 많이 이용이 되면서 지금 자금제 시장이 일부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자금제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전병헌 위원** 그런데 사실상 현재 자연적인 흐름으로 자금제가 활성화되기에는 시장의 구조와 지난 30년간 어떤 이동통신시장의 결합 구조가 아주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지요. 이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만 지금 소위 통신 이용자들의 통신생활 복지를 좀 개선하고 그리고 통신비의 가계 부담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께서도 지금 단말기 자금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그런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소위 미래부와 함께 협의를 해서 단말기 자금제의 조속한 개선대책 및 확대를 위한 그런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리고 지금 보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단통법에 의하면 내국인과 외국인의 보조금 차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런데 외국인이라고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은 2년 이상 가입을 해야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전병헌 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외국인이라고 해서 2년 이내의 가입자인데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외국인에 대한 특혜일 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전병헌 위원** 단통법을 또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더더욱이 이와 같은 마케팅을 위해서 별도의 장부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다단계 판매에 대한 징계를 받은 통신사가 이와 같이 주한미군을 상대로 해서 24개월 미만의

사용자들에게 9개월만 쓰더라도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 지방청에서 아마 수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 이용자국장 나오셨지요, 박노익 국장?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박노익 예, 나왔습니다.

○전병헌 위원 잠깐만, 박 국장께서 소위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군 전용 수납시스템, 즉 UBS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확인국감까지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박노익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LG 쪽에서 이중 시스템을 쓰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고 수사의 기미가 보이니까 소위 미군 전용 수납시스템을 7월 1일부터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이전에 UBS에서 얼마나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져 있는지 우선 수사 이전에 통신 주무 당국에서 이와 같은 불법적이고 일탈적인 그런 영업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바로 실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리고 KBS 수신료, 여러 가지 UHD방송 도입이라든지 34년 수신료 동결, 명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방통위에서 내세우고 있는 경비 5% 절감과 강도 높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구노력,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KBS의 임금 구조를 개편해서 임금피크제라든지 성과급제로 개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원 감축은 자연퇴직을 하는 것에 비해서 채용을 적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을 줄여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불필요한 자산을 처분해 가지고 재원 구조를 좀 강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정호준입니다. 방통위원장님, 여쭙겠습니다.

어제 방통위가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 불법과징금을 23억 7000만 원인가요? 부과하고, 시정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정호준 위원 그런데 방통위가 다단계 판매 방식 자체는 합법이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정호준 위원 그런데 현재 단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시장이 안정을 찾아간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단말기 판매시장이 얼어붙어서 중소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영업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를 단통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시장전체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전체 이동통신 유통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중소·영세 판매점과 어떻게 좀 상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다단계 유통점들과 일반 유통점들의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일반 유통점하시는 분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통신판매 신고를 하고 또 가게 인테리어를 투자한다든지 다르게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데 교육이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다단계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고객에게 여러 가지 안정적이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단계 판매를 금지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일반 유통 분들은 그렇게 또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방통위의 결정대로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방식이 만약 합법이라면 이동통신 3사가 어찌든 전부 다 다단계 판매 방식을 확대하면서 기존의 이동통신 유통망과 또 판매점들과의 충돌이 볼 보듯 뻔합니다. 잘못하면 큰 문제가 더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방통위가 줄곧 말씀하시는 이동통신 유통망 개선과 또 시장 정상화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단계 판매를 장려하거나 그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호준 위원 물론 그러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고가 요금제, 특정 단말기를 권유하면서 나중에 해지했을 때는 위약금을 물리는 이런 형태로 영업하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그런 영업을 하는 다단계 판매점은 회원 가입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몇몇 다단계 대리점은 그것을 안 하고 있는데 회원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길도 얼마든지 있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을 때는 그것이 우려할 정도로 그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저희로서는 당연히 중소 유통점의 상생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통 3사가 자율적으로 그런 상생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은 방문판매법에 의해서 허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호준 위원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그것을 금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든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호준 위원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단계를 다 금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단계 판매 방식에 대한 어떤 합법 운영 수준·범위 이런 것을 재검토하시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용자의 피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정호준 위원 다단계 영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하시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LG 유플러스 과징금도 일부는 좀 적다, 더 세게 때렸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위법 시 강한 제재를 하셔서 재발을 금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꼭 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판매원들의 교육이라든지 또는 사전승낙제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시정명령에 좀 꼼꼼하게 넣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것을 조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예, 꼭 그 대책을 세워서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위원장님,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이 프로그램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십니까? 들어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정호준 위원 이 해당 프로그램은 여야 의원 패널과 함께 초대 손님 형식의 패널이 출연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국내 정치 사안 및 정부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패널 선정을 보면 올해, 15년 1월부터 9월까지 보니까 총 35회를 방송하면서 초대 손님 51명 중에 정부 및 여당 인사가 27명으로 거의 53%에 달하는 반면에 야당 인사는 6명, 11.8%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편파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정성과 균형성이 맞춰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MBC가 정부와 여당의 홍보방송을 내보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그 통계는 처음 들었습니다. 방송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객관성 위반이라든지 공정성 위반의 문제가 생긴다면 방통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정호준 위원 한번 꼭 검토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방송통신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근거해서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기관의 위원으로서 정부와 여당 인사 위주의 패널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패널 선정,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글썽,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송 개개의 편성이라든지 또 패널 선정까지 저희가 어떤 관여를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사후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호준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 위원장님께도 좀 묻겠습니다.

방심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금 들으셨던 MBC ‘이슈를 말한다’ 패널 선정에 관련해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자체 심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호중 MBC……

○정호준 위원 방금 말했던 MBC ‘이슈를 말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호중 예.

○정호준 위원 이렇게 불공정하고 공정하지 못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심의가 없었나요? 보니까 MBC 노동조합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이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홍보의 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려되는 기사도 제가 봤는데 왜 이렇게 이것에 대한 자체 심사가 없었습니까, 위원장님?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호중 아무튼 저희들은 방송된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심의하기 때문에 패널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까지 그동안 심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처럼 만일 그와 같은 것들이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시면 아무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패널 수만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패널이 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 입장이나 여당 입장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형평성, 공정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철저한 모니터링과 심의 대책을 좀 수립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꼭 방통위와 방심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호중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아직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위원 강길부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장 과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보는데 이 단통법에 대해서 방통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우선 과거에는 번호이동을 하고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었는데 그런 이용자 차별이 해소돼서 지금은 금액에 있어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낮은 요금제를 쓰거나 기기 변경을 하는 사람에게도 지원금이 다 골고루 지급될 수 있도록 이용자 차별이 없어졌고, 그로 인해 가지고 고가 요금제 강요나 부가서비스 강요 같은 것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원금 경쟁에 쏟았던 이런 노력들이 지금은 서비스나 요금 경쟁으로 전환이 되면서 큰 폭의 변화는 아닙니다마는 점차 요금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고 가계통신비도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길부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지적해 보겠습니다.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관행은 없어지면서 마케팅 비용의 감소로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크게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통법이 시행되면 통신사가 보조금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줄 것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지원금에 단말기 구입비용만 증가한다는, 떠안게 되었다는 이런 불만도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 21일 현재 각 이통사의 주력 단말기 평균 지원금은 지원금 상한액의 한 65%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초기 구입 부담은 늘어나는 데 반해서 통신사는 보조금 혜택을 줄이면서 발생한 이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은 ‘누구를 위한 단통법이나’라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현 제도의 틀 안에서 소비자가 보조금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의 견해와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원금 결정은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사이에 비례를 해서 지급을 하되 그 비례 정도가 좀 낮게, 그러니까 완만하게 돼 가지고 저가 요금제에게도 많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서 전체적인 가계통신비가 좀 내려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현재 시장 상황에 이런 면이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 휴대폰 중소유통점은 지난 6월 말 현재 약 1040곳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통신사들이 운영하는 직영대리점은 138곳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통사들의 직영점 확대는 작아진 통신판매 시장하에서 일반 판매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사들의 막대한 자금과 기획력이 뒷받침되는 이통사 직영점은 일반 판매점에 비해서 경쟁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통사 직영점이 늘수록 판매점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직영점 확대 지양을 포함해서 휴대폰 판매점의 동반 성장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직영점 부분은 더 이상 출점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면이 좀 있습니다, 영업의 자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직영점과 일부 중소유통점의 큰 차이는 장려금 같은 것을 직영점에는 좀 많이 주고 중소유통점에 적게 주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선호 단말기를 직영점 위주로 공급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통 3사가 자율적으로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 시정을 하겠다, 그리고 오히려 직영점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중소유통점보다 제재를 2배로 더 강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이통 3사도 나름대로는 중소유통점의 어려움을 이해를 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길부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방송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6월 방통위가 지역방송발전지원 3개년 계획을 발표한 게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강길부 위원** 종전의 자체 편성 비율 규제 방식에서 지역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 비율을 규제하는 이런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지역방송사의 제작비는 고려되지 못했다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지상파들은 60분짜리 프로그램 1회 제작하는 데 중앙 지상파들에 비해서 최소한 6분의 1에서 최대 20분의 1 이하의 제작비만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실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지상파들의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서 편수 늘리기에 집중하다 보면 1회당 더 낮은 제작비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의 양적인 양상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시청자들에게는 외면받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잘 살리고 또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방송사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당연히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억지로 시간만 채우기 위한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제작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품격 있는 고품격의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 같은 것에도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영상 틀어 주시지요.

(동영상 상영)

끊어 주세요.

고영주 이사장이 저 발언을 할 때 신분이 뭐였는지 아세요,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때 방문진의 감사였습니다. 지금 방문진 이사장입니다.

고영주 이사장의 저 발언,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다’ 이게 적절한 발언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그분의……

○**최민희 위원** 이런 것도 답변 못 하세요?

국민 48.6%가 지지한 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그분을 지지한 48.6%는 공산주의자를 찍은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건 아닙니다.

○**최민희 위원** 저 발언이 적절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위원** 김재홍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발언에 대해서, 저런 극단적인 발언을 방문진 감사로서 한 분이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적절한 인사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김재홍** 저는 헌정 체제 아래에서 국민이 뽑아 주신 국회의원이고 제1야당의 대표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옳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공영방송 경영기구의 감사로서는, 지금 현재는 이사장이 됐습시다라는 매우 부적절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위원** 그래서 저는 고영주 이사장께서는 즉시 그만두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MBC를 위해, 우리의 공영방송을 위해서.

그리고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민희 위원** 지난번에 MBC, KBS 공영방송 이사 선임하셨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민희 위원** 그때 김광동 이사가 3연임 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리고 차기환 이사는 방문진에서 두 번 하시다가 KBS로 메뚜기 하셔서, 연임 되셔서 결국 공영방송 이사 3연임하신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3연임은 아니지만 하여간 세 번에 걸쳐서……

○**최민희 위원** 세 번 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민희 위원** 그러면 이런 김광동 이사처럼 3연임한 방문진 이사가 있었나요, 그전에?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3연임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민희 위원** 없지요? 거기까지 듣고요.

그러면 이렇게 무리하게 3연임을 하면서까지 김광동 이사를 했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3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그다음에 방문진 이사가 또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해서 하는, 직업처럼 하는 업무가 아니며 가지고……

○**최민희 위원** 그냥 무리 없다고 생각하셨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민희 위원** 거기까지 듣고요.

김재홍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상 초유의 이 3연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김재홍** 그 당시에 밝혔습시다라는 MBC 그 자리에서 3연임이 아니라는 옹호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KBS와 MBC가 엄연히 공영방송이지만 경쟁 관계이고요, 그 경쟁사의 한 이사로서 연임을 6년간 하셨고, 다른 경쟁사의 이사로서 또 세 번째—공영방송 전체로 봐서 세 번째—가는 것은 더군다나 더 부적절한 것이……

○**최민희 위원** 그런데 부적절했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런데 왜 여당 추천 방통위원들께서는 그렇게 밀어붙였을까요?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김재홍** 저희는 제대로 토의하고 합의를 이루어서 시청자단체들 또 여러 시민사회에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세 번 미루다가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더 이상 미루고 거부할 수만은 없어서 참석했지요……

○**최민희 위원** 그런데 왜 방통위원장께서 사상 초유의 공영방송 이사 3연임을 밀어붙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김재홍** 속내를 답변드리기 매우 어렵습시다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임위원들, 저희 추천권이나 임명권을 행사할 때 재량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위원** 고삼석 위원께서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고삼석** 김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가지고 깊이 있는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배경하에서 그렇게 3연임을 강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방통위원장님, 이것 청와대가 밀어붙인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지 않습니다.

○**최민희 위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저희들이 다 각자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최민희 위원** 소신껏 하셨습니까? 소신껏 3연임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최민희 위원** 투표가 아니고 방통위원장님 소신이였습니까, 김광동 이사 3연임이?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이사 선임하는 것을 소신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방송문화진흥법에 정해져 있는 요건이라든지 결격사유라든지 그런 데에 해당하지 않고 적절한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판단해서 선임했습니다.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소신이 아니었고 외압을 받아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 버벅거리는 답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시지요.

그리고 지금 MBC가 9월 1일 뉴스데스크에서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의혹 수사 리포트를 했습니다. 방심위원장님, 이것 지금 방심위에 고발되어 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최민희 위원** 저희는 MBC의 이러한 보도 태도가 공영방송으로서는 할 수 없는 편파적인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의혹과 관련해서는 병무청, 검찰, 법원에서 혐의 없다는 것이 밝혀진 사안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다시 재수사에 착수를 해요. 이게 대단히 정치적인 의도로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 죽이기 한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이렇게 보도해요.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안 맞서요. 이미 검찰은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예요.

이게 여섯 번에 걸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그래서 이것 심의 제대로 하실 겁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특별위원회부터 이 문제를 상정을 해서……

○**최민희 위원** 특별위원회까지 만드셨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아니, 워낙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최민희 위원** 소위에서 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소위는 그다음 단계에서, 이 사안이 중요하니 만큼 먼저 특위에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최민희 위원** 아, 보도교양특위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최민희 위원** 그동안 방심위가 정파적 심의를 했다고 비난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이걸 정말 딱 떨어지는 사안이거든요. 이번에 방심위가 제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리고 장낙인 심의위원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상임위원 장낙인** 예.

○**최민희 위원** 방통위원님, 이것 공정하게 잘 심의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상임위원 장낙인** 예.

○**최민희 위원** 일단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MBC 보도 보셨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상임위원 장낙인** MBC 보도는 못 봤고……

○**최민희 위원** 고발한 거 보셨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상임위원 장낙인** 예, 민원 들어온 것하고 그것에 대한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같이 봤기 때문에 심의 규정에 따라서 심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민식 위원** 부산 북구 출신 박민식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오늘 KBS다 또 방문진이다, 이사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런데 우리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박민식 위원 지금 이사진 추천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정당 몫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공식적으로 정당 몫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박민식 위원 공식적으로 없으면……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서 KBS 이사의 경우에는 여권에서 일곱 분, 그다음에 야권에서 네 분, 그다음에 방문진……

○박민식 위원 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어떤 신문을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참 뉘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 방송계의 현실이에요. 정권을 잡으면 또 자기한테 유리한 이사들이 몇 명 들어가고 또 반대쪽에 있는 이사들이 좀 들어가고, 그런 현실이 있다.

그런데 우리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야당 성향이 강한 언론에서 상당히 비판을 해 냈어요.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가지고 계신 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민식 위원 야당 몫으로 이사진이 결정 됐는데 최종 확정된 야당 추천 이사진의 면면을 보니 특정 단체 사람들이다 하면서 야당 성향의 언론에서도 이런 비판을 해 오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고요.

지금 네이버·다음 포털 관련해서 말이 많습니다. 재갈 물리기 아니냐,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다…… 네이버·다음이 제가 정무위 간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 때도 중소벤처 또 골목상권 이런 데 대해서 슈퍼 갑이다, 갑질한다 이렇게 불공정 행위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이버·다음이 쉽게 말해서 인터넷상에서 삼성이나 현대차 재벌 기업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민식 위원 영향력뿐만 아니고 돈도 많이 버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박민식 위원 영향력은, 지금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니까 방송이나 언론보다도 더 셉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저는 좀 이상한 게 KBS다 MBC다 방송은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지배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솔하게 논란을 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박민식 위원 그런데 네이버나 다음은 세칭 아주 메이저 매체 또 방송 못지않게 영향력이 있는데도, 권력은 아주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책임을 부담지는가라는 데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한다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아침에 일어나면 네이버 튕니다. 밤에 잠잘 때 데이터 틀고 잡니다, 확인하고. 슈퍼갑이 아니라 빅브라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 마이 갓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그 정도의 영향력과 권력을 누리는 포털에 대해서 그냥 이것도 예외다, 저것도 예외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방심위원장님!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박민식 위원 제가 방심위의 자료를……

정보통신 심의규정 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박민식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이거예요, 보니까. 방심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인터넷 정보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말이 중요하더라고요.

‘내용에 대해서’ 심의한다 이거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박민식 위원 그런데 포털의 배열, 기사 배열이다 또 편집이다 이런 데 대해서는 지금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방심위의 해석입니까, 아니면 어떤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대개 그것은 편집권에 속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콘텐츠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서 사실 그 문제는……

○박민식 위원 왜 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좀 문외한이지만 그냥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방심위는 쉽게 말해서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기관이에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렇습니다.

○박민식 위원 그러면 공정성이나 공공성 또 위법성 여부를 심의하는 기관인데 말씀하신 대로 내용, 어떤 인터넷 기사다, 그 내용이 위법하냐, 음란성이 있다, 명예훼손이다 심의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광의로 해석을 하면, 공정성을 훼손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민식 위원이 뭔가 허위 사실을 막 하는 것도 공정성을 침해하는 거지요. 그러나 예컨대 어떤 기사, 네이버 때문에 저하고 경쟁하는 사람은 아주 크게 타격 때문에 늘상 게재를 하고 제가 잘한 것은 저 구석탱이에 찾으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식으로 배열을 하면 그것은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뭐……

○박민식 위원 그래서 그렇게 따지니까 네이버·다음에서 뭐라고 하나면 그것은,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보니까. ‘알고리즘의 문제다’, 뭔가 사람이 개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의 어떤 산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알고리즘을 누가 만듭니까? 그 알고리즘을 누가 만드냐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오기 전에 직접 확인을 해 보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배열이 된다고 하면 사람이 뭐 필요 있어요, 개입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네이버에 맨 처음에 그것을 하는 사람이 20명의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20명의 직원들이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 따라서 충분히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클릭수 말씀을 하셨던데 클릭수라는 것도 네이버에 틀어 봐요. 네이버에 틀어 보면 초기 대문 화면 맨 처음에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자꾸 클릭을 해서 판가를 나는 것 아니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맨 처음에 그러면 초기 대문 화면에 어떻게 그게 게재가 되냐고요. 그것을 누가 선택합니까? 그것은 직원들이, 2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취사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무슨 포털 재갈 물리기다, 겁박한다, 내년 총선이 어떻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방송·통신·포털, 어떻든 국민들의 의사 형성에 아침이 눈 뜨고 밤에 잘 때까지 영향을 많이 주고 권력이 큰 매체라고 하면 KBS·방송·신문 마찬가지로 많은 규제와 지배구조에 대한 법의 그것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 몇 명 선임한 것 가지고도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만한 권력이 있는 포털에 당연히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아무튼 공정성과 공익성 문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언론과 또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이나 모든 기관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민식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인천 계양구의 최원식입니다.

방통위위원장님, 국내 지상파 방송 수신율이 TV·라디오·DMB 할 것 없이 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 대략 알고 계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런데 수신율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방통위는 미래부 소관 업무라고 답변하고 있고 미래부는 지상파 정책은 방통위 소관 업무라고 해서 직접수신 개선에 대해 서로 미루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장 최성준 그러니까 직접수신을 할지 여부의 선택은 시청자가 하시는 부분인데요. 다만 수신 난시청 지역이 없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부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 지상파 정책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자들이 직접수신을 더 편리하게 희망하시는지 아니면……

○최원식 위원 정책적인 측면은 방통위가 해야 겠지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장 최성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식 위원 계속 여쭙 볼게요.

90% 이상이 아직도 지상파 TV를 이용하고 있지만 직접수신율은 조사방식에 따라 6.7~13.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또 방통위가 전국 터널·지하공간 재난방송 수신환경현황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따르면 터널에서 라디오·DMB의 수신 상태가 양호한 중계기가 10%에도 못 미치고 또 지하철에서 수신이 잘 되는 곳은 절반 수준, 도로터널 1667곳에서는 DMB 수신불량률이 91.2%, 라디오가 95.1%, 철도터널 651곳도 DMB의 98.9%, 라디오의 98.1%가 수신불량이에요.

대략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장 최성준 예,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최원식 위원** 이렇게 지상파 TV 직접수신율이 한 자릿수 안팎인데 영국은 39%, 유럽은 24%, 미국은 29%, 일본은 53%, 이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또 선진국은 계속 수신을 제고 정책을 통해서 올라가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3분의 1 수준으로 급전직하했는데 대충 맞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터널이나 지하공간 부분에 관해서는……

○**최원식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은 또 수신료 2500원 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5000원 내지 1만 원 정도의 유료방송료 등을 내는 상황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그래서 과연 지금 수신료의 적정성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TV 직접수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난시청 해소, 공공주택 공시청 시설 지원, 시청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UHD TV 방송 전환을 계기로 직접수신율을 높이는 정책 목표를 몇 년까지 몇 %를 실현할지 제시하고 로드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송위원장으로서는 직접수신율의 목표를 언제까지 몇 %를 잡고 있는 것 있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현재로서는 UHD 관련해서 TF를 구성해 가지고 다양한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원식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수신율의 목표를 잡아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방송기술계 일각에서는 UHD TV 방송 전환을 계기로 TV 수신기에……

다이버시티 안테나(diversity antenna)라는 것이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이것을 내장시켜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처럼 전원을 켜는 순간 전파를 바로 수신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내장 안테나가 도입되면 별도의 안테나를 연결하지 않아도 방송을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수신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 검토한 적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방법은 알고 있습

니다만은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내장이 되면서 TV의 제조원가가 높아져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효과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작년에 라디오와 DMB가 재난방송 의무수신 매체로 추가 지정됐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리고 방통위도 방송수신 음영지역 개선을 위해서 2015년 예산을 9억 원 집행중이고요.

그래서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비 또는 지방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지자체는 예산 배정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예산을 산정해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어서, 제 기억에 기금이 2000억이 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예산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면서……

○**최원식 위원** 전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졌는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일단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 방침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지자체나 또는 시설관리 주체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최원식 위원** 그리고 라디오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영국의 유니버설 스마트폰 라디오 프로젝트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내장된 FM 수신기를 통해서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것은 압니다.

○**최원식 위원** 제조사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제조사 협조가 원활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사례를 살펴보고 제조사 의견을 들어 보셔서 이게 추진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전체적으로 2012년 말 완료된 방송 디지털 전환은 직접수신율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UHD TV가 도입되는 이 시점에서 직접수신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래서 지상파가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서 위상을,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리고 종편인데 지금 종편에서는 끊임없는 특혜 논란이 있는 것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특히 저는 오늘 방발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 및 유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방발기금은 방송사업자가 방송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공동 분담금이고 또 지상파와 방송사들은 전파사용료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종편도 경영결과에 관계없이 광고매출액 대비로 납부해야 된다는 게 원칙은 맞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위성이나 IPTV처럼……

○**최원식 위원** 아니, 이 원칙에 대해서 대답을 먼저 해 주셔야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원칙은 방발기금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식 위원** 좋습니다.

종편 출범 이후에 종편 4사가 방발기금을 납부한 금액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그런데 오히려 다른 사업자가 납부한 방발기금은 쓰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1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러니까 3년간 22억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7월 2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방발기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징수에 관련해서 0.5% 징수하되 1년 유예하는 안을 여당 추천 위원들과 위원장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이유는 종편이 적자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적자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이나 IPTV가 적자인 경우

6년까지 방발기금을 징수하지 않았던 예와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러면 다른 방송사들도 적자인 경우에 방발기금을 면제해 주고 그런 적 있습니까, 다른 방송?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처음 시작할 때 적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다 해 왔던 것이고요, 다만 지상파를 사용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전파사용료를 안 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접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이따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대구 북구갑 권은희 위원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이제 통신서비스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이것이 방송인지 통신인지 이용자들이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민원 중에서 방송통신 관련한 민원이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5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평균이 60%가 됩니다. 이 말은 소비자원에 신고되는 민원들의 60% 이상이 전부 통신에 관련된 것이고……

그 통신에 관련된 것을 그럼 소비자원에서 처리를 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대부분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나 또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서 하는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이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5년 동안 60% 이상의 민원이 통신서비스나 방송통신 관련돼서 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것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은 어떤 민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동전화서비스가 가장 많은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피쳐폰 관련한 민원,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한 민원, 그리고 초고속인터넷 관련한 민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민원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휴대폰을 개통할 때 대리점과의 계약이 잘못된 경우, 그리고 또 요금청구 관련돼서 잘못된 경우,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소액결제 관련해서는 민원 건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2011년도에 1882건이었는데 2013년에 8900여 건으로 5배 정도 증폭을 했거든요. 그런데 소액결제 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면 콘텐츠제작자, 그다음에 결제대행사, 앱스토어 운영자, 이런 다수 사업자와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내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고 누구한테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권은희 위원 그래서 이제는 이런 방통위로 이첩되는 민원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단순히 소비자민원이라는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이용자라는 관점으로 보고 이용자 보호를 중점으로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권은희 위원 현재 방송시청자나 통신이용자의 경우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똑같은 방송콘텐츠라 할지라도 텔레비전을 이용해서 방송을 수신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IPTV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IPTV법,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권은희 위원 그래서 각기 다른 법률을 적용받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방송인지 통신인지 구분이 불명확한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요즘? OTT라든가 DCS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 이것을 누구한테 또 하소연해야 되는가, 이게 방송인가 통신인가 이런 애매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넷플릭스 같은 해외 OTT 사업자까지 우리나라에 진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이용자를 기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또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들을 규제하기 위한 대

책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사실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 저희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펴나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금 새로운 환경에 맞는 그러한 보호수단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래서 제가 스마트생태계 전체를 포함해서 어떤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하건 창구를 단일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통합 이용자 보호체계를 위해서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을 해서 제정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위원장님, 살펴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즉 봤습니다.

○권은희 위원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저희 정책방향하고 같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그 내용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방송통신의 융합으로 과거에는 방송매체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동영상콘텐츠가 지금은 다양한 매체, 다양한 시간과 장소, 기기의 제한 없이 어디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심위는 방송법에 따라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 방송사업자가 인터넷모바일 등 전기통신 회선을 통한 TV방송, 라디오 이런 명칭을 사용하면서 편성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유통시키는 정보, IPTV 콘텐츠 중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법체계에서 다양한 유형의 방송서비스가 방송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이런 동일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간의 비대칭규제, 또 규제의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실시간 다시보기 서비스는 방송심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방송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알고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실제적인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권은희 위원**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예를 들면 iMBC라든지 SBS콘텐츠허브,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 저희들은 이게 유사방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권은희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직접 운영하는 티빙(tving)은 방송심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iMBC하고 SBS콘텐츠허브가 제공하는 폭(poq)은 방송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티빙이나 폭은 똑같은 서비스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렇습니다.

○**권은희 위원** 이런 상황에서도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방송심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대책이 무엇입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위원님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방송법하고 IPTV법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개선을 위해서 관계기관하고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적극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홍의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방송통신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이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일부결격사유는 저희가 신원조회 형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홍의락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일부결격사유라는 것은, 일부 결격사유는 어떤 거고 진짜 결격사유는 어떤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에, 방송법 제48조에 있는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당 당원이나 인수위원, 대선캠프 자문, 고문을 했을 경우에 3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홍문종 위원장, 박민식 간사와 사회교대)

○**홍의락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은 저희가 대상자를 당에다가 확인해 보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홍의락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위원장님. 확인을 제대로 해서 임명을 해야지, 그것 하는 사람을 어렵다고 그래서 안 하면 어떻게 임명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일률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홍의락 위원** 아니, 수백 명이 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일단 그것은 임명하고 난 뒤에도 확인을 해야 되고, 달랑 결격사유확인서에서 본인이 이렇게 사인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만 들고 와 가지고 이것 확인했다고 그러면 이게 직무유기지 됩니까, 이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것을 좀 더 정교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강구하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 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결격사유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분들은 저희가……

○**홍의락 위원** 알려져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은 직접 확인을 해야 되고 법을 지켜야 돼요. 여기 보면 '이러이러한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 이사가 될 수 없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진흥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법이? 그런데 알려져야 되고 안 알려져야 되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이라도 이사되신 분 중에 그런 결격사유가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분들은 여기 그만두셔야 됩니다.

○**홍의락 위원** 그러면 확인을 누가 하지요? 개인한테 물어서 합니까, 위원장님이 확인하십니까?

이것은 임명권자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지요. 지금 이런 문제가 여야에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방송위원장의 직무유기예요.

위원장님, 홍문종 위원장님! 이것은 여야 간사들이 확인해 가지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또 지난 8월 20일 날 방송통신발전위원회 고시 개정을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홍의락 위원** 개혁을 하셨는데 여기에 종편 방발기금은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하기로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정수는 하되 부칙으로 해서 내년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홍의락 위원** 그런데 이러니까 이런 것도 야권 추천 위원들하고의 의견과 합의의 원칙에 의해서 합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밀어붙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논의는 상당히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서로 모아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홍의락 위원** 이러니까 자꾸 특혜 논란이 일어나고 형평성 시비가 나고, 나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상당히 고매하신 분들인데 계속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헛갈리게 논란이 일고 형평……

야당에서 쓸데없이 자꾸 얘기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로서는 다른 매체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의락 위원** 다른 매체하고 어떻게 종편하고 이런 데 형평성이, 지방사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안에 따라서 이것을 하는 건데 지금 지방 민방이나 지방방송 재정 안정을 위해서 이것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놔잖아요.

종편이 중장기 과제입니까? 이것을 이렇게 빨리 하면서도 내년으로 하겠다, 이렇게 특혜를 주고 지방방송사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고사되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행태를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홍의락 위원** 그러면 빨리 해결을 해 줘야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하여간 저희가 지역방송의 활성화,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해서 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지금 민방 광고 점유율을 보면 형편없이 자꾸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홍의락 위원** 그리고 MBC 같은 데도 형편없이 낮아, 서울 같은 경우는 배분율 보면 2008년도에는 63.8%에서 36.2%, 지금은 67.1%에서 32.9%예요. 이런 것도 MBC에 얘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이것을 개선을 해 줘야지요. 지방사가 지금 적자내면서도 방발기금을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아시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방발기금 기준을 새로 만들면서 지역민방의 방발기금을 2.78%에서 0.65~2.3으로 거기도 대폭 낮춰 줬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도 방통위가 계속 종편 뒤처리나 하고 또 이사들 뒤처리나 한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되고 자존심을 좀 살려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발 공정성 회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 선임 결격사유 같은 것은 정말 확인해서 가지고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부결격사유, 치산자·금치산자 이런 것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대선 때의 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이런 부분도 조금 살펴보고 하셔야……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 부분을 정교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홍의락 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확인하실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들도 고민을 좀 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것을 당에 확인을 해도 제대로 확인이 지금 잘 안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홍의락 위원** 당에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서 확인할 수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다른 데서는, 예를 들면 대선조직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넓은 조직의 어느 위에서 자문을 한 것을 개별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은 없는 것인지……

○**홍의락 위원** 그러니까 편중인사라고 얘기 듣고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들이 임명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지금 여러 가지, 지난 KBS 이사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셔서, 저는 정말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특별히 유념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임명된 분 중에 해당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확인 안 하셨잖아요? 그것을 없는 것으로 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안 하셨잖아요, 확인을? 안 하셔 놓고 자꾸 없는 것으로 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알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한다고 그래야지, 빨리. 빨리 조치 취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민식** 홍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갑자기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다 보니까 저를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호 위원** 인천 부평갑 출신 문병호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님, 이번 국감에서 새누리당이 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기사가 야당 편향적이라고 해서 증인 신청한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 상임위에서요?

○**문병호 위원** 그렇지요. 우리 상임위 포함해서

여러 상임위에서 다음카카오 그다음에 네이버의 의장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요구를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다른 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문병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글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어 가지고 그냥 그렇게 기사로……

○**문병호 위원** 아니, 만약에 포털사가 정치에서 편향적이라고 그러면 그게 방통위에서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기사 배열 같은 부분은 신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로 알고 있고 저희하고 직접 관련되는 업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렇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문병호 위원** 포털에 대한 정확한 업무 관장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정확하게 방통위 소관은 전혀 아닌가요? 관련된 게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사 배열 부분에 관해서는 신문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포털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관리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포털 관리나 인터넷 윤리 교육에 대해서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다른 포털의 업무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병호 위원** 조금 더 알아보고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문병호 위원** 그다음에 시청자미디어재단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문병호 위원**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출범한 취지가 시청자 권익증진사업을 담당하기 위해서 출범한 것 아닙니까?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이석우** 예.

○**문병호 위원** 그런데 여기 7명의 간부급 경력 직원 채용과정에서 5명이 청와대나 정부나 여당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이석우** 예.

○**문병호 위원** 이게 적절합니까? 시청자 권익증진사업을 담당하라고 있는데 웬 청와대 여당 또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옳은 인사입니까?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이석우** 시청자미디어 재단이 새로 출범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업무하던 직원들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국회 업무라든지 정부 업무 그리고 공공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쪽 정부라든지 또 언론에도 있었고 또 당 경력도 있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신생 공공기관으로서 필요한 경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병호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7명의 간부 중에 5명이나 필요합니까? 시청자 권익증진하는데 청와대 경력이고 여당 경력이 무슨 큰 중요한 이력입니까?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이석우** 전체 시청자 재단 인원이 100여 명 됩니다. 그중에서 그런 경력을 갖춘 기존의 경력직이 거의 없었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리고 의원 사무실에서 요구하니까 해당 인사들 청와대나 여당 경력 누락한 채 자료쳤지요? 처음에 그렇게 안 했습니까?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이석우** 간략하게 아마 핵심 경력만 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래서 오늘 방송통신 관련 기관장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정말 방송통신의 중립성, 언론의 중립성을 늘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사 하면 안 되지요.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이석우** 그분들이 정부나 또 당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전문성을 가지고 주로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문병호 위원** 그래서 이것 해도 너무해요, 해도 너무해요. 정권이 형식적인 균형을 맞춰야지요, 아무리 그래도 말이지요. 이게 뭐니까? 완전히 드러내 놓고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인사 하는 겁니까?

잘 된 겁니까, 이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이석우** 말씀드린 대로 경력이 필요했고 또 나름대로 경력을 잘 수행했다고 판단되는 분입니다.

○**문병호 위원** 이 부분 한번 재검토해서 다시 시정하도록 하세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 해 가지고 아예 드러내 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래요? 국가기관이라면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방통위원장님, 종편에 대해서 오늘도 많은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문병호 위원** 종편의 여러 가지 편파성 문제 또 특혜성 문제가 오늘 또 많이 화두에 올라있는데 다 알고 계시지요, 오늘 많이 지적된 것 같은데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문병호 위원** 저도 오늘 TV조선의 2015년 방심위 제재 사유 68%가 야당 편하로 나왔다는 것도 채널A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정도의 편파성이 있다, 아까도 여러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이게 그런데 시정이 안 됩니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이네요.

위원장님은 법관 출신이시니까……

어떻습니까, 1~2번 그랬다 치더라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요구를 하면 이게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의 경우는 나폴라라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뭐하는 겁니까? 제대로 감독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은 제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재승인 조건에 공적 책임, 공공성 실현을 하기 위한 출연자들에 대한 다양한 관리 등을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반기별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분을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어떻게 징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을 받고 있고 미흡하면 또 다시 더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호 위원** 방심위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중**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문제, 종편들의 문제점, 막말이라든지 또 편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사는 저희 위원회에서든 많은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 건수가 많은 것도 저희들이 경각심

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늘어난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우려를 어쨌든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해서 더 엄정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 제대로 제재를 해서 가지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민식** 문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으로 송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창 위원** 박효종 방심위원장님께 먼저 여쭙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개그콘서트의 민상토론하고 무한도전에서 몇 가지 풍자한 내용,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가 일어난 이후이고, 그래서 그때 메르스 사태 이후에 ‘낙타를 조심해야 된다’ 그런 표현이 있었고……

개그 프로그램에서 풍자를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징계를 한 적 있잖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송호창 위원** 징계를 했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제가 질문을 할 때 답을 하시라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알겠습니다.

(박민식 간사, 홍문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호창 위원** 그리고 그때 징계를 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하셨는데 일부 시청자가 불편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징계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

○**송호창 위원** 질문할 때는 답을 주셔야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알겠습니다.

○**송호창 위원** 그다음에 민상토론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하기 직전에, 방심위에서 징계를 하기 직전에 결방까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사실이 있는 거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송호창 위원** 아니, 방심위가 징계를 하는 건데 있다고 들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저희들이 징계한 게 아닙니다. 결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호창 위원** 아니아니요, 징계를 한 것, 징계. 행정지도를 하셨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송호창 위원** 질문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이런 정도, 그러니까 낙타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 정도를 가지고도 이렇게 징계를 하고 했는데……

최근에 소위 말하는 일간베스트 잘 아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송호창 위원** 거기에서 온라인상에 악의적으로 박원순 죽이기, 소위 박원순 죽기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도가 넘는 홈페이지 게재물들이 계속 게재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에 나온 게 그중의 한 부분인데 일베, 소위 말하는 ‘일간베스트 저장소’라는 데고 ‘박주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아들을 경호해야 한다, 이게 무슨, 입에 담을 수도 욕설을 쓰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보다 훨씬 심한 거지요, 저것은. 그렇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

○**송호창 위원**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렇다고……

○**송호창 위원** 그리고 저 정도는 그냥 단순히 심한 정도가 아니라 위법한 거지요.

일단 우리 현행법에 명백하게 위반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

○**송호창 위원** 답변을 좀 빨리 해 주세요. 예?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송호창 위원**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일간베스트에 홈페이지에 다시 올라와 있는 것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릴게요.

박원순 시장 및 그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병역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서 아들에 대한 살인 내지 아들의 자살을 방조하거나 이 아들이 사망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거나 아들을 해외로 도주시켜 잠적하거나 아들이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게재해서 올려놨습니다.

이게 방심위의 심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제

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저희들 그런 문제라면……

○**송호창 위원** 심의 대상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송호창 위원** 그리고 만약에 심의를 한다고 하면 다른 아까 얘기했던 개그콘서트 문제나 풍자 프로그램에 대한 낙타를 조심해라 정도에 대해서 징계한 것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방송……

○**송호창 위원** 일단 징계의 사유가, 징계할 수 있는 종류가 제일 센 게 과징금이 있지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런데 지금이……

○**송호창 위원** 제 질문에 답을 해 주세요.

징계의 종류가 과징금이 있고 관계자 징계, 프로그램 수정, 경고·주의 그리고 행정지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정도 수위의 법률 위반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정도의 제재물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고 하면 물론 심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보통 다른 사례들과 형평성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징계를 하게 됩니까, 이런 정도 표현이라면?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송하고 통신이 심의하는, 말하자면 절차도 다르고 징계 수위도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방송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지도 그다음에 법정제재 이렇게 나가지만 통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삭제나 하든지 이용해제를 하든지 그런 수준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의 종류나 이것이 방송이나 통신이냐에……

○**송호창 위원** 제가 지금 종류나 강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이런 프로그램이나 심의를 해서 제재, 징계를 할 때 이 정도 수준의 악의적이고 그리고 아주 위법적인 정도의 표현물이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징계를 보통 받게 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방송에 나왔다면, 지상파에 나왔다면……

○**송호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방송에 나온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MBC에서 방송을 한 것 있지요? 얼마 전에 방송해 가지고 문제된 것 있잖아요?

MBC가 지금 재판 과정에 있는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계속 1인 시위를 하면서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양승호 씨, 한 6차례 검찰과 법원의 판결과 수사 결과 해서 ‘병역비리 문제는 의혹이 없다’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이분이 계속 자생병원, 아들의 조사를 했던 MRI는 20대가 아닌 40대 남성의 것이다 이런 걸로 지금 보도를, 발표를 했고 그것을 MBC가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찰에서 병역 위반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혀 준 건데도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것을 MBC는 양씨의 주장을 이미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만 MBC가 보도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를 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에게 민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심의할 예정입니다.

○**송호창 위원** 당연히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해야지요. 그 얘기를 여기서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의 징계를 하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정도 수준이면.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러니까 징계의 수준이나 징계의 여부……

○**송호창 위원** 이런 정도 사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징계를 심의해야 되겠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민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이 사안이 정말 엄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정리를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송호창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하시는데 이때까지 여러 사안들이 있었는데 이런 정도의 위법한 사항이라면 어느 정도 징계 수위를, 다른 사건에 비해서 통상 어떤 정도의 징계를 하게 되는지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추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호창 위원** 어떤 것은 조심스럽지가 않습니까?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다 기본권의 침해고, 피해자들이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은 뭐 조심스럽지 않은 것이 있겠어요? 전부 다 조심스럽게 심의를 하셔야 되는데 좀 형평에 맞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저희들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호창 위원** 방통위원장님께 한 가지 여쭙면서 참고인한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 해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있는데 해외 사업자들에게 대해서도 현행법 정보통신망법이나 이런 관련법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치를 취하는 거지요? 국내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구글 같은 경우에 한국에 구글코리아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구글 본사에 대해서 바로 적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송호창 위원** 알겠습니다.

김보라미 참고인, 혹시 나오셨는가요?

○**위원장 홍문종** 참고인은 아직 아니지요.

○**송호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할 순서입니다마는 장내 정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3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는 여야 간사 간 합의된 네 명의 참고인이 출석하셨으며, 일반증인이 없는 관계로 증인 선서 절차 없이 참고인 신문에 들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라미 이동통신유통협회 고문변호사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진모영 PD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진오 PD 나와 주셨습니다.

끝으로 김영미 PD 나와 주셨습니다.

(참고인 인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했으므로 별도 확인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정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증인이나 참고인이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신 참고인들께서 특별히 반대하는 이유가 없으시면 신문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참고인 있음)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방통위 등 기관 증인에 대한 질의와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부족하시면 1분을 더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전 유성구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민병주 위원입니다.

방심위 위원장님, 가끔 TV를 보면 연예인이 소속사를 통해서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사실우리 사회가 악성 댓글 다는 것을 범죄로 인식하는 것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공감합니다.

○민병주 위원 지난 2008년도에 전 국민을 충격으로 빠뜨렸던 인기 여배우 고 최진실 씨의 자살 동기는 우울증이었지만 그 우울증을 악화시킨 것이 바로 악성 댓글 때문이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렇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 외에도 또 적지 않은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예인들이, 연예인뿐만 아니라 또 청소년들까지도 자살 배경에는 악성 댓글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공감합니다.

○민병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표 준비가 되는 대로 보시도록 하고요.

강풀이라는 사람이 악플에 대해서 고소를 했지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 장보시면 세월호 희생자를 어둠으로 비하한 일베 회원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악플과 같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제도개선 부분을 정치적인 쟁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병주 위원 그래서 명예훼손 그 자체에 대한 논의에 집중을 하고, 앞에서 예시한 그런 문제점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을 다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악성 댓글도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정보통신에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심의 규정을 지금 방심위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민병주 위원 이 부분을 정치적인 쟁점으로 볼게 아니라 인터넷상의 악성댓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심각한 차원에서 본다면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시민의식이나 상대에 대한 배려, 인격적인 대우, 자정능력 이런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예방 차원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위원님의 관

심사항과 우려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래서 이런 순기능을 강화하는 운동을 방통위원장님, 방통위에서 아름다운 말, 고운 말 쓰기 운동인 선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아주 짧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부가 주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선플 달기 운동 같은 그런 것과 서로 손을 잡아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병주 위원 방심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최근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맞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래서 표현의 자유, 아까 보신 그 표를 보시면 저게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것은 욕설이지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서 남을 모욕하거나 욕설하는 것은 분명히 범죄이고 방심위가 일정 부분 규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민병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국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명예훼손 심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 토론회도 있었던 것 같고요, 다양한 의견도 수렴된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악성댓글을 통한 연예인의 자살 등 사회적 문제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방통위원장님, 제가 연초에 포털의 인물정보서비스 현황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부탁드렸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표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인물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포털이나 언론사들이 당사자 동의를 받아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인물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민병주 위원 그래서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가공하는 방식으로 인물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런 상황이 있는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마땅히 개선 방안을 잘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된 정보지만 수집을 해 가지고 더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영리적으로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또 그 정보가 어떤 경우에는 너무 상세해 가지고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현행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찾아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털의 인물정보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19대 국회에서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 방안을 종감 때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상호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집을 냈는데요.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이상호 위원 방송사에서 이 제작 과정에서 외주제작사 PD나 혹은 독립PD들에 대한 그동안의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 MBN PD 폭행 사건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보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제가 여기 사례를 죽 모아서, 실제 독립PD 분에게 의뢰해서 여러 가지 실태 사례들을 죽 묶었습니다.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증언을 듣기 위해서 지금 독립PD 세 분이 와 계신데 편의상 한 분만 모셔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유명한 영화를 직접 연출을 하신 진모영 PD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실제로 독립PD로 활동하시면서 직접 느꼈던 가장 인격적인 고통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참고인 진모영 저희들은 방송사에 소속돼 있지 않고 방송사 바깥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나 독립제작사에 소속된 PD들을 통상 일컬어서 독립PD라고 하고 있습니다. 독립PD들은 방송사와의 관계에서 대부분이 방송사보다 한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 제작비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제작 지휘를 받고 시사를 하고 납품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지위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이고 관행화된 언어폭력 그리고 인격 무시, 성추행…… 저도 방송을 시작한 지 20년이 됐지만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은 언어폭력을 당했고, 심지어는 방송사의 PD로부터 PD가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그런 것까지도 당했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제작의 모든 부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적인 장치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독립PD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호 위원 가령 그런 폭언 폭행 성추행,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작을 다 같이 하는 사람들인데 그럴 경우에 그 위에 상사나 누구에게 전달하면 시정될 수 있지 않을까요?

○참고인 진모영 이번에 MBN이 저희 독립PD를 폭행해서 안면이 함몰되고 수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 사건이 나고 나서 저희들이 MBN에 가서 일인시위를 60여 일 정도를 했습니다. MBN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있다가 60여 일이 지난 후에 저희들이 검찰 고발에 들어가고 국정감사까지 끌고 왔을 때 간신히 사과를 했어요. 그 사과를 받아 내는데 까지 땀방울에서 60일

을 저희들이 건넸습니다.

그런데 MBN은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았고 저희들에게 사과도 아주 형식적으로 했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비단 MBN의 문제만이 아니지요. MBN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종편사가 똑같은 것이고, 모든 지상파방송사가 저희 독립PD를 폭행하고 나서도 취할 수 있는 아주 비슷한 형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그런 독립PD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제작 관행과 문화가 바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진모영** 저희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들이 일명 MBN법을 제정을 하자라고, MBN법을 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여러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 MBN법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PD들이……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여러 가지 외주제작과 표준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내놓고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MBN 사태가 나고 나서 긴급 실태조사, 인권 실태조사를 했어요, 독립PD들의.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PD들을…… 그리고 그것은 독립PD들에게 적용되기에 되게 알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MBN법의 핵심은 첫 번째, 독립PD들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될 때는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가 명확한 계약관계를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처럼……

○**이상호 위원**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해 주세요.

○**참고인 진모영**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독립PD들의 인권을 감시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반드시 법제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MBN법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이상호 위원**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이상호 위원** 이런 실태를 오늘 들으셨는데 방통위가 지상파방송사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의 한계는 있겠지만 적어도 인권에 관한 문제고 우리나라 한류의 기반이 되는 제작 환경에 관한 문제인데 어떤 형태로든 이런 점이 개선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외주제작사 또 거기서 일하시는 독립PD들의 역할이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송사하고 외주제작사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해 가지고 이런 상생 방안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독립PD들의 지위까지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좋은 정책 방안을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우리나라에서 만든 방송 프로그램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팔려나가고 세계의 많은 시청자들이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이상호 위원** 그런데 실상 그 프로그램들이 맞아 가면서, 침 뱉어 가면서, 폭언을 들어가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할 때 과연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세계의 시청자들이 과연 뭐라고 하겠는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제작 현장에서 이러한 반인권적 상황들이 그대로 벌어졌다고 하면 저는 우리 정치인이나 또 방송 관련된 기관들이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 것이다 하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방송국의 갑질 또 그동안 관행화되어 있던 이런 폭언 폭행, 제작 관행의 문제점들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주장하고, 방통위원장님의 관심을 다시 한 번 당부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대북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지난 8월 21일에 일부 방송에서 조선중앙방송을 아무런 여과 없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실시간 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강력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간다는 최후통첩’이나 ‘남조선 괴뢰군부 깡패들’, ‘정치·군사적 도발’, ‘위기일발의 폭발 국면’ 등의 이런 자극적인 표현이 아무 여과 없이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아나운서의 고조된 억양이나 듣기에 거북한 표현들이 담겨 있는 북한 방송의 생방송 중계는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북한 방송을 생중계로 방송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분야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송심의위원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심의를 한번 거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하고요. 그런데 워낙 북한 방송을 그대로 생중계하는 것은 어쨌든 1999년에 북한 방송 개방정책이 있어서 그 자체로는 사실은 저희들이 심의의 대상으로 삼기가 어려운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처럼 여과 없이 생중계되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의 지적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업자들의 불법 유해정보 유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이 작년에 방심위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그래서 2014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범적으로 참여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렇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런데 이 기간 중에 방심위가 구글에 자율심의 요청한 것은 전체 8947건 중에 20건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맞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래서 구글에 대한 심의 요청 건수가 왜 이리 적은지,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지적하신 대로 적은 숫자입니다만 추세로 보면 증가 추세에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로서는 구글보다는 국내 사이트에 대한 신고나 모니터링에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글하고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의견을 전달을 하고 조금 더 나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국내 제조사 스마트폰의 대부분이 안드로이드 체제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핸드폰에 구글 검색이 선택이 되는 것이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강길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의 접근성이 어떤 것보다도 더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구글의 비협조적인 이런 문제는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 방심위의 시정요구 대상의 73%가 해외 사업자의 게시물인 상황에서 해외 사업자들의 불법 유해정보 유통 협조는 국내 건전한 통신환경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사실 구글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상당히 비협조적이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니까 구글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가 또 참여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점진적인 수준이나 어쨌든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내법에 의해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이개호입니다.

방심위원장님!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이개호 위원 통신심의규정 개정 최근에 추진하다가 보류된 적이 있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이개호 위원 인터넷상 명예훼손으로 판단되는 게시물에 대해서 방심위에서 직권으로 또는 제삼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인데 이에 대해서 언론노조를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까지 반대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도 아마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지난 8월 17일 날 이에 대한 개선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 방심위원장님이 ‘공인의 경우에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

우에 한해서 제삼자의 신고를 허용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발언을 하셨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발언 취지가 통신심의규정 개정을 다시 추진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저희들이 여러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이개호 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명예훼손과 관련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 한해 제삼자의 신고를 허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랬습니다.

(홍문종 위원장, 이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이개호 위원** 개인적인 사건을 말씀하신 건가요, 토론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물론 저는 아홉 사람 중에 한 위원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사건입니다만 아무튼 저의……

○**이개호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통신심의규정 개정을 다시 추진하실 겁니까, 하지 않으실 겁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는 사실 정치인이나 공인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토론회 인사말에서 사실 '공인에 관한 부분은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경우에만 한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이외에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문제 또 얼마 전에 사실 있었습니다만 무슨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제3자에 이런 신고를 허용할 수 있어야지 결국은 표현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개호 위원** 인사말씀 때 하신 말씀하고 자꾸,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다가 꼭 뒤에서 꼬리를 트시는 것처럼 들려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개선토론회 때 하신 인사말씀 취지대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것 제가 책임지고, 아무튼 그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하야튼……

○**이개호 위원** 좋습니다.

또 방심위 제재 조치에 대한 처분취소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죽 집계를 해 보니까 12건이 제소가 됐더라고요. 그중에서 6건을 방심위가 패소를 했습니다, 반 정도 패소가 된 거지요. 그런데 방심위에서 각종 징계처분에 불복해 가지고 재심청구가 잇따르고, 그것도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겠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이개호 위원** 그게 출범 이후에 보니까 49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기각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방심위 자체적으로는 기각을 하는데 소송으로 가면 한 50% 정도가 구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방심위 자체적인 구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방심위는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전에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는 지난번 6월 13일 방송된 무한도전, 메르스 예방법으로 '낙타고기나 생낙타유를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도 징계를 했던데 그것은 교육부에서 학생들 예방수칙으로 알려 준 것 아닌가요? 그것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위원님 지적이 참 옳다고 생각되는데 그때 그 상황은 염소 기르고 이런 농가에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낙타 문제만 있었으면 괜찮은데 염소니 이런 농가들까지 피해를 보니까 거기서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부득이하게……

○**이개호 위원** 낙타고기나 생낙타유를 먹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염소는 언급이 안된 것 같은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염소농가에서……

○**이개호 위원** 왜 느닷없는 염소까지 끌어들이 가지고 징계를 합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저희들이 이것은 자율적으로 했다가보다는 사실은 그 민원이 들어와서 심의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제가 어느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코미디 프로가 진짜 코미디가 아니고 방심위 제재가 진짜 코미디다' 이런 댓글이 있던데,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하셨지요,

지난 4월에?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이개호 위원 그래서 시행령이 공포가 됐네요, 7월 20일 날?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9월 20일부터 시행이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당연히 나오겠습니까마는 가상광고, 그리고 타이틀 스폰서십에 대해서는 지적도 많거니와 또 문제점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협찬고지, 그러니까 타이틀 스폰서십 부분은 방송법 시행령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다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영 위원 KOBACO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KOBACO 매출액 중에서 간접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 됩니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퍼센티지는 제가.....

○류지영 위원 잘 모르십니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간접광고가 올해 저희들이 판매한 전체 액수가 한 400억 정도 됩니다. 현재 지금.....

○류지영 위원 프로티지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전체 매출액 중에서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매출액이 올해 전체 1조 한 3500억 생각하는데 그중에 한 4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러면 간접광고가 도입이 되면서 처음에 연간 최대 1500억 정도의 그런 규모, 실적을 예상했었는데 맞나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당초에는

가상광고가 300억.....

○류지영 위원 처음에 그러셨지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예.

○류지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연간 판매실적이 500억 이하를 맴돌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간접광고 시장의 판매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간접광고와 협찬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경계가 좀 애매해지면서 방송매체사에서는 간접광고보다는 협찬광고를 더 선호하게 되면서.....

○류지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작협찬이라는 게 애매하게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다음 화면 보시면 알겠습니다.

간접광고와 협찬광고의 차이입니다. 간접광고는 미디어렐에서 판매되고 있고 또 방발기금도 내고 있지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그렇습니다.

○류지영 위원 허용 범위와 또 시간 등의 형식에서 방송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협찬은 방발기금도 제외되지만 형식 등의 어떤 규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모 드라마의 화면 캡처 사진입니다. 사장님, 저 자동차가 어느 브랜드인지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이것은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아시겠지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예, 동그라미가 4개 있는 아우디 제품 아닌가.....

○류지영 위원 그렇습니다.

제작협찬은 이렇게 브랜드 로고 노출이 안 되게 되어 있지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제작협찬은 노출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런데 방송사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렇게 브랜드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방발기금도 못 받고 규제가 많은 간접광고보다는 제작협찬에 몰리는 상황이 된 거지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예, 그렇습니다.

○**류지영 위원** 사장님, 이러한 실정과 KOBACO의 경영평가 부진이 상관있으시지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 매출영업 상황에 관련이 좀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있으시지요.

방통위원장님, KOBACO의 경영부진이 이러한 허술한 정책에 구멍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작은 부분이지만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간접광고와 협찬의 애매한 구분, 그다음에 또 협찬이 방송사에 여러 가지 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많이 이용하려는 경향에 한 원인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런데 KOBACO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방통위라든가 관련부처에 애로사항을 건의한 적 있으십니까, 사장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예, 몇 차례 건의한 게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있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 내지 않고는 KOBACO의 근본적인 경영부진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방통위원장님과 KOBACO 사장님의 각각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로서는 지금 좀 더 협찬고지가 투명화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간접광고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협찬고지의 원래의 목적했던 바대로 운영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류지영 위원** 개선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이번에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류지영 위원** KOBACO 사장님은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저희 KOBACO 입장에서, 광고 입장에서 본다면 협찬이라든가 간접광고도 결국은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광고 홍보비거든요. 그러니까 협찬도 저희들이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영업대상이 된다면 좀 더 광고 집행이 더 투명해지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서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법규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런데 현재 시스템을 통한 조사 방식은 조사대상 채널 총 494개 중 238개 채널에서만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52%에 달하는 256개 채널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숫자적으로는 맞습니다.

○**류지영 위원**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채널 중에서 PP의 경우 연말까지 자체녹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고 있고 또 소규모의 SO가 대부분이라고는 하지만 규제의 형평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채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개선책이 혹시 있으신지요?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영향력 있고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것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지역라디오라든가 또는 지역DMB, 지역SO 같은 것들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틀림없이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점점 모니터링하는 숫자를 늘려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독립PD 세 분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돌아가셔도 좋은데,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세 분 독립PD님들은 지금 퇴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께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요, 인터넷 명예훼손 제3자 심의 신청 관련해서 정보통신 심의규정 10조2항을 삭제하려고 지금까

지 진행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작정이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어쨌든 그 문제를 저희들 위원회의 합의제 정신을 살려서 어쨌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일정 계획은 있으세요? 언제 또 심의를 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유승희 위원** 언제쯤 됩니까? 일정 계획을 얘기해 주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지금 생각으로는 한 2주쯤 이 정도 해서……

○**유승희 위원** 2주 후면 며칠 정도 됩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무슨 요일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대개 한 2주 정도이기 때문에 한 27일?

○**유승희 위원**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목요일 날.

○**유승희 위원** 목요일이에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아, 24일.

○**유승희 위원** 24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9월 24일.

○**유승희 위원** 아까 지적한 바대로 10조2항에 대해서 명예훼손 관련한 제3자 심의 신청 관련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호창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서 이미 2013년 5월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인데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태로 두 차례 방송을, 또 박사의 인터뷰 녹취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징계 수위를 물어봤을 때 ‘조심스럽게 심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심스럽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러니까 조심스럽다라는 것은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 심의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유승희 위원** 굉장히 악의적이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까지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송할 수 있는 겁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객관적으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판단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이 사안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제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예단하기가. 또 각 아홉 분의 위원들이 나름대로의 양식과 양심에 따라서……

○**유승희 위원**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MBC가, 공영방송이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방송을 하는 것은 심각한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수위가 높은 왜곡보도 아닙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위원님, 저의 입장을 좀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입장을 밝히기가, 심의……

○**유승희 위원** 하여튼 납득할 만한 징계 수위를 정해 주시기 바라구요.

방송통신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인터넷 포털 임시조치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97만 8882건으로 지난 5년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다음카카오는 42만 7528건입니다. 증가 속도도 네이버가 2010년도에 비해서 3배 증가했고 다음카카오도 2배 이상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다만 SK컴즈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네이버와 다음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추정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삭제 요청을 받으면 100%를 30일 간 임시조치시키고 이의가 없는 한 30일 이후에 평균 99%를 삭제하고 1%는 임시조치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권리침해가 불확실한 내용들에 비해서 사업자들은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삭제 요청을 할 경우에 포털이 무조건적으로 임시조치를 하지는 않지만 임시조치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포털의 판단 이후의 절차가 지금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서 게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안을 제출해 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정보 게재자의 이의제기 권을 신설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리고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영세판매점에 폰파라치제도를 진행하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동통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관련해서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폰파라치가 순기능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반면에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폰파라치 신고자와 피해자 통화 내역인데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실제 통화 음성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작동이 잘 안 되는데 이것은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相箕 委員** 대구 북구을 서상기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께 통신회사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徐相箕 委員** 2013년에 1800억 정도로 과징금이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됐고 그다음에 2014년에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9월 현재 300억 좀 넘었으니까 기간하고 비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액수는 줄어든 것 같은데 건수로 보면 2013년에 4건, 14년에 3건, 15년에는 액수는 9월까지 300억밖에 안 되는데 5건이나 됩니다.

이런 건수 그다음에 액수의 변화하고 통신회사

에 대한 정책이나 규제하고 연관성 같은 게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기본적으로 과징금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율을 계산해서 위반에 대한 매출액을 모수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부과기준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건수가 적지만 과징금이 많았던 이유는 위반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2015년에는 그것이 극히 일부 소규모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徐相箕 委員** 그럼 예방 조치를 잘 하셨다 이렇게 자평을 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나름대로 위반이 아직도 은밀하고 교묘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는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본 위원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 신문 같은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과징금, 담합 과징금, 건설업계는 거의 관례화되다시피 해 있고 통신회사는 담합은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위반사항이 많아서 계속 과징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이것은 증거가 인멸되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금년에도 벌써 5건이나 되는데 자주 하는 것보다는 모아서 제대로 하는 것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통신요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론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불만도 많고 아직도 통신비가 OECD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인식이 아주 팽배해 있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감독도 제대로 못하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뭔가 잘못하고 있다 하는 기업 이미지에도 좋은 게 아니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도 이렇게 하면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거 인멸이 되고 하는 사안이 아니니까 좀 모아서 제대로 하는 방법이……

그게 문제가 됩니까? 고려해 볼 수 있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일단 문제가 생겼을 때 최근의 경우처럼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할인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또는 다단계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런 경우에 상황이 벌어질 때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처분을 하게 되는데 각 사안마다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나중에 몰아서 같이 하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조사만 다 완료가 돼 있고 증거가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나중에 한꺼번에 모으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徐相箕 委員**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사소한 것 같지만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통신요금 많은 절감 효과도 있고 실제로 또 피부로 느끼는 계층도 많은데 여론조사 같은 것 해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이런 것하고 관련되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불신 같은 것도 다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한 가지……

1분 더 주시지요?

○**위원장대리 우상호** 예.

○**徐相箕 委員**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핀테크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徐相箕 委員** 본 위원이 지금 핀테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 심각성을 몰랐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핀테크 빅데이터 시장이 전 세계에 2017년까지 300억 달러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이 예측되고 또 핀테크 산업도 국내외에서 그야말로 미래의 먹거리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국가적인 역량을 거의 총 동원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제일 걸림돌이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은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 할까 도외시한 채 카드사 한 번 사고 터진 이후로는 경쟁적으로 정보보호 쪽 그다음에 규제 강화 쪽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냉정하게 정말 균형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 사실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핀테크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산업에 이용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개된 개인정보나 또는 이용자 정보 같은 경우에는 누구인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제시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도 그것 비슷하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인정보 보호법을 주관하는 행자부라든지 관련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히 되면서도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徐相箕 委員** 방통위원회가 아주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 방통위원장님, 최근 특정 통신사의 불법 단말기 지원금 문제에 대한 행정처분, 영업정지를 언제 할 거냐 하는 집행 시기의 문제로 특혜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많았는데 이렇게 논란이 야기된 원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3월 26일날 신규모집 금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단말기 유통법 시행 초기여 가지고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시장 침체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위법한 행위를 한 사업자를 제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라든지 또는 유통점의 피해에 대해서도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잠시 뒤로 미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메르스 사태가 오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제재를 하게 되면 한계 제재를 해서 제재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생겨 가

지고 할 수 없이 밀려 밀려 지금 10월 1일부터 7일까지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병원 위원 모든 저기는 이유를 대기로 하면 아마 한이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최 위원장님 취임하시기 이전에 행정처분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통신사 불법 보조금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 방금 답변하신 것은 결국 물론 시장과 소비자를 다 고려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어느 때나 사실 그러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2012년, 13년 이때는 사실 행정처분을 결정한 후 2주일에서 한 달 이내에 다 영업정지가 이루어졌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평균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요. 이번 메르스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작년부터 그렇게 됐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시장에서 영업행위하는 기업 입장에서 6개월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사실은.

긴 시간이고, 또 작년까지의 상황은 3개 통신사가 동시에 적발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이익을 받는 시점이 같이만 적용된다면 같은 영향을 받지만 이렇게 특정 회사만 적발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적용 시기를, 처분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특혜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과중한 징계를 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즉 말해서 징계는 어떤 면에서는 신속성이 생명이어서 불법 행위를 했던 시점과 영업정지 시점의 시장상황이 가급적이면 비슷해야 행정처분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장병원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허원제 부위원장님, 부위원장께서는 최 위원장 오시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왜 이전에는 한 달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졌었는데 요즘은 6개월까지 계속, 작년 올해는 왜 이렇게 길어졌는가, 방통위의 행정처분 불확실성이 확대된 측면에 대해서 그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사실은 거의 같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덧붙인다면

일주일간의 판매금지 자체가 중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선택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적절한 그 시기의 경제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병원 위원 지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그 차이를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2012년, 13년은 다 1개월 이내에 왜 작년하고 올해는 6개월이 넘느냐, 행정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허위·과장 광고를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조치를 해라, 그러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과 광고를 하거나 할 때 홈페이지 전체 크기는 얼마로 하고 그다음에 주말을 제외한 어떤 날짜에 해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앙 일간지, 시청자들이 많이 읽는 일간지에다 해라 이런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행정처분 조치를 내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과, 지금 방통위는 사실은 과점회사들만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방통위와 사업자 간의 담합 자체도 이루어지기가 훨씬 쉽다 말입니다.

이 시장의 특성이 결국 여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처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준을 법령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방통위 자체가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통위 자체의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있을 때 처분을 어떠한 원칙하에서 한다는 기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만들어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는 말씀이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예외적인 사항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칙대로 처분을 할 때 신규 모집 금지에 들어가도록 하고 그런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원 위원 이통의 상품 특성상 이것은 과점

시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으면 항상 예를 들어서 특허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위원** 최성준 위원장님,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에 다단계 영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전부터 하고 있었습다라는 특히 특정 회사의 경우에 가입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해진 위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정도로 이게 번져 가고 있던데, 물론 이 영업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가정집이라든지 또는 인터넷 온라인상으로라든지 이렇게 은밀하게 영업이 이루어지면서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불법 보조금이 다시 또 살아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안정 정착이 되어 가는 단말기유통법을 또 흔들 소지가 있어 보이구요.

또 그 영업이, 피라미드식 다단계라는 것이 결국은 제일 상층부 꼭대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집중되고, 나머지는 거기 현혹되어서 하지만 결국은 그쪽에 이익을 몰아주고 희생만 당하고 또는 피해도 입고 하는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조해진 위원** 특히 요즘 이야기 들어 보니까 취업이 안 된 젊은 계층들이 그쪽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또 그런 피해도 우려가 되고 한데, 그 실태를 좀 파악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저희가 이번에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점 열두 곳을 조사하면서 사실상 실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 그다음에 또 다단계 판매점 중에서도 그런 위법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곳과 비록 회원 수는 적지만 그렇지 않은 곳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단말기유통법 위반한 것은 당

연히 제재를 하지만 그 이외에도 다단계를 단말기유통법 위반하지 않고 할 때 교육이라든지 또는 사전 승낙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제대로 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단계에 대한 너무 큰 기대, 허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도 좀 병행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예, 모니터를 잘하시고 불법행위는 특히 잘 규제를 하셔서 가지고 법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나중에라도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희가 한 번 조사에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라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리고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구체적인 사례 소개를 못드렸는데 직업적인 폰파라치 문제, 이 제도를 위해서 순기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작용을 사유별로 제가 쪽 들어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사실은 단말기유통법이 전체적으로 순기능이 있지만 판매대리점 영업이 위축돼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거기에 가 가지고 불법 보조금을 유도해 그것을 포착해 가지고 신고해서 포상금 받아서 더 어렵게 만들고 또 어떤 사례는 폰파라치하고 판매대리점의 직원하고 서로 짜고 해 가지고 신고포상금 또 나누어 가지는 그런 예도 있다고 그러고 또 불법 보조금을 포착했는데 신고를 안 하고 대리점주 또 판매점주를 협박해 가지고 돈을…… 그것은 명백하게 불법행위일 텐데 그런 사례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 가지고 유통질서도 문란하게 하지만 어려운 판매대리점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제, 단속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부도덕한 행위도 있고, 아예 명백히 법에 어긋나는 행위도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사실은 폰파라치의 포상금을 올리면서 좀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포상금을 올린 것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한 사람이 1년에 신고를 두 번밖에 못하도록 제한을 한 다든지 또는……

○**조해진 위원** 그것도 피해 가는 또 편법이 동원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또 편법도 생겼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통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포상금을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

에 유통망에 구상을 할 때도 그 비율을 이통사가 8을 부담하고 유통망은 2만 부담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을 조정해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통 3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 위원 방통위원장님, 통신사들의 제재 결정을 하고 집행되는 데 걸린 평균 시간이 5.4개월이더군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민희 위원 이것도 짧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 3월 SKT 영업정지 시행하기로 했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민희 위원 그런데 그것 10월 1일에서 10월 7일, 일주일간 하기로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민희 위원 이것은 9개월이나 걸렸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민희 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제재 효과를 줄 수 있는 때를 봤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원래 저희 생각은 5월 말, 6월 초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최민희 위원 제가 질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느냐를 봤어요. 언제 할 거다, 언제 할 거다, 이러다 계속 안 하셔서 보니까 피한 시기들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갤럭시S6가 출시된 4월, 갤럭시S6엣지가 출시된 이때, G4가 출시된 4월, 갤럭시S6엣지플러스가 8월, 갤럭시노트5가 또 8월, 그래서 제가 왜 하필이면 10월 1일에서 7일이냐를 봤더니 10월 중순에 아이폰6S가 출시되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재 효과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업에 최소한 지장을 주지 않는 시기를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해받을 행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저희도 오해받을 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인정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LG유플러스 건, 저희 의원실에서 구체적인 통계자료 다 보도자료로 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LG유플러스 다단계, 이것이 방판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단통법 말고 방판법……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글썽,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이 아니어 가지고……

○최민희 위원 아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0만 원 한계를 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최민희 위원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글썽,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결론을 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위반이라고 하면 당연히 금지가 전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최민희 위원 이것을 잠깐 들여다볼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니깐 핸드폰 판매에 있어서 다단계 판매는 방판법 위반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잠깐 보시렵니까?

지금 방판법 위반 기준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얼마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16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1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휴대폰 타입을 정해서 돈을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단말기가격 76만 1700원에 24개월 곱하기 3만 7400원을 더해 보니까 165만 9300원이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방판법 위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핸드폰은. 이것은 왜 그런지 아시지요, 법률가시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래서 재화 플러스 이동통신요금인 서비스까지 들어가는데……

○최민희 위원 예, 서비스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것을 합해서 볼 것인지 안 볼 건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민희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공정위가 곧 방판법 위반인지 아닌지 밝혀서 처분을 하려

고 하는데 방통위가 왜 앞서서 핸드폰의 다단계 자체가 합법이나 불법이나를 따지시지요? 왜 그러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합법이나 불법이나를 따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방판법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회의에서 한 말을 그대로 잠깐 옮겨 드리면 저희가 다단계가 허용된다, 안 된다는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지금 단말기유통법이 위반되지 않으면 방판법 위반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것이 합법이라고 얘기해 드린 것은 아닙니다.

○**최민희 위원** 제가 회의자료 봤어요. 그런데 불법이 아닌 것처럼 얘기가 되다 보니 인터뷰에서 다단계 판매를 하는 어떤 분이 지금 방통위원장님의 이 발언을 인용해서 합법이다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그 부분은 좀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최민희 위원** 그래서 신중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 지난번에 23억 7000만 원 때리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민희 위원** 그런데 이 다단계 판매를 통해서 LG유플러스가 얻을 수 있는 액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징금 때리는 액수를 하려면 제대로 확실하게 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을 어기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제가 추가로 계속 질의하고요. 이번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MBN·채널A·TV조선, 불법성 협찬 건 자료 확보되었고, 저희가 더 확보한 자료도 다 드렸거든요, 방통위에.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민희 위원** 결론 낸다, 낸다 하셨고, 지난 6월에도 결론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아직도 결론 못 내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검토해서……

○**최민희 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9월 16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MBN 관련된 미디어랩 위반 건.

○**최민희 위원** 9월 16일 날 하실 건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민희 위원** 제가 대정부질문 할 거거든요. 그때 또 안 하시면, 그러시면 안 되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9월 16일 상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10초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TV조선, 채널A 건 불법성 협찬도 조사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 다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민희 위원** 조사되어 있으면 그것은 언제 처리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같이 처리를 하는데요. 그중 일부는 문제가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은 9월 중에 다 같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최민희 위원** 9월 중에 처리할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민희 위원** 지금 종편정책은 실패한 겁니다. 정부 여당에게 정치적 편향성, 친정부 방송을 해서 정치적 이득을 봤을 뿐 일자리도 별로 창출하지 못했고, 종편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JTBC를 제외하고는. 그런 종편들이 불법성 협찬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편 문제는 제기하지 않고 별 문제 없는 포털을 문제 삼는 것은 아흔아홉 섬 가진 부자가 한 섬 채워서 백 섬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식 위원** 박민식 위원입니다.

방심위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송호창 위원님이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이런 의문이 있어서 문제 제기를 다시 한 번 하고 싶습니다.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기피 보도, MBC에 대해서 지금 고소를 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중** 예.

○**박민식 위원** 우선 언론사에 대해서 고소한 그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봐요. 공직자, 서울시장, 대통령, 국회의원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도 인권이 있거든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중** 예, 맞습니다.

○박민식 위원 마녀사냥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근거 없이, 균형감 없이 마구 의혹을 부풀리고 이런 것은 저도 여당·야당을 떠나서 옳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 공직자, 서울시장 같으면 우리나라의 대단한 공직자인 건 누구나 다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방송이 그런 어떤 비리나 도덕성, 자질 이런 데 대한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책무예요.

자, 보십시오. 이 사건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아는 정도의 사안이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검찰에서 이런 게 문제가 없다, 무혐의 결정을 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박민식 위원 무혐의 결정이라는 것은 검사가 하는 겁니다. 제가 검사 출신이에요. 무혐의 결정이라는 것은……

우리 방통위원장님, 기관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추후에 다른 증거나 나오면 다른 결론이 될 수도 있고……

○박민식 위원 이것은 검찰의 의견일 뿐이에요. 대법원 확정판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에서 재기 수사 명령을 얼마든지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황이나 다른 증거나 다른 의혹이 생기면 검사도 다시 수사해야 돼요.

자, 그런데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했다 쳐요. 그 이후에 검사가 허위사실 유포로 양승오 박사입니까, 이분하고 여러 사람들을 아마 고소했나 봐요.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방심위원장님, 재판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박민식 위원 우리 방통위원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보도에서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박민식 위원 제가 이 스토리를 잘 모릅니다마는 이런 것 같아요. 재판을 아마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재판을 하면…… 법관을 하셨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박민식 위원 재판하면 이게 허위사실이다, 아니다가 문제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피고인이, 이 양승오 박사인가 이 사람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

이 범정에 서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헌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헌법상에는 대법원 확정판결 또는 2심이든, 확정판결 나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에요. 피고인은 자기를 변호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 권리 중에 제일 중요하게 반대 심문권이요. 양승오인가 이분이 ‘나는 이게 허위사실 아니다’ 강력하게 법정에서 주장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당연한 기본권이요.

그래서 자기 반대 심문권을 행사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는 결백을 입증하겠어요? 방법은 제일 간단한 겁니다. 당사자를 좀 불러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법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법관이 지금 박원순 시장의 아들을, 문제가 되는 이 의혹의 대상자인 박원순 시장 아들을 아마 증인으로 채택했지요? 증인으로 채택한 것 아닙니까,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재판 진행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민식 위원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아마 증인으로 채택했을 거예요. 증인으로 채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관이 증인으로 채택하면 증인은 당연히 범정에 출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영국에 있어서 못 오는 것 아닙니까? 상황이 지금 여기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MBC라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게 허위사실이다, 아니다 이걸 악의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재판 상황,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력한 그런 정치인이지요? 그 사람에 관한 의혹이 원래 검찰에서 무혐의했는데 상황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간다, 누가 보더라도 좀 오해를 살만 하구나, 한국에 들어와서 간단하게 1시간 동안 확인하면 끝날 일을 왜 숨기느냐, 방송사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것을 왜곡 보도다, 편파 보도다라고 하는 데 있으면 저는 반대로 말하고 싶어요. 물론 여기에서 아주 균형을 잃었다는 그런 핵심적인, 그러니까 팩트를 완전히 바꾼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팩트를 완전히 일탈해서 사건을 비비꼬고 이렇지 않다라고 하면 언론사에 대해서 고소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언론을 압박하

는 것 아닙니까? 왜 유명인사인 한명숙 전 총리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했으면 바로 그게 정치법원입니까? 정치검찰입니까?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검찰에서 1차적으로 무혐의 있었다손 치더라도 아까 그런 간단한 팩트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들어오니까 국민들이 이상하다, 의심받을 것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제 아들이 만약에 이런 의심을 받는다 하면 돈 들여서라도 당연히 법정에 보내겠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MBC에서 방송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무슨 편파 방송입니까?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다음은 정호준 위원……

○전병헌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예, 말씀하십시오.

○전병헌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헌법기관으로서 소재는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이러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유력한 정치인에 대해서 근거가 희박한 내용으로 자칫 상처를 주거나 손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매우 유감스러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본과 금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 어떤 사실이나 팩트도 신이 아닌 이상은 완벽한 판결이나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상식적입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로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과 매우 중요한 근거와 판단의 기준은 즉, 이른바 사법적 심리제도와 수사기관으로서의 근거를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통된 상식적인 금도인데 이미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한 병역 문제는 지난번 검찰,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검찰 수사나 병무청에서 사실상 종결된 문제를 가지고 책임 있는 공영방송이 과도하게, 지나치게 편집해서 방송함으로써 당사자뿐만 아니라 박 시장을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자칫 오해와 곡해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점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찰의 어떤 판정이냐 해당 기관의 판정조차도 그걸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언론에서 무한대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언론이야말로 신적인 영역이고 무한대의, 무소불위의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론도 소위 이 사회 질서 내의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다운 공정성과 책임성과 보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박민식 위원님!

○박민식 위원 존경하는 우리 전병헌 위원님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저도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유력자라고 하더라도 정말 어떤 악의적인 상처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전히 사실무근으로 진짜 결판이 난다라고 하면 지금 문제 제기한 사람들 다 감옥 가야지요. 중벌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것은.

그런데 제가 이 지점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간단한 사안이에요. 우리 여당, 야당이 핏대를 올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진실의 문제거든요. 과학의 문제예요. 간단하게 확인하면 끝날 일인데 왜 그것을 기피해서 이렇게 의혹만 더 야기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공영방송까지 고소를 당하고 편파, 이런 논란에 휩싸인 거지요.

○전병헌 위원 박 위원님, 그런데 이것과 관련하여……

○민병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MBC의 방송 태도에 대해서 물었는데, MBC가 공정하게 한 거냐고요.

○민병주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전병헌 위원 박 위원님, 내가 한 가지만 사실을 알려 드릴게요.

○박민식 위원 예.

○전병헌 위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요청을 받은 바가 없어요. 잘 알아보세요.

○박민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전병헌 위원 지금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가상의 조건을 전제로 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최민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박민식 위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전병헌 위원** 확인해 보세요.
- 유승희 위원**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 박민식 위원** 아니, 증인으로 채택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 전병헌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우상호** 자, 이 정도로 하시고요. 또 후속 질의……
- 전병헌 위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받은 바가 없어요.
- 위원장대리 우상호** 자, 이 정도로 하시고요.
제가 사회자석에 앉아 있는 걸 다행으로 생각 하십시오.
(웃음소리)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반드시 한마디 했거든.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준 위원** 정호준입니다.
우리 방통위원장님!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정호준 위원**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보고 자료 2쪽을 보니까요,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법 제90조의2를 설립 근거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방송법 제90조의2를 아무리 살펴봐도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재단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재단의 법적 설립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니까, 또 한 번 확인하니까 지난해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도 방문규 기재부2차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방의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랬습니다. 기록적으로는 그랬습니다.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 정호준 위원**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현재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부산 광주 강원 등 전국적으로 설립이 됐거나 아니면 설립 예정으로 있는 7개의 센터를 의미하는 것이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위원장님, 지난해 11월 14일 날 법인설립위원

회에서는 지역 센터와의 명칭 혼동을 막는다는 이유로 현재처럼 재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 왜 바꿨는지 아십니까? 왜 바꿨습니까, 이것?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과거에 5개, 6개의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을 때 그것을 총괄해서 운영하던 조직이 KCA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인으로 한다는 것은 그 전체를 총괄하는, 그러니까 6개의 시청자미디어센터 전체를 총괄하는 법인을 만들라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 각각 6개의 법인을 만들라는 취지가 아니고 그것을 총괄하는 법인을 만들라는 취지로 알고 있고, 다만 기존에 특히 부산 같은 경우 2005년부터 시청자미디어센터라는 명칭을 죽 써 왔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하는 조직도 ‘재단법인 시청자미디어센터’ 이렇게 되면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명칭이 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다른 이름으로 해도 괜찮은지. 그랬더니 두 군데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그 명칭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의미가 살아 있으면 괜찮다고 해서 저희가 시청자미디어재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정호준 위원** 법률 자문의 취지는 이미 센터가 명시돼 있으니까 방금 다른 명칭, 유사한 명칭을 정관에 또 규정하고 등기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두 곳 로펌 모두 다 센터와 재단을 사실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률 자문 이후에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최종 명칭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적 후속조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 방송법을 개정했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방통위가 제출한 개정안 중에는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정호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통위가 방송법상 근거가 없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출범을 밀어붙이고 조직도, 법률 정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배정받고 또 서둘러 낙하산 기관장을 임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통위가 법적인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자기 조직을 만들기 위해 급급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재단 설립 과정에서요, 민간 보조금이 아니라 정부출연금 성격으로 올해까지 무려 43억 원을 또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명백히 위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방통위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위를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 근거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서는 방송법이 빨리 개정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재단의 설치와 임원, 직무 등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또 이게 아직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곧 아마 지정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준 위원 그래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요건을 빨리 갖추어서 공공기관으로 빨리 지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마도 올해 연말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공기관으로 당연히 지정이 돼야……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그다음에 국가가 100% 출자를 한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준 위원 1분만 더……

○위원장대리 우상호 예.

○정호준 위원 방송법 개정은 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것도 개정하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그것도 개정을 해서 모호한 부분을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통사의 불법 텔레마케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텔레마케팅의 경우에 신규 가입을 권하기도 하고 기기 변경을 권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불법 마케팅에 대해서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불법 마케팅에

대해서는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것을 신고받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 정보를 불법 이용한다든지 또는 불법 마케팅을 하면서 사실과 다른 권유를 해서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호준 위원 제가 보니까 KT 같은 경우에 내부 규정을 보니까 기기 변환을 권할 경우에는 한 번만 걸려도 전산을 정지하는데 신규나 번호 이동 가입을 권할 때는 3회째부터 전산 정지가 됩니다. 이렇게 좀 차별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텔레마케팅, 불법 텔레마케팅을 권장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 이런 사실들을, 꼭 KT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통사들의 이런 내부 통제를 좀 더 강화해 주시고 걸리면 반드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 사정까지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덕광 위원 해운대기장갑 배덕광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부산시장하고 물세레 행사장에 참석했다가 단말기가 물에 다 젖어가지고 급하게 핸드폰을 하나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경험을 하나 했는데 아시다시피 핸드폰을 개통할 때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에 20% 요금 할인을 받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배덕광 위원 그런데 이 20% 요금 할인받게 소비자한테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공시되어 있는 지원금 수준과 그다음에 가입하시고자 하는 요금

제에 따라서 지원금을 한뫼에 받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20% 요금 할인을 2년 동안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배덕광 위원 그런데 대리점 직원이 그런 얘기를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미방위 소속 위원인 걸 잘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20% 요금 할인제를 안내하지 않고 단말기 지원 요금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20% 요금 할인을 2년 동안에 이용하면 단말기 지원 요금보다도 한 15만 원 정도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우에 따라 다른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배덕광 위원 그런데 15만 원 더 받는다면 서민들한테는 가계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배덕광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요금 할인제를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히려 그 판매원이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이통사가 요금 할인제, 요금 할인을 받으면 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아마 깎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배덕광 위원 그래서 주변에 내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SK나 LG나 그다음에 KT, 이통 3사가 전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언론의 경우에는 통신위원장님께서 언론사를 통해서 아마 많은 홍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 요금 할인제 가입자가 175만 명이나 돌파했다라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께 널리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대리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홍보 내용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르더라, 이 점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이동통신사로서는 한뫼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액수가 더 적기 때문에 그것을 더 선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리점이나 유통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20% 요금 할인할 경우에 적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또 대리점, 유통점은 장려금을 많이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있는 이

런 악순환이 생기고 있습니다.

○배덕광 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은 방통위가 관리·감독을 좀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LG유플러스가 그런 상황이 굉장히 심해서 조사를 해서 제재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또 조사가 끝나니까 다시 또 그런 일이 자꾸 생기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통신사의 구분 없이 조사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혹이 발견되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덕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 6월 달에 현장조사를 이동통신대리점에 나가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20% 요금할인의 가입자가 다른 두 통신사에 비해서 LG유플러스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반 이하로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우선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이동통신사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장려금 수준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잘 돼 있다가 또 저희 조사가 끝나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파악을 해서 모니터링 결과 문제가 있다면 다시 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덕광 위원 그래서 대리점은 이통사업에서는 완전히 율이 됩니다. 그래서 대리점은 이통사한테 대리점 코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지요.

대리점 코드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아마 대리점 주는 이 코드가, 자기들이 받은 것이 날아갈까 싶어서 이통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금 할인제는 이통사가 가입자에게 인심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닌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습니다.

○배덕광 위원 분명히 법에 명시된 제도이기 때문에 가입자한테 혼란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해서 안 되고 또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하여간 시장 상황을 늘 모니터링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바로 조사를 하고 제재를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배덕광 위원** 우리가 단통법을 만든 이유는 소비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고 그래서 가입자 요금할인 선택을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가능한 한 미래부하고 함께 20% 요금할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 더 잘 아실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늘리고 그다음에 그런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덕광 위원**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헌 위원** 전병헌입니다.

조금 아까 조해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단통법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 유통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란 말이에요. 오전 질의에서 위원장께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명보다는 암이 큰 것이 지금 단통법의 현실이고 그림자다. 실제 한번 시장에 나가서 방문도 해 보고 대화도 나눠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뜰이나 단통법으로 얼어붙은 유통시장에 폰파라치제도가 지나치게 극성을 부려서 더욱더 중소기업체들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당연히 물론 유통업체들이 불법을 하는 행위는 규제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지금 폰파라치 포상금을 대폭 늘렸잖아요? 늘린 그런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현장에서 더욱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현실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글플레이에는 폰파라치 신고 앱이 등장이 돼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앱이 있는 것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앱도 있고요, 그다음에 폰파라치 닷컴도 있어요. 그래서 이 폰파라치가 굉장히 하나의 전문적 직업군으로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저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서로에게 감시나 어떤,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나 부정과 비리에 있어서는 고발하는 문화가 성숙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한 것이 아닌데 민생이나 생활 속에서 작은 부분에 대한 어떤 위법적인 행위들을, 그것을 밀고문화로 이렇게 장려하고 그것을 정부가 오히려 돈을 쥐 가면서 독려를 하는 것은 저는 소탐대실이다, 작은 어떤 불법들을 밝혀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풍토나 사회적 분위기를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라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과거 성매매특별법이 처리가 되어서 당시 경찰청에서 심지어는 소위 성과파라치까지 경찰청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당시 국감장에서 막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 저는 정부가 이와 같이 파라치를 장려해서 무엇인가 불법이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존경하는 방통위원장께서는 법조인 출신이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판결을 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지도급 인사로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말씀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도적으로 봐서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저희 정부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는 돼 있습니다만 이동통신 3사가 자율적으로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병헌 위원**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도 지금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 폰파라치 제도를 저희가 일단 한번 개선을 했는데 그것으로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들 종합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서로 밀고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좀 제도를 가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오히려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그러고 포상금을 1000만으로 이것을 상향 조정하니까, 그리고 그래 놓고서는 2회 이상 신고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직접적으로는 그 증거를 확보를 해 놓고 해당 유통업체에게 협박을 해서 일부 돈을 뜯어낸다든지 하는 또 다른 불법을 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국가가 이런 식의 준법을 강요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자율적으로 서로 법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는 것이 국가의 자세가 아닌가? 어떻게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전 국민에 의한, 전 국민의 고발과 감시, 밀고문화, 이것은 전체주의 사회나 공산주의사회와 뭐가 다르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제도의 문제점, 지적하신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감안해서 제도개선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확인국감까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만 종편과 관련해서 보도프로그램을 줄여라, 보도프로그램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 제작비를 줄이기 위한 편법 편성 아닙니까? 그런데 보도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패널들이 이른바 정치평론가라고 소개가 되면서 마치 패널들이 불편부당한 인사들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편향적인 인사들로 패널을 구성해서 그것을 정치평론가로 포장을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방통위원장께서는 종편에서 패널로 나오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분들 중에 정당에 가입을 했거나 또는 정당에 공천 신청을 해서 낙천을 했거나 또는 정당의 공천을 받고 낙천한 인사들이 사실상 마치 불편부당한 인사들인 것처럼 정치평론가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정말로 극단적인 편향적인 발언을 하는 실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그 통계를 갖고 계신지, 통계가 없다면 그 통계를 뽑아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통계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병헌 위원 나올 수 있지요. 왜냐하면 종편 4사에 나와서 정치평론가로 나오는 분들이 매우, 많은 수의 사람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다 고만고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력을 보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낙천자나 낙선자가 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낙천자나 낙선자가 나올 때는 그 정당의 소속을 밝혀 놓고 나오는 것이 그게 정직한 태도이고 공정한 방송의 태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숨겨 놓고 마치 정치평론가인 것처럼 나와 가지고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오히려 종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종편 방송의 품격을 떨어뜨리는데 아주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가 김재홍 상임위원하고 우리……

○위원장대리 우상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헌 위원 네 분 상임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종편 점검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희 위원 대구 북구갑 권은희 위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성형 많이 하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렇습니다.

○권은희 위원 성형광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성형시장이 한 5조 원 정도가 됩니다. 2012년에 의료법 개정 이후에 의료광고가 가능한 매체가 인터넷도 가능해졌고 또 교통수단에도 가능해지면서 성형광고가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형광고는 현행 의료법 56조 또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서 광고를 하기 전에 대한의사협회 내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알고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런데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 다 거치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뉴스 서비스, 그다음에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는 인터넷매체,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등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성형외과의 홈페이지, 여기는 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하인 인터넷사이트나 또는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데는 전혀 심의를 거치지 않은 성형광고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권은희 위원 그래서 이 광고들이 정직한 광고면 모르겠는데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성형을 미화하고 조장하는 과대광고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오는 건들도 이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관련된 소비자상담 접수 건수가 2010년에 한 2900건 정도였는데요, 2014년에 500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주로 건수의 유형이 성형효과가 미흡하다, 또 성형 후 부작용이 있다, 이런 품질 관련한 건수가 한 1만 5800건으로 총 접수 건수의 한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성형광고가 수술부작용을 알리지 않거나 또는 자극적이고 조작된 그런 사진을 보여 주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는 광고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도 불법성형광고로 인해서 소비자의 피해가 정말로 크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보호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파악되는 피해만 하더라도 사실 어마어마한데 저희들도 이제 불법성형광고물을 심의하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중점심의 대상으로 올려서, 이 피해가 너무나 크고 또 이 과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쨌든 중점심의 대상으로 삼아서 앞으로 한두 달 동안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방심위에서 지금 중점 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까 규정에 있는 10만 가입자 이상이 된다거나 인터넷

뉴스서비스라든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 매체들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광고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얘기했던 성형외과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가 10만 미만의 인터넷 등 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

사실은 여기가 더 과대광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데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권은희 위원 이런 쪽에 대한 심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저희들이 사각지대를 특히 유심히 살펴서 어쨌든 불법 성형광고의 피해를 줄이는데 위원님의 지적대로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권은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확감까지 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 방통위위원장님, 아까 종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할게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7월 2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과 여당추천위원들이 종편이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경영효율화 등 수익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콘텐츠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유로 정수율 0.5%, 1년 유예 결정한 것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런데 콘텐츠 투자를 유도한다고 한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면 종편의 콘텐츠 투자계획 실적 대부분이 50% 미만인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최원식 위원 JTBC만 낮고 최근 3년간 보면 50%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종편들이 콘텐츠 투자를 늘리지 않고 있는데 3억 정도 되는 방발기금을 면제하고 유예한다고 해서 콘텐츠 투자가 늘 거라는 논리는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명분으로 보이는데 어때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이유는 굉장히 작

은 부분이고, 사실은 그동안 누적 적자가 많았던 부분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성이나 IPTV의 경우에 계속 적자가 났을 때 6년 동안 방송발전기금을 안 냈던 것 등이 더 많이 고려가 되었습니다.

○**최원식 위원** 좋습니다.

또 최근에 방송사업자들이 광고 대신 협찬 영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KBS는 광고와 협찬이 6 대 1 정도지만 종편은 2 대 1, 2 대 1.5 비율까지 협찬 비중이 커요. 그런데 이렇게 협찬 비중이 커지면 방발기금 징수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는데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 가지고 계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장기적으로는 협찬이 만약에 그런 경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방발기금 산정을 할 때 협찬의 규모도 저희가 기준으로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좋습니다.

방통위는 향후 방송사업자들이 방발기금을 적게 내기 위한 광고 대신 협찬 등 편법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확인국감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더불어 방통위가 종편특혜 위원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각종 특혜에 대한 중립적인 자체 검토와 평가를 해서 좀 보고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그리고 지난 8월 1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미디어 크리에이트 재허가에 대해서 의결을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그래서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방통위는 OBS와 지역 민방의 광고판매 최소지원 규모를 동등한 수준으로 하는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고 또 결합판매 지원고시 계획은 이전과 동일하게 결정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하여간 이것은 제가 요구해서 방통위가 수행한 지역·중소 방송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광고 지원방안 연구용역이랑 완전히 다른 결정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 했는데……

○**최원식 위원** 됐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구용역에서는 자체제작물을 결합판매 비율에 반영했을 경우 OBS는 결과적으로 2.5%, 약 139억 증분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방통위가 의결한 내용은 과거와 변함없이 기존 지역 및 중소 방송사의 결합판매 고시를 결정하는데 있어 5년 평균치를 반영했고, 2012년 미디어랩법 제정 당시 설립 5년 미만이었던 OBS 등 신생사들에 대해서 기존에 부여한 신생사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전혀 반영 안 했어요.

그런데 하여간 저희가 보기에는 OBS가 자본잠식에 이른 상태가 될 때까지 방통위가 아무런 책임이 없고 오히려 회사에 책임을 돌려서 결합판매의 틀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여간 상당한 돈을 들여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역행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제가 OBS와 관련해서 지적하는 것은 2012년 당시 방통위가 적용한 결합판매 비율이 매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OBS에 상당히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적용됐다, 이것도 연구용역에서 같은 지적이에요. 그리고 특히 OBS 역외재송신과 결합판매 비율에 대한 방통위의 정책 오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는 OBS에 대한 정책 실패, 정책 오류에 대해서 방통위도 일정 정도 인정하시고 개선하라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방통위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있는데 연구 결과는 단기 개선사항으로 미디어랩별 결합판매 지원대상 방송사 조정, 지역·중소 방송사 지원비율 개선 그다음에 신생중소 방송사 지원 증분 비율을 조정하고 있는 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연구용역 결과는 일부는 예시로 들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로서는 한쪽의 편을 들어서 잘해 주면 다른 지역 방송사들의 어려움이 또 가중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균형을 잘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할증 같은 부분도 균발위에서는 그렇게 되면 콘텐츠를 제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원식 위원**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면 그래도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시행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리고 또 연구용역이라는 게 그런 요소를 감안하지 않았던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기 힘들다고 용역 결과를 무시하면 그러면 앞으로 용역을 해서 뭐합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낫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OBS에 지원하려고 했던 수준이 지금 결합판매 비율 조정하는 수준하고 사실은 비슷한 수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달리해 가지고 지원방안을 찾아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런데 지원방안이 너무 미흡합니다.

그래서 확인감사 전까지 OBS 결합판매 지원 비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용역에서 지적한 지점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방안을 확정해서 좀 보고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다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락 위원** 홍의락 위원입니다.

방심위원장님,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 건인데 부탁 하나 드리면……

지금 이것 명예훼손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홍의락 위원** 그런데 형벌하고 행정처분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심위는 사법부가 아니니까 명예훼손을 판단하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저희들도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래서 이것을 무리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약자를 핑계 삼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의 신청이 밀려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고인에 대한 비판이 봉쇄될 수도 있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정말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홍의락 위원** 그리고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홍의락 위원** 요즘 결합상품 경쟁이 심각하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홍의락 위원** 이동전화하고 인터넷하고 IPTV하고 전화하고 합쳐 가지고 그냥 굉장히, 이게 굉장히 경쟁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렇지요?

과당 경쟁도 심하고 민원도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홍의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지난달에 결합상품 제도에 대한 다양한 제도개선안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연말까지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다시 한 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8월 6일날 확정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아직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SO사업자, 케이블TV 같은 경우는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 많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어떤 개선책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SO 같은 경우에는 이동통신이 없기 때문에 결합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개선안에 이미 고시에 나와 있는 동등결합, 그러니까 SKT의 이동통신을 가져다가 자신의 케이블 상품하고 같이 결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면 어려움이 해소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의락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지 않다고

그러지만 계속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가 소비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런……

○홍의락 위원 그래서 이 점을 한번 깊이 파악하셔서 통신 산업계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그냥 악순환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만 야기하고 이런 것 같아서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 주고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리고 작년 국감에 제가 EBS 수능방송 강사의 지역 교사 비중 확대를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EBS 방송이 운영 중인 시청자미디어센터 5곳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6곳 됐습니다.

○홍의락 위원 어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서울 성북이 하나 생겼습니다.

○홍의락 위원 서울 성북이 생겼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홍의락 위원 있는데, 유능 교사들이 가까운 녹화스튜디오에서 수능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 미디어센터에서 유능한 교사들이 거기서 녹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희망을 하시면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시설을……

○홍의락 위원 미디어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저희들이 당연히 시설을 빌려 주고 있습니다. 희망을 하시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홍의락 위원 그렇게 좀, 제가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지역에서 녹화하고, 그래서 지역 교사들이 하면 지역 학생들의 자부심도 높아지고 학습능력 또한 향상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1분만 더 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금방 서울 성북에 하셨다는데 지난번에 제가 요구했는데 대구센터가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대구센터를 설립하셔서 이 부분을 한번, 대구에서도 녹화 스튜디오를 하면서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확인국감 전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희 의원실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로서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좀 더 여러 곳을 두고 싶은데 결국은 예산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합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의락 위원 검토해서, 부산 광주 대전 인천 춘천 서울 이렇게 6군데 같은데 아무리 봐도 대구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호 위원 인천 부평갑 출신 문병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 이어서……

오늘도 종편의 특혜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방발기금도 지상파가 1472억 원을 납부했는데 종편은 한 푼도 납부를 안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종편도 여러 가지 특혜성 광고 지원으로 수지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제기간을 1년 연장하고 최초 징수율 0.5% 인하, 이렇게 결정을 한 자체가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다른 사례에 비추어 보면 특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는 적자인 상태에서 보통 6년씩 방송발전기금을 안 내왔었는데요. 지금 종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올해 미리 징수율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4년만 걷지 않고 그다음 해부터 걷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문병호 위원 왜 이게 특혜가 아니시라는 거지요?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분명히 이것은 특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같은 방송사고,

종합편성채널인데 최초에 적자가 난다고 그래서 그때도 면제해 줬지만 지금 개선도 많이 되고 있고, 이제 수익을 내는 시점까지 거의 왔다는 거지요. 그러면 똑같이 징수를 해야지 왜 종편에 대해서는 면제 기간도 연장해 주고 또 징수율 0.5%만 하는 건지 이것은 원칙대로 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다시 재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은 이미 고시로 개정을 해서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부과하는 것이 2015년도 광고 매출액에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광고 매출부터는 납부 시기는 내년이지만 사실상 방송발전기금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런데 방통위가 원칙적으로 형평성 있는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특혜성, 어느 방송사에는 특혜를 주고, 어느 방송사는 봐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편에 대해서 특혜를 주라고 청와대나 다른 데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PTV나 위성TV의 경우에는 적자 상황에서는 6년간 방송발전기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해 오다가 종편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4년만 하고 징수를 하기로 하는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문병호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위원장님의 소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형평성을 가장 중시하는 법관 출신 아닙니까? 이런 것 용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뭔가 위원장님 소신보다는 어떤 외부의 부탁이나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시겠지요, 물론. 광고 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 특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협찬 매출도 지금 엄청나게 증가를, 3121% 급증을 했습니다. 협찬 매출이라는 것이 왜 도입된 겁니까? 이 도입된 취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완전히 편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도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협찬의 투명화를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병호 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특혜 시비가 안 나도록 집행을 하셔야지요. 말씀만 안 하고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또 재발할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협찬은 꼭 종편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상파도 있고 지금 다들 협찬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다만 그것이 음성화되고 그다음에 미디어 앱을 거치지 않으면서 걸어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또 그다음에 광고 효과를 주는 것 등등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호 위원 기준을 좀 정확히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기준을 IPTV나 DMB 기준으로 할 생각입니까? 원칙을 정하고, 그 기준을 정확히 집행을 하셔야지요. 어떤 방송사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고 집행이 달라진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는 일단 원칙을 정했으니까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OBS가 저희 인천지역과 관련된 방송사이기 때문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OBS에 정부 지원을 좀 높이기는 했는데 사실 그 액수가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통위에서 간과한 것이 방통위 연구용역보고서인 지역·중소 방송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광고 지원방안에 보면 OBS에 해당하는 신생사 가중치가 17.3%가 아니고 26.667%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상호 간사, 홍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 가중치를 26.667%를 적용해서 21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종전의 17.3%를 적용하다 보니까 증가분이 대단히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제대로 채택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못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17.3%는 적정하게 계산한 것으로 그렇게 용역 결과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호 위원** 지난번에 용역 결과보고서 가지고 제가 질문하니까 위원장님께서서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보니까. 용역보고서에 보면 26.667%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른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호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호창 위원** 오전 주질의 때 질문을 하다가 좀 중단된 내용부터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관련해서 구글 같은 해외 사업체들 역시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국내법의 의무화 규정을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국내에서 영업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송호창 위원** 그런데 지금 구글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을 기재는 했지만 세부 내용은 기재하지 않아서 그래서 기재하지 않거나 제공받는 자의 성명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이런 조금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 김보라미 변호사와 계시지요?

○**참고인 김보라미** 예.

○**송호창 위원** 나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특히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과정에서의 지금 현재 있는 문제점을 짧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보라미** 저희가 구글 이용자들의 정보가 혹시 다른 제삼자에게 넘어간 것이 없는지 내용증명을 구글코리아하고 그다음에 구글 본사에 전부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구글코리아는 아예 답변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구글 본사에서만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우리는 시민의 권리도 잘 보호하는 그런 기업이고, 그다음에 법도

잘 준수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믿어 달라.” 그런 취지의 답변만 왔을 뿐 특별히 우리의 정보를, 저희가 요청했던 이용자들의 정보를 제삼자에게 넘겼는지 만약에 넘겼다면 어떤 사람에게 넘겼는지에 대해서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구글코리아하고 그다음에 구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코리아의 경우는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한국에서 어떠한 조직도 없고, 심지어 개인정보처리자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글코리아 관계자들을 일대일로 만나서 명함을 수집해 가지고 그것을 법원에 다 조직도를 만들어서 제출하면서 구글이 사실은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조직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처리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글코리아 입장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우리는 광고 서비스, 그러니까 판매행위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서비스도 하지 않고 있고, 전부 구글 본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책임을 미루고 있고, 그다음에 구글 본사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민들에게 우리 정보가 제삼자에게 넘어갔는지, 만약에 넘어갔다면 누구한테 넘어갔는지를 설명할 의무가 없다라고 지금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글코리아의 경우는 살펴보면 인터넷검색 서비스, 인터넷광고 서비스, 그다음에 관련 서비스를 본인들이 직접 하고 있다고 부가서비스사업자로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해서 구글 본사에다 책임을 면책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글 본사의 경우는 우리는 한국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은 구글코리아라든지 또 앞으로는 유사한 분쟁이 페이스북이나 애플에서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은 저희가 합시다마는 이러한 국제적인 글로벌한 기업들이 국내에 있는 유한회사를 통해서 책임을 면책하는 것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통신서비스 신고를 받을 때 좀 엄격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서비스를 진정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서비스 신고에 대해서 허위 신고인지 여부를 좀 엄격하게 보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국내에 있는 이용자들만 계속 책임 회피만으로서 프라이버시 보호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호창 위원** 그러면 지금 재판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 건가요?

○**참고인 김보라미** 저희가 9월 달에 기일이 한번 더 열리고요, 아마 올해 안에 선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창 위원** 1심 재판의 선고가 올해 안에……

○**참고인 김보라미** 예.

○**송호창 위원** 방통위원장님, 지금 참고인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방통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나 취할 수 있는 방침이나 조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소송하고 있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구글코리아는 방통위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라든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로 신고가 되어 있고 또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도 받고 있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다 받아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신고를 했으면 당연히 그런 영업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그런 영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창 위원** 참고인께서는 지금 구글코리아가 정보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방통위에 어떤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치를 요청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참고인 김보라미** 저희가 원래 신고를 하려고, 사실은 구글코리아에서 우리는 조직이 없다고……

○**송호창 위원** 그러니까 방통위에다가 직접 한 적은 없는가요, 아직까지?

○**참고인 김보라미**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원래는 그것을 신고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글코리아 조직도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하기 위해서 몇 달 전에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하고 얼마 안 있어서 소송이 열렸는데요. 공판 기일에 구글코리아 쪽 변호사님께서 소송 중인 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고 저희를 비난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판결 끝난 다음에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이라도 직권으로 조사해 주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민들의 권리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조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호창 위원** 10초만 더 쓰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우선 저희가 사실 관계를 김보라미 변호사하고 좀 더 정보를 주고받아서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창 위원** 사실은 재판으로 가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원래는 그렇게 됐어야지 정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구글 같은 해외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적용 법이나 관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꽤 있고 그리고 특히 구글 같은 것은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송호창 위원**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는 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또 이게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해외 사업자들, 글로벌한 기업들과의 관계에서 또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서비스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나 여러 가지 권리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방통위원회에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좀 선도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우선 상황 파악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추가질의와……

○**박민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의사진행발언이요?

○**박민식 위원** 위원장님 안 계실 때…… 중요한 사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를 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송호창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고, 박원순 시장 측에서 MBC 보도에 대해서 편파…… 하여튼 명예훼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했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마이크 꺼지고 나서 존경하는 전병헌 위원님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과학의 문제다, 본인이 와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제가 아는 바로는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증인으로 신청이 되어 있고, 그리고 법원에서 법관이 증인으로 채택을 했다 이렇게 제가 아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이크 꺼지고 난 뒤에 우리 존경하는 전병헌 위원님이 ‘증인도 된 바도 없고 또 참고인으로도 된 바가 없다’,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더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이것이 그 피고인들만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기소한 검찰도 신청, 이걸 보통 우리 법정에서는 쌍방 증인이라고 하지요. 중요한 증인이니까, 중요한 증인이니까 두 쪽 다 자기 말이 옳다라는 것을 입증할 핵심적인 증거, 증인이기 때문에 두 쪽 다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에서도 이 사람 박주신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채택을 했는데 영국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소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주소를 몰라서 소환을 못하고 있다, 송달을. 왜냐하면 ‘나와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주소를 모르니까, 주소를 안 가르쳐 주니까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관이 증인으로 채택을 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사람을 법정에 데리고 와서 진실을 밝혀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유승희 위원 여기가 법원 아니잖아요.

○박민식 위원 그러니까 서로 팩트의 문제인데 다르게 말씀하셔서……

○유승희 위원 왜 MBC에서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입장만 대변……

○박민식 위원 아니, MBC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그렇게 한번 정리……

○위원장 홍문종 발언권 얻고 얘기하시지요.

○송호창 위원 지금 우리 박민식 위원께서 흥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증인으로 채택돼서 흥분을 할 문제, 채택됐느냐 아니냐……

○박민식 위원 아까 아니라니까……

○송호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논쟁이 되는 건 아니고……

아까 일간베스트라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 글이 누구의 아들, 지금 우리 중에 누구의 아들에 대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글이 공공연하게 그냥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또 이런 식의 내용을…… 그리고 여섯 차례 검찰에서의 무혐의 처리,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것은 명예훼손이 명백하다, 병역 비리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법원과 검찰의 여섯 차례 이상의 이런 판결과 혐의 처분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MBC가 이런 내용을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계속 보도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박민식 위원 그러면 그것만 확인이요. 증인으로 신청한 건 맞지요?

○송호창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이런 MBC의 보도 행태와 그다음에 일간베스트의 홈페이지에 버젓이 이런 식으로 게재돼 있는 것을 우리 방심위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증인으로 신청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은 뒤에 추가로 확인하고…… 그건 저랑 따로 얘기를 하면 되잖아. 여기에서 지금 그 얘기를 왜 해.

○박민식 위원 아까 아니라고 공개 석상에서 이야기를 해서 내가 말한 주장이 마치 아닌 것처럼……

○송호창 위원 그것은 따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박민식 위원 중요한 문제지요.

○위원장 홍문종 최민희 위원님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최민희 위원 박민식 간사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과학적인 사안이다’,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인 판단이 이미 내려진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병무청에서도 그 MRI가 박주신 씨 본인

의 것이라고 판단해서 과학적 검증이 끝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MBC 보도의 문제는 이런 구체적인 과학적 검증이 일단 세브란스병원하고 병무청과 있었다 이것은 보도하지 않고 논란이 끝난 듯 했는데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라는 식의 보도로 비껴간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증인 요청 건은요, 법원이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증인을 신청해서 채택해 준 것은 맞으나, 예를 들면 법원이 의지를 가지고 증인을 부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소환장을 발부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MBC 보도가 지금 문제되는 것은 이게 2년여를 끄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방선거 전에 박원순 시장 흔들기용으로 시작됐는데 박원순 시장이 지방선거 전에 고발했다가 고소를 취하한 것은 그 문제 제기한 분들의 그 문제 제기가 맞아서가 아니라 지방선거에 승리하고 나서 관용의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MBC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스스로 장악된 MBC가 유력 대권후보 죽이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거라고 봅니다. 공영방송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문종** 이것으로 추가질의와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6시에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18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4분으로 하고 부족하시면 1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류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영 위원 방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6일에 방통위에서 스마트폰 앱 관련

해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류지영 위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기 적절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는 스마트폰 앱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다들 경험하셨겠습니까? 마는 앱을 다운받을 때 보면 너무 많은 필요 없는 접근 권한을 다 요구를 하고, 또 설사 접근 권한을 요구했다라도 개인정보를 가져갈 때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특히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매우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앱 개발자 그다음에 또 앱마켓을 운영하는 사람 또 OS운영자, 모든 사람한테 그런 기준을 제시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류지영 위원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앱이 이용자의 스마트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즉 앱 권한을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류지영 위원 그렇다면 이 필요한 범위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하기에 좀 어려운 것이 앱의 다양한 종류에 따라서 접근 권한이 허용되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앱 종류별로 필수적인 접근 권한을 가져야 될 부분 그다음에 아니면 선택적으로 하고 선택적인 건 설사 체크를 하지 않더라도 앱을 다운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 등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러면 그 작업을, 과연 기준을 앱 개발 업체에다가 맡기나요, 아니면 방통위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저희가 중심이 돼 가지고 앱 개발자 그다음에 OS운영자 등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맡기는 건 아니라는 말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류지영 위원** 위원장님께서서는 법관 생활 오래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류지영 위원**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그 가이드라인이 추상적으로 규정을 하면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기준 제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선언적인 의미는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사업자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는 있지만 부족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지영 위원** 진짜 가이드라인이라면 앱이 사용자의 스마트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런데 하여간 앱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류지영 위원** 너무 많아서……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 부분은 하여간 최대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 그런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방통위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참여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개인정보보호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류지영 위원** 주무관 1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주무관이 주임으로서 맡아서 하고 있고 다른 직원들의 도움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렇지만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1명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류지영 위원** 이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인력의 한계가 있다고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적인 인력을 강화해서 가지고 스마트폰 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개인정보 분야가 점점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저희가 최대한 직원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들을 수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유승희 위원**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할게요.

각 포털별로 소송이 진행 중인 내용이라든지 진행 과정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포털을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소송 관련된 내용을……

○**유승희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이 자료 요구를 해야 되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일단은 지금……

○**유승희 위원** 저희가 직접 회사를 불러다가 할 수도 없고……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희 위원** 어쨌든 방송통신위원회니까…… 그러면 문광부 통해서 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그러면 알아보는 데까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예,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포털 관련 어떤 소송을 말씀하시는……

○**유승희 위원** 여러 가지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소송 내용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진행 과정에 대한 그런 자료요구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자세하게 상세하게 요구를 했으니까 거기 근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

분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김보라미 변호사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우선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통법 제4조5항에 따라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과 판매점은 단말기 추가지원금 15%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잠깐 안 계신 것 같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여기 계십니다.

○**유승희 위원** 아, 그래요? 뒤에 계시는구나.

먼저 위원장께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그래서 7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을 문구대로 해석하면 직영점이 추가지원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입법취지로 보면 직영점도 대리점과 마찬가지로 15% 추가지원금을 주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한 좀 더 광의적 해석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는 얘기하셨는데 로펌의 법률 검토를 받아 보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받아 봤습니다.

○**유승희 위원** 자료에 의하면 받아 본 것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과 딱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요 법률회사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직영점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이동통신 3사의 직영점이 형태가 다릅니다. 두 곳은 자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완전히 법인이 다른 별개의 직영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동통신 한 회사는 그냥 자기 조직 내에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단말기유통법 제정 당시에 충분히 고려가 되지 못한 상태로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차별화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많은, 한 회사의 직영점에서 15% 추가지원금을 주고 있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그것을 다 위법화시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법을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법적 근거는 좀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유승희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배덕광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지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논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두고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김보라미 변호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직영점 추가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방송통신위원장님 답변도 있었고 그러셨는데 현재 법률가로서 그리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고문변호사이시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김보라미** 지금 제가 통신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운동을 계속해 온 변호사 개인 입장에서 말씀하신 직영점 추가지원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단통법 위반 폰파라치 조직화 또는 영업화, 영업기업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모두 단통법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단통법이 이동통신사 이익을 고착화하면서 반대로 소비자들은 과거와 달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고 또 최근에 나온 경제적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통사들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단통법 이후에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반면에 무선망 투자비 비율은 계속 축소되고 있어서 단통법이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만을 감소시켜 주고 오히려 이윤만을 증대시켜 준 것이다, 그리고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했던 최초의 그런 비판들이 모두 사실이었던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단통법이 폐지되거나 적어도 상한제만이라도 개정이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요.

두 번째로는 이동통신협회 고문변호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추가지원금 대상 범위는 이통사의 직영점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유통시장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중소상인들이었던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거의 30% 이상 지금 폐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는, 준비 중인 경우까지 전부 포함하면 한 50% 정도

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이 그냥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사의 직영점들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고 이동통신사들의 직영점과 자회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또 최근에 드러난 바에 따르면 직영점이 아닌 상인들과 그다음에 직영점 간의 차별적 이익을 주는 경우까지 나타나서 유통시장이 지금 단통법 이후로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단통법 자체가 이동통신사의 시장지배력을 보장해서 이윤을 고착화시키면서 그러면서 다시 재차 추가지원금으로 그것을 직영점, 자회사까지 확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동통신사들에 의해서 유통시장이 점점 고착화되고 시장이 하나의 지배력으로 통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승희 위원** 다단계판매라든지 폰파라치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돼서, 폰파라치는 제가 확감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제도 폐지가 필요한 거지요?

○**참고인 김보라미** 통신 다단계의 심결은 어제 나왔는데요, 다단계에서 소비자는 판매자이기도 하지만 다시 소비자 입장이 중복해서 병행해서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서비스 자체에 대한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파리떼처럼 몰려다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이라든지 소비자의 보호 측면에서 테두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영업방식인데, 그래서 소비자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시정조치를 좀 더 엄격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제 심결 내에서 좀 많이 안타까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유승희 위원** 1분만 더.

○**위원장 홍문종** 예.

○**유승희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의료광고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것은 간단하게, 자료화면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성형관련한 방송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비포어 애프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광고가 아니라 방송을 하고 있지요, 방송을. 그런데 지금 쇼닥터, 닥터테이너 이런 말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들어 봤습니다.

○**유승희 위원** 지금 의사하시는 분들이 방송매체에 출연해서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져 가지고 연예인 못지않은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 아주 급속하게 성형수술이 상품화돼서 의료사고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작용도 많고. 그런데 지금 방송 심의규정도 그렇고 의료법 제56조2항에 따라서도 지금 이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문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방송협찬 및……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간접광고, 특히 성형광고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심의 건수가 매년 급증을 하고 있어요. 매년 급증을 하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2011년도 보면 5000건에서 2014년도 1만 5553건, 굉장히 막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4만 8000건 정도가 4년간 쌓였는데 방송심의위원회의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심의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15년도까지 99건에 불과해요.

지금 방송 관련해서 의료광고 폐해가 굉장히 심각한데, 방심위의 제재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 방심위가 좀 이런 것은 제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제하고? 표현의 자유는 규제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은 제재하고 규제를 해야지요. 왜 그런지 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위원님의 우려에 제가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쇼닥터라든지 이와 같은 문제를 절감을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의사협회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자정노력을 통해서 먼저 척결을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문

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승희 위원** 획기적인 결과가 어떤 거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의사협회에서 스스로 심의를 강화해서 쇼닥터 문제라든지 성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어쨌든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자정노력했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MOU를 맺어서, 지금 심의 건수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큰 격차가 왜 일어났는지 일단 얘기를 해 주시고 그 격차를 어떻게 줄여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를 준비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의사협회가 물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자기네들이 회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재나 이런 것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로서 어쨌든 조금 더 엄정한 잣대를 대서, 정말 저희들이 사실은 건수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서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것을 중점 심의의 대상으로 놓고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협회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격려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잡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엄정하게 어쨌든 심의의 잣대를 들이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확감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렇게 조치를 마련을 해서……

○**유승희 위원** 그리고 래미인에 대해서는 지금 상영가처분 신청을 여성단체에서 냈잖아요. 그것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지금 아무튼 저희들이 래미인, 어쨌든 그야말로 법정제재를 강하게 했지요. 그랬는데 어쨌든 앞으로 그와 같은……

○**유승희 위원** 그런데 시즌5 지금 또 나오잖아요? 그렇게 제재를 했는데도 그냥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제재를 했기에 그런 상황이 되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저희들이 과징금의 이 문제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정말 다시 반복이 될 경우에는 과징금까지도 부과하겠다, 그런 방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배덕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덕광 위원** 해운대 기장갑 배덕광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핸드폰에 앱 다운받아 보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배덕광 위원** 자주 쓰는 앱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배덕광 위원** 저는 시간이 나는 대로 페이스북 앱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핸드폰을 바꾸면서 페이스북 앱을 다시 다운받았는데 제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를 해서 상당히 기분 나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앱 이용자의 70% 이상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다 같은 심정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의 경우에 저한테도 39개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는데 이 정보가 왜 필요하며 또 어디에 쓰이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보가 왜 필요한지 전혀 설명도 없습니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인데요, 카카오톡도 28개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구글플레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앱 10개가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몇 개일 것 같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마 굉장히 수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배덕광 위원** 대개 12개 내지 13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15개가 된답니다. 그런데 15개를 수집하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어야 하는지, ID라든지 주소록이라든지 또 위치, 사진, 카메라, 마이크, 일정

표,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해도 7개가 넘는데 15개가 되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배덕광 위원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폰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 것이고요, 사실 저 자신도 몇몇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싶지만 거기서 요구하는 접근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해 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이용을 포기한 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배덕광 위원 알겠습니다.

또 SNS 기능을 권하게 하는 정보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기능과 전혀 상관없는 제 통화기록이라든지 또 일정표라든지 주소록이라든지 위치정보라든지 문자메시지를 왜 요구하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개인정보 이용을 전부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앱을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배덕광 위원 그런데 앱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자가 무조건 동의하도록 할 것이 아니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인터넷 웹사이트도 그런 식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과 선택적으로 할 부분을 구분해서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처럼 앱도 그렇게 구분을 해 놓고 필수만 하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덕광 위원 물론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한데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분다면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에 얼마나 신경을 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은 아마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아무리 암호화해 가지고 잠간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그렇게 많이 수집해 가는 것 자체가 저희들로서 매우 불쾌한 일이

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고의적으로 또는 해킹에 의해서도 부정하게 이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배덕광 위원 그런데 작년에……

시간 조금 더 주시지요.

작년에 손전등앱이 이용자의 각종 정보를 빼내 가지고 해외에 판매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때 앱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가 큰 문제가 된 건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배덕광 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일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치 정보와 사진, 마이크, 개인 파일을 요구하는 손전등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앱을 실행하지 않아도 앱개발자가 내 정보에 접근하든지 다른 용도로 악용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게다가 앱 종료 이후에도 내 정보가 파괴되지 않고 심지어 앱을 삭제해도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앱이 이렇게 개인정보를 마구 수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구글과 통신사 때문입니다. 구글과 통신사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앱의 이런 행태를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저희가 스마트폰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자들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정보통신방법의 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면 정보통신방법의 몇몇 규정을 위반하게 돼 가지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려고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절차를 거친 이후에는 실제로 그런 앱이 계속 사용이 되고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한 과징금이나 또는 형사 조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배덕광 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그러시지요.

○배덕광 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에 처벌 조항

이 전연 없고 또 행정권고만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드라인과 기존의 정보통신방법을 합쳐 가지고 정보통신방법에 있는 처벌 규정이 추상적인데 가이드라인에서 구체화해 가지고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배덕광 위원 제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방송사들이 만든 공공앱 170여 개를 전수조사 해 봤는데 여전히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면 EBS는 초·중·고생과 수능준비생이 사용하는 앱에 전부 학생의 주소록과 위치 또 카카오톡, 통화기록을 요구하고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또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만든 신토불이라는 앱도 주소록과 통화기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처럼 공공앱도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데 구글과 애플 같은 외국계 회사가 과연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공앱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덕광 위원 20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예.

○배덕광 위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구글과 협의를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따로 협의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셨습니다.

○배덕광 위원 협의를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배덕광 위원 구글과의 협의된 내용을 확인감사 전까지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덕광 위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미 참고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보라미 참고인 계시지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KOBACO 처음에 오셨을 적에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경영실적 평가를 D등급 받으셨어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물론 광고가 주는 게 꼭 경영진 때문은 아니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

새로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D등급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무능했다 이런 뜻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경영평가가 D로 부족하게 나온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작년도 경영평가는, 저는 사실은 지난 연말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 경영에 대한 평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변명은 아닙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부임하신 다음에 많이 좋아졌어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많이 좋아졌습니다.

결국 경영평가가 낮게 나온 이유는 저희들의 핵심 사업인 결국 광고 매출이 작년의 경우 전년도, 2013년에 비해서 금액으로 약 100억, 8% 정도 떨어졌고 그러면서 새로 수입이……

○이상호 위원 4분짜리여서 그 정도로 들겠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30억 돼 가지고 작년에 3년 연속 경영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부임한 이래 12월 초에 아주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올해 들어서서 상당히 가혹할 정도의 긴축 경영을 해서 30억 정도 절감을 하고 있고……

○이상호 위원 어쨌든 광고가 줄어드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비상한 방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셔야 될 겁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올해는 그래도 다행히 현재 3.5% 정도 작년보다는 광고 매출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나마 올해는 경영수지 흑자를 달성할 수 있겠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예.
- 이상호 위원** 방통위원장님!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이상호 위원** 결합상품 문제 제가 계속 말씀을 꽤 오래 드렸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방송이 끼워팔기 상품으로 전락해서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기 어렵고, 그러면 오히려 옛날 시작할 때보다, 케이블TV 수신료 요금이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보다 오히려 요금이 떨어졌으니 그게 제작비로 갈 수도 없고 차라리 결합상품 판매 중에서 휴대폰과 연동시키는 결합상품은 아예 금지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IPTV나 인터넷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결합상품은 서로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같이 간다 하더라도 핸드폰과 케이블TV나 이런 것을 꼭 연동시켜서 같이 팔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은……

○**이상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가면 결과적으로 방송은 다 죽어요.

이렇게 봅니다.

UHD TV가 도입되면 직접수신 부담률이 5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케이블TV를 통해서 지상파를 안 봐도 되는 가구가 5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수록 케이블 방송의 시장 상황이 더 열악해질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이상호 위원** 그런데 케이블TV 방송은 핸드폰이나 IPTV의 미끼상품이 돼 가지고 지금 3000원, 4000원 받고 어떻게 케이블TV 저 채널들이 다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이런 시장 환경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방송이 살겠습니까?

제가 자꾸 결합상품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방송의 생태계가 앞으로 UHD TV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바뀔 거냐를 연구해서 유료 방송시장을 키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키워야 할 때 유료 방송시장에 종편 같은 것 하나 끼워 주고 이러니까 되겠어요?

꼭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심각합니다. 이렇게 가면 방송이 완전히 사양 산업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말씀을 드리는데 결합상품 문제에 대한 시장 조사도 뭔가 좀 소홀하고 그것에 따른 대책도 너무 소홀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좀 더 정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인터넷 개인방송이요, 일종의 BJ 방송이지요, 이게? BJ 방송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어떤 여성이 심하게 음란한 행위를 해서 손님을 끌려고 하다가 문제가 됐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걸러서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방심위에서 BJ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 문제가 되면 제재하는 것은 방심위가 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문제된 다음에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로 보면 음란하고 도박 이런 쪽이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 생각은 전적으로 같습니다. 다마는 항상 거기에도 또 표현의 자유 그런 것들이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호 위원** 아니, 벗고 난리치는 게 무슨 표현의 자유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아니요, 그 전에 저희가 사전적으로 이러이런 것은 못하게 한다든지 그랬을 때 문제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방통위원장님, 늦게까지 수고하 많으신데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 괜찮습니다.

○**민병주 위원** 작년 국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여쭙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민병주 위원** CPS와 관련해서 사업자 간 분쟁이 있어서 이로 인해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침해

를 받기 때문에 작년 국감에 이런 문제를 지적했고 위원장님께서도 협의체를 만들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협의체는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진행이 잘 되고 계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2번 회의를 했고 굉장히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지상파 쪽에서 전문가를 추천하지는 않았습시다라는 저희가 지상파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를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하여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런데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최근에 물론 하급심 판결이긴 하지만 법원에서 소송을 선고해 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의 경우에는 CPS 감정까지도 실시가 되고 있다고 하는 등 다양한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합쳐지면 우선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협상의 물을 만들고 그 안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콘텐츠 거래는 콘텐츠에 대한 제값은 지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이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시청자들의 방송권도 침해받을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민병주 위원** 그래서 시청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콘텐츠 이용료 공정배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제시하실 수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 저희가 직접 콘텐츠 각 대가를 제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렇지요, 정부가 직접 대가를 제시하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저희는 협상의 물을 만들고 거기에 와 가지고 하되 저희는 브로드(broad)한 범위를 정해 주고 거기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질의하는데 너무 시끄러운데요. 집중이 안 됩니다, 저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만 실질적인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잘 하셔서 저는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 준다기보다 정말 제대로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개선책을 정부가 잘 유도해 낼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리고 하나 또 당부드리면,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직권조정이라든지 국민 관심이 되는 재정이라든지 방송유지·재개 명령권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질의하는데 좀 시끄럽지 않게……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이개호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님, 방송법에 방송광고 종류가 어떤 식으로 나열이 됐습니까, 일곱 가지라고 그러던데?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프로그램광고, 그다음에 자막광고, 시보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러니까 일곱 가지 외에는 방송광고로 볼 수 없는 건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그 일곱 가지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하면 적법하지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개호 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소위 재핑광고, 채널전환공간활용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케이블방송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씨엔엠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CJ헬로비전 그리고 KT스카이라

이프 같은 데서도 지금 연내에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지금 방통위에 이에 따르는 시청자 불편 민원이 접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몇 건 접수가 됐습니다.

○**이개호 위원**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6건이 지금 현재…… TV 보다가 채널 틀면 광고부터 튀어나오니까 이것이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 방송의 소위 정체성이라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그것을 뒤흔드는 조치 이기는 한데 광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다시 말씀드리면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강제로 광고를 떠넘기는 그러한 양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만저만한 불편이 아니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대로 방송법 제73조제2항에 의해서 방송광고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심각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상당수 시청자들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파악하기에. 그래서 이에 대한 그러한 방식이 입법의 불비 때문에 일어난 일이면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방통위 내부적으로 필요하다면 어떤 특정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마련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은 시청자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리모컨 미리 설정방법으로 그것을 안 나오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널리 홍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SO의 원격으로 그렇게 안 나오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의해 가지고 시청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근본적으로는 미래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1분만 하겠습니까.

꼭 재평광고에 대해서는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이개호 위원** 방심위원장님, 방송사의 경우에 방심위 회의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받으면 방송에서 자막을 통해서든지 안내방송을 통해서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런데 반대로 방심위에서 제재 조치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까 추가질문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재판을 해서 승소를 했다 할지 아니면 방심위의 인용이 됐다 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전혀 없더라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개호 위원**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어쨌든 저희들이 제재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졌는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불공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 지적……

○**이개호 위원** 그것도 일종의 비례 원칙인데 서로 양자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여하튼 현재로서는 대개 또 방송사가 그냥 제재조치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을 때는 또 소송으로 바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소송 결과……

○**이개호 위원**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자막에서나 방송을 통해서 그 승소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래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대구 북구를 서상기 위원입니다.

KBS 수신료 현실화 한 번 더 짊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35년 동안 2500원에 묶여 있다는 얘기는 정말 사상 유례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19대 때 이것을 해결 못 하고 지나간다면 정말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또 방송통신위원이든 두고두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못 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徐相箕 委員** 물론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중간에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 문제 가지고 여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다 개별적으로 만나 보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런데 여당 위원님들 중에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徐相箕 委員** 없지요.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 중에 찬성하시는 분 계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근본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 그다음에 인상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부담에 대한 우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徐相箕 委員** 결론적으로 찬성하시는 분 못 만나 보셨지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것이 좀 애매합니다. 찬성을 하신다고 그러시면서도……

○**徐相箕 委員** 소신껏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 그러니까 찬성하신다고 그러시면서도 이러이러한 것이 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꼭 반대하시는 것도 아니고……

○**徐相箕 委員** 좋습니다.

아마 이 국감 장면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일이고요.

다른 문제입니다.

인터넷·모바일 광고시장의 건전화 방안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세가 다른 데 비해서는 엄청나게 높아서 29%까지 예상하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모바일 광고시장이요?

○**徐相箕 委員** 모바일·인터넷,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徐相箕 委員**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어쨌든 간에 광고를 취급하는 매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고속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徐相箕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배력이 앞으로 점점 더 절대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권한이라든지 영향력에 비해서 포털들이 보이는 사회적 책무는 지금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 면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고의 경우에도 사실 방송광고가 영향력이 크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방송보다 포털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포털에서의 광고 규제에 대해서는 좀 많이……

○**徐相箕 委員**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빠져 있고 그래서……

○**徐相箕 委員** 그게 정부에서 해야 될 일 맞지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徐相箕 委員** 거기다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주요 포털과 제휴를 맺은 1000여 개의 유사 언론들이 포털과의 제휴를 무기로 해서 광고나 협찬을 갈취하고 악의적 보도를 쏟아내는, 인터넷뉴스 생태계 자체를 지금 아주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래서 언론사를 선택하고 또 기사를 배열하고, 제목을 편집하는 권한을 가진 포털의 언론적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으로, 아주 획

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저희 업무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래서 편파 보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덮어 놓고라도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여건 야건 떠나서?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래서 포털에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아까 말씀드린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지금 준비위원회 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곧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유사 언론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 가지고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徐相箕 委員**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수술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전병헌입니다.
수신료와 관련하여 우리 야당도 34년간 KBS 수신료가 동결되어 왔다는 점 또 아까 보고를 하셨지만 UHD방송 도입 시에 사실상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급격한 방송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수신료의 변화 내지는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지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국민 세금을 기간으로 운영되는 그야말로 국가 공영·기간 방송이기 때문에 과연 KBS가 국가 기간·공영 방송으로서 공정성과 공공성 그리고 문화적·사회적·정치적 다양성을 얼마만큼 제대로 만족시키고 충족시키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상식적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어찌되었던 국민에게 부담 요구를

추가로 하고자 한다면 KBS가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 경영이라는 그런 지적을 받아 왔기 때문에 방안 경영의 문제를 자구노력과 쇄신책으로 국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찌되었던 지금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한 안이 2500원에서 4000원으로 1500원 인상하는 안이기 때문에 한 달에 1500원 인상이 어떤 측면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지라 하더라도 이것을 부담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워낙 요즘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1500원 인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합리성 있는가, 꼭 1500원이어야 하는가? 그래서 만약에 수신료를 조정하고 부담하더라도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과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라는 거지요.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서상기 위원님께서 일률적으로 찬성이나 반대냐라는 식의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은 조금 수신료 논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을 모두 포괄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는 지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잠깐 LG유플러스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 소비자와 차별하는 이른바 이중 장부와 편법 특혜 계약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전병헌 위원**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주한미군에 대해서 특혜 계약을 한 것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미군 부대 내에 LG유플러스 매장으로 주한미군이 구입 요청을 하면 LB 휴넷 대리점이라는 곳에 개통 요청을 해서 여기에서는 정상적으로 개통을 하는 것으로 등록을 하고, 일단 단말기가 제공이 되면 실사용자 등록 및 개통 후 단말기 지급할 때는 이른바 UBS라는 미군 대상 전용전산에 변칙으로 등록을 해서 이중 등록을 통한 편법 특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LG유플러스 개통 화면인데 동일인의 개통 화면이에요. 이런 개통 화면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는 24개월로 처리가 돼 있어서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고객으로 분류를 하고, UBS상 고객 처리 화면에는 나인 먼스(nine month)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9개월 고객은 보조금 지급이 불법인 것이지요, 시장의 질서

를 교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이중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지적이 되니까 다시 한 번 저희 사무실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오후 들어서 LG유플러스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에서는 오늘 국감이 끝난 이후에 내일 즉시 시간을 두지 말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와 같은 변칙·편법 영업이 근본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하나만 더 하고 서면으로 할게요.

마지막으로요, 중편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 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고, 통신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통신 다단계 판매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소위 말해서 SKT와 KT, LG유플러스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재벌그룹이고 대기업인데 이러한 통신판매를, 이른바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 판매하는 것도 부족해서 다단계 판매까지 한다는 것은 상도의상 너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방통위에서 결정한 방문판매와 관련된 조치는 사실상 방문판매에 대해서 방통위가 이른바 일정하게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 준 그런 결심 판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지요, 그렇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그걸 적극적으로 인정을 했다기보다는요, 지금 현행법상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방문판매법상 허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단말기유통법에는 방문판매법처럼 체계적으로 다단계 영업을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단계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직급 포인트도 일종의 지원금에 포함되게 되는데 이것은 적립 직급 포인트가 영업실적에

따라서 계속 누적이 돼서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방통위가 조사 시점, 이 다단계 판매에 대한 문제를 갖고 조사를 시작을 할 때는 불법 상태가 아니지만 이 조사가 끝난 뒤에 시간이 지난 뒤에는 이것이 불법 상태로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방통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신사에 있어서 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그런 근본적인 점검을 하고 필요하다면 입법 조치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 우수한 재벌, 3대 재벌그룹인데 이 다단계 판매까지 해 가면서 중소기업자를 괴롭히는 것은 이것은 상도의적으로 맞지 않다, 공존 공생해야지, 그렇잖아요?

이것 완전히 말이지요, 외국의 대기업들은 세계의 시장에 가서 경쟁을 하는데 우리 대기업, 재벌그룹들은 골목시장에 있는 이끼까지도 팍팍 굶어먹는 이런 부도덕한 상문화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산업적인 그런 어떤 효과나 성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점에 있어서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소신과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지적하신 점들을 다 종합해서 다단계 판매에 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문종** 전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해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조해진 위원** 조금 전에 포털하고 방송광고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방송광고가 그전까지는 광고의 총아였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조해진 위원** 광고 한번 넣으려고 그렇게 매달렸는데—다른 매체는 말할 것도 없고—방송광고마저 포털로 이렇게 죽 빨려 들어가는 게 포털의 이용이 급증한 것도 그 원인이 있지만 포털에 광

고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나쁜 광고 또 규제받아야 될 광고도 늘어났지만 또 자유로운 상황에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광고 기법이 개발이 돼서 그렇게 된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반면에 방송은 규제에 묶여 가지고 꼼짝달싹 못 한 것도 있어서 저는 포털…… 물론 문제가 되는 광고는 포털도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고요. 그것과 별개로 정상적인 광고일 경우에도 포털의 자유로운 광고 기법을 허용한다면 방송도 대칭적으로 기존의 규제의 틀을 벗어나서 다양한 형태로 광고 효과를, 그래서 구매 효과를, 그래서 생산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을 방송 쪽에 폭넓게 허용하든지, 그래서 대등한, 대칭적 경쟁이 되게 하든지…… 만약에 방송에 그걸 못 해 주겠다고 하면 포털도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털의 정상적인 그런 창의성 있는 광고를 규제하는 쪽보다는 그런 그대로 두면서 방송을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방송 기법을, 광고 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풀어 주는 것이 더 미래 지향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고, 다만 방송광고를 규제를 완화했을 때 시청 흐름이나 프로그램 내용에 간섭이 생겨서는 안 되는 그러한 마지노선만 지킨다면 신유형 광고는 얼마든지……

○**조해진 위원** 그것은 시청자들이 우리보다 더, 바로 반응할 겁니다. 짜증 나고, 내용도 콘텐츠 보고 싶은데 광고 질질 끌고 하면 채널 돌아가는 데요. 그것은 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시청자들에게 바로 반응이 오고, 그것까지 우리가 간섭해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 온라인 방송 콘텐츠 수출이 그동안에 죽 늘어났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조해진 위원** 이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준, 중국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었는데 작년 9월부터 중국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 내용 규제도 들어갔고, 중국 헌법에 어긋나면 안 되고, 안보 해치면 안 되고, 중국 문화·전통에 어긋나면 안 되고, 그때 우리가 긴장 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드디어……

오프라인은 2000년대 중반부터 벌써 규제가 있었고 온라인은 우리가 새로운 출구로 열었는데 작년 9월에 조치가 나오면서 우리가 다 긴장하고 그랬는데, 올해 4월에 또 규제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모든 방송 콘텐츠들을 온라인에서 동영상 유통 못 하도록 더 엄중하게 규제를 하고 나와서 굉장히 비상이 걸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시장에서 중국 정부가 우리 콘텐츠를 보호를 해 주느냐, 정당한 콘텐츠를 보호를 해 주느냐 하면 그것은 굉장히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해적 행위가 판치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저렇게 나서고 있는, 시장에 맡겨 놓았던 걸 정부가 나서서 저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도 정부가 나서서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 줘야 되지 않나, 우리 업계 쪽에만 맡겨 놔 가지고는 안 되고……

특히 한중 FTA가 실질적인 타결이 됐고 광전 총국하고 후속 협의가 있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8월 말에 가 가지고…… 광전총국장이 국가관권국이나 저작권 관리하는 것도 다 검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도 다 관리를 하고 있어서 만나 가지고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그다음에 한중 FTA의 후속으로 결국에는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지금 콘텐츠는 비록 온라인이지만 그것을 하는 것을 규제를 더 완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공동 제작이라든지 서로 손을 잡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는 기획력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제작력·기술력이 뛰어나고, 중국은 자본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있고 또 홍보 같은 걸 할 수가 있으니까 서로 결합을 해 가지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는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로까지 더 나아가자라는 그런 연구만을 만들어서 지금 가동을 하기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대답이 중국의 콘텐츠를 우리 지상파 방송에서 많이 틀어 줬으면 좋겠다고 그쪽에서는 거꾸로 또 요구를 하더라고

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해진 위원** 우리 시청자들이 그걸 선호하면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중국 대중들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우리 방송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막는 데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활로를 잘 열어 주시기를……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방송사하고 협의를 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정호준입니다.

우리 박성문 KOBACO 사장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예.

○**정호준 위원** '3년 연속 적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방송광고 시장의 어떤 구조 문제 때문에 적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아까 사장님 말씀이 그래도 사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좀 나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경영 개선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KOBACO가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각각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예, 그렇습니다.

○**정호준 위원** 그런데 최근 5년간의 임대수입에 비하면 제세공과금, 관리비가 더 많이 발생을 해서 5억 8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건물이 한 20여 년 전에 구입했던 건물들이고요.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 돼 있고 또 본래 당초 공적인 역할을 하도록 건물을 구입해서 좀 낮게 하고……

○**정호준 위원** 유관기관이 많이 입주해서 임대료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그리고 말하자면 감가상각이 있고 해서 그렇게 경영 수익을 얻기 위한 지사 건물은 아닌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정호준 위원** 언론 관련 유관기관이 전체 입주 업체 45개 중에 9개밖에 되지를 않고요. 임대 면적으로 봐도 17.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주 업체로부터 오랫동안, 수년간 임대료를 인

상하지 않고 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요, 혹시?

임대료 인상 계획도 보니까 부산지사만 10%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사실 건물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올려 받기가 좀 힘듭니다.

○**정호준 위원** 건물이 오래 돼서 임대료 올리기가 어렵다 그 말씀입니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예.

○**정호준 위원** 보니까 또 자구노력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각 지사에 필요한 면적의 6배 규모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과 또 건물을 매각하라는 감사원 지시가 있었는데 이것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또 왜 그렇습니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20여 년 전의 구매가격이 사실은 현재 시가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운용지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수입을 다양화하면서 건물을 일단 팔지 않아도 올해부터는……

○**정호준 위원** 사무공간을 줄이겠다 이렇게 또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사무공간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 자료는 아마……

○**정호준 위원** 제가 보니까요, 매각 대신에 사무공간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하셨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행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무공간 축소는 내버려 둔 채 고작 부산과 광주지사의 강당이나 세미나실만 줄이고 더군다나 대전과 대구는 아예 손도 대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영 적자가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 엉터리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가,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위원님 지적사항은 다 옳은 말씀이신데 실제 우리 지사 건물로 갖고 있는 건물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호준 위원** 그렇다고 오래됐다는 말씀만 계속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방안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것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고민해서

하여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KOBACO에서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네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고 있는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그러한 복지 문제는 작년 4월 방만 경영 해소를 한 이후로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정호준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학금을 이중 지원을 하지 못하게끔 금지가 돼 있는데 장학금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42명에 5410만 원의 장학금을 직원 자녀들이나 KOBACO 외부 장학금에 이중 지원을 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그게 작년 4월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노조하고 복리후생비를 46% 줄인 이후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호준 위원 이걸 잘못 된 것은 맞지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맞습니다. 과거의 방만 경영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정호준 위원 그러니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그런데 작년 4월 이후에 그런 모든 제도가 개선이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정호준 위원 하여튼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경영수지 악화가 방송시장 경쟁 확대로 불가피하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건물이 오래 됐다, 이렇게 계속 변명을 하시는데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예, 부족한 점 많습니다.

○정호준 위원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속 이렇게 손실되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사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많이 달라지셨다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만큼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더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워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사장님이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식 위원님.

○박민식 위원 우리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박민식 위원 아까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KBS 수신료 정상화, 현실화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우리, 지금 안 계시네요, 전병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까마는 KBS 수신료 현실화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대개 공감의 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박민식 위원 문제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된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선결 조건…… 그런데 이게 사실 솔직하게 다 아시다시피, 17대입니까? 우리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보니까 또 입장이 바뀌었던라고,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저는 걱정이, 우리 국회에서든 여러 가지 좋은 말은 많이 하지만 이른바 그런 선결 조건이 달려 있으면 사실상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해야 됩니까? 결국 여야 정파의 싸움 때문에 KBS 공영방송의 제자리 찾기는 백년하청이다, 지금 누구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우선 가지면서, 다음에 또 KBS 그게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옆에 방통위 부위원장님께서 이것 담당이십니까? 최근에 남북 8·25 고위급회담,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남과 북이 화해,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예.

○박민식 위원 그런데 정치권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방송…… 통일을 앞당기는 또 통일시대를 안착화시켜서 정말 남과 북의 주민들이 통일 시대라는 것을 아주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독일 통일 과정에서 방송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남북 화해 국면에서 방송교류 확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북한지역에서 옛날에 교류가 좀 있었잖아요, 5·24조치하기 전까지. 그런데 무슨 공연하고 이런 이벤트성이 많지 않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예, 그렇습니다.

○**박민식 위원** 그래서 그런 연구나 아이디어 발굴이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우리 입장만 너무 강조하면 북한의 폐쇄적인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방송 다 허락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특히 정치적인 거나 이런 예민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것은 아마 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나 아이টে을 발굴할 때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단계를 조금씩조금씩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부담이 없는 그런 방송교류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공동제작을 한다든지? 그런데 제 짧은 생각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자주 봐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런 자연, 또 무슨 문화, 유적, 이런 다큐멘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분야부터 이렇게 하면 좀 어떻습니까? 사람들 마음은 상당히 서로 간의 이질적인, 70년을 이질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동질화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또 정서적으로도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런 데 기여를 하면서도 통일시대를 앞당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의 그런 이질화를 극복하는 데 상당히 좋은 기여를 할 것 같은데 그런 콘텐츠, 그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교류를 위해서는, 그동안에는 사실 스포츠중계 같은 것, 그다음에 예능인들의 공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역사나 드라마의 정치적인 색깔이 좀 없는 쪽, 그런 쪽으로 서로 많이 협력을 해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KBS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어떤 역사 다큐멘터리라든지 또 스포츠가 있을 때, 최근에 유소년스포츠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KBS팀들이 취재를 같이하고 이렇게 해서 방송 간에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서로 민족 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방송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매체이고,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민식 위원**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방통위원장님, 저는 방통위원장님께 시청자미디어재단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왜 요청드리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KOBACO 사장님, 업추비 월한도액이 얼마시지요? 162만 원이지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런데 1월부터 7월까지 평균 얼마 쓰셨습니까? 78만 원 쓰셨더라고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칠십……

○**최민희 위원** 예, 월평균 78만 원 정도 쓰셨더라고요. 굉장히 아껴서 쓰셨어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박성문** 예, 아껴 썼습니다.

○**최민희 위원**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경우인데요. 부위원장님, 월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업추비 200만 원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예, 그렇습니다.

○**최민희 위원** 나머지 상임위원들 얼마입니까?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들 이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지금 두 달밖에 안 된 미디어재단 이사장님은 두 달 동안 업무추진비로 604만 원을 썼습니다. 300만 원씩 쓴 거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직무수행경비는 월 15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지금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도 힘들다고 난리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처음 생긴 단체는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썼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업무추진비 한도액을 250만 원으로 올렸대요. 이것 누가 올려 주는 겁니까, 위원장님? 누가 올립니까, 이것?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민희 위원**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인상 근거가 뭐냐,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제출 안 합니다. 저에게 받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방통위 상임위원하고 조찬모임을 해요. 그러면 그냥 품의서에 조찬모임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니터 실무자 회의했다고 써 놨더라고요. 방통위 상임위원이 모니터 실무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강남 호프집에서 48만원 정도의 술을 마셨나 봐요, 46만 8000원. 아, 42만 6000원. 그래 놓고 재단비전선포식 논의를 했다고 써요. 왜 강남 호프집에서 재단비전선포식 논의를 합니까? 품의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고 실제로 보니까 언론인과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간담회를 했다고 썼어요. 마포의 한 음식점에서 46만 8000원을 씁니다. 인력운용계획을 논의했대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15만 6000원을 쓰고 교육실적 점검회의를 했대요. 왜 이렇게 합니까? 저희가 이것 꼼꼼하게 다 보니까 거의 반 이상이 품의서와 실체가 다릅니다. 이래도 됩니까?

위원장님, 답변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것은 당연히 실제와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위원** 예, 그래서 감사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부서하고 미디어지역센터에 월 1건, 이사장 명의의 기고문을 제출하라고 이런 게 내려갔습니다.

방통위원장님, 혹시 외부에 기고하실 때 누구 부탁하나요? 검토는 하시지요? 그런데 이것 의무적으로 하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답변을 하실 수가 없지요. 그리고 제가 더 깜짝 놀란 것은 지금 청년실업 난리이고 일자리 때문에 나라가 몸살을 앓는데요, 운전기사를 동생을 썼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최근에 내신 자료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라고 문의를 했더니 저희가 전화한 다음 날 해촉시켰습니다.

아주 정말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그냥 커피 마셨으면 커피 마셨다고 쓰면 되는데, 마실 수 있잖아요. 엉뚱한 답변을 써 놓은 것, 제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것. 모든 일은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하잖아요.

위원장님, 감사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감사……

○**최민희 위원** 필요성을 인정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시청자미디어재단 자체에도 감사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최민희 위원** 아니요, 방통위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기강 잡으셔야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일단 상황을 보고 저희가 적절한 수단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확감이 있습니다. 제가 드린 이 자료 다 사실입니다. 이 자료 받아내는데 정말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비서관이 목이 쉴 정도로 정말 싸워서 받아낸 자료거든요. 필요성은 인정하시지요?

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권은희 위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단통법 때문에 고민 많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권은희 위원** 단통법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단통법 폐지까지 운운 되었는데요. 왜 단통법을 만들게 되었는가,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국감에는 어떤 말들이 오겠는가 그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2년 국감입니다. 보조금 지급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시장에서 이동통신사가 이렇게 공짜폰을 만들어 주는 상황에서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가격경쟁을 할 리가 있겠는가. 장려금과 보조금으로 통신단말기가 싸게 소비자들한테 건너가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유통사가 사실상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과 혜택을 가로채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보조금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등등 그때 상황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고 그런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단통법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단통법 이제 1년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통법 이후에 뭐가 달라졌을까, ‘호갱’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까. 사실 법은 그 추구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목적을 달성해야 되고 그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단통법 1년의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우선 제일 큰 효과는 단말기 유통시장이 공시를 통해서 투명화, 지원금이 투명화되고 그다음에 이용자 차별이 해소가 됐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은희 위원** 그래서 이용자 차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소비패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단말기 보조금을 받으면서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다가 요즘은 고가의 요금제가 34%에서 10% 정도로 많이 낮아졌네요. 그리고 소비자가 최초 가입 시 선택하는 요금제의 평균 수준이 이전에 4만 5000원에서 지금은 3만 70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대폰 단말기 값도 출고가가 최근 갤럭시S6, S6엣지, 노트4, G4다 가격이 낮아지고 평균 한 13만 4000원 낮아졌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부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단통법 시행이 1년 지난 지금 이제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좀 지양을 하고 법의 제정 취지를 달성하고 또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당연히 단말기유통법의 안착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은희 위원** 그런데 오늘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지원금 상한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통망의 범위만 행위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또 다단계나 온라인 등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채널을 활용한 사례들이 지금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좀 강화를 하고 여기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권은희 위원** 그리고 사업자나, 지금 유통망도 다 죽는다고 하는데 건강한 유통망은 살아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불량한 유통망의 경우에는 개선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지속된다면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어떤 실태점검이나 사실조사, 이것들을 지금보다 더 일벌백계하는 조치를,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즉각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조직으로도 단말기유통법의 안착을 위해서 단말기 유통조사 담당관을 별도로 두고, 종전보다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조사를 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최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방통위원장님, 질문할게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인 것 알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이번에 국감 전에 보니까 대통령 업무보고나 또 업무현황보고에 이게 다 빠졌어요, 맞지요? 그리고 지난 3일 인터뷰하신 것을 보니까 KBS사장 인사청문회 이사 자격제한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충분한 것은 아니고……

○**최원식 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해야 될 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과거에 미방위에서 공영방송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지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의 끝에 지금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졌는데 우선 이런 제도들을 한번 시행을 해 보면서……

○**최원식 위원** 너무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만일에 이러시다가 다음 대선 때 여당 측에서 또 똑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대선공약이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 책임이에요, 개혁을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그때 책임지시겠어요, 어디 계실지 모르겠지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

○**최원식 위원** 그런 것 유념해서 가지고 논의했던 특별다수제나 아니면 방송편성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꾸준히 연구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다음에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외주제작 환경에 대해서 아까 여러 지적이 있었

는데 방통위에서 방송사·외주제작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상생의 외주제작 생태계 개선을 위해 순수외주비율, 외주 인정기준 개정 등 외주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그래서 개선을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된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빨리 진행해서 결론 내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연말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MBN이 독립PD 폭행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면서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신고센터 운영 등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방통위에서도 MBN의 신고센터 운영 같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주제도는 콘텐츠 제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사가 외부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제도지요? 그렇지만 법적 규정은 외주 의무비율, 외주제작 인정기준 이런 것만 있는데 그에 속해 있는 제작인력에 대한 법적 보호 규정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특수관계자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독립PD 쪽 사정이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송사별로 외주제작비 지출규모에 대한 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에 따른 방송사별 표준계약서 기준 또 작성 의무화 또 독립PD에 대한 기본적 노동권 준수를 위해서 외주제작사에 대한 보다 적합한 법적 지위 부여 등 제도적인 검토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연구를 하셔서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작년 12월에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하셨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수정 보완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가 규제를 완화시켰다가 사고 나면 또 강화하는데 근

본적으로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EU와 같이 진지한 입법적 차원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우회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또 명확한 개인정보보호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 금융정보 등은 방통위 소관이 아니라 해당 여러 부서에 맡겨져 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그래서 사고가 터지면 하여간 우왕좌왕하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난 3일 행자부에서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그런데 행자부 발표대로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방통위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정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래서 주도권을 방통위가 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최소한 행자부의 빅데이터 산업 관련 개인정보 검토 TF가 뭘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진행에서 방통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리를 찾아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의 입법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해서 혼선이 안 생기도록 그리고 또 빅데이터 산업 주도권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명심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병호 위원** 문병호 위원입니다.

방통위위원장님, 지난 8월달에 KBS이사회 그다음에 방문진이사회에 추천하셨지요?

결정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문병호 위원 그런데 이사회에 추천된 분들을 보면 너무 이념적으로 편향적인 분들이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전례 없이 3연임한 분도 몇 분 계시는데 이사 추천을 제대로 잘 하셨다고 자부하고 계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방송법하고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서 저희는 요건에 맞는 분들을 추천하고 임명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런데 고영주 이사장 같은 경우에 언론보도에 나왔지만 공산주의자로 문재인 대표를 묘사하고 편향적인 극우적인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분들이 이사 또는 이사장으로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이사 되시기 전의 소신을, 의견을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런데 주로 언론 쪽의 감독기관, 정부기관을 보면 대체로 위원회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문병호 위원 위원회 형식으로 한 이유가 편향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취지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도적인 취지가 다 몰각이 되고 중도·합리적인 분보다 오히려 더 한쪽으로 편향된 분들이 추천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현 정권에 와서 그게 더 심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방통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심사해서 적절한 분을 추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병호 위원 했는데 잘 안 됐습니까? 위원장님 뜻대로 안 되셨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요,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늦게 알게 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마는 저희가 투표에 의해서 선정을 할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같은 요건을 갖춘 분들을 선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병호 위원 그리고 3연임 문제인데 과거에

전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3연임할 정도로 그분들이 이사로서 탁월하게 업무를 수행했습니까? 그런 판단으로 3연임 하신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 것이고, 과거에 KBS이사의 경우에는 2연임을 하고 한 번 쉬었다가 또 2연임을 하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상 연임제한 규정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연임 여부에 대해서 제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병호 위원 그래도 그동안 오랫동안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례가 있는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연임은 안 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3연임을 시킨다면 이사로서 탁월하게 일을 하셨든가 다른 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장점을 갖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정권에 잘 부합하는 인물이다 그렇게 해서 3연임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나름대로 이사로서 역할을 잘 하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다시 또 이사로서 임명을, 투표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병호 위원 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얘기 하고 그동안에 위원장으로서 일하시는 것 보면 취임하실 때 소신이, 초심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처음에 취임하실 때는 공정한 공영방송을 있는 대로 잘 하겠다 이렇게 소신을 밝히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사 선임도 보면 대체로 편향된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3연임이 되고 하는 걸로 봐서는 위원장으로서의 업무 집행에 있어서 소신과 초심을 다 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사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호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정말 방송의 공정성이나 공영방송의 역할 이런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업무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위원님이 계시는데 5분 내로 끝내시지요.

유승희 위원님, 4+1로 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배고프실 텐데 죄송한데 우선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데요, 말하자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핑광고거든요. 그러니까 A채널에서 B채널로 옮기는데 광고가 딱 1~1.5초 정도 뜬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 사이입니다.

○**유승희 위원** 그런데 재핑(zapping)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

○**유승희 위원** 제가 보니까 클릭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이 채널에서 저 채널로 옮기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클릭을 하는데 왜 옮기느냐, 방송광고가 싫으니깐 다른 채널로 옮기거든요. 방송광고를 보기 싫어서 다른 채널로 재핑, 옮기는데 옮기는 그 순간에 광고가 확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방식으로 광고시장이 새로운 방식으로 열리고 있는데 아마 유료방송채널 중에 케이블TV라든지 재핑광고를 서비스 중에 있고 또 잘 되니까 타 사업자들도 준비 중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슬슬 재핑광고 관련해서 시청자 민원이 오겠지요.

이 현안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파악을 하고 있고 민원도 몇 건 들어와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그게 편성이나 또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통신망을 이용하는 거여서 셋톱박스에 있다가 광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방송광고를 볼 수가 없어서 방송광고 잣대를 가지고 제재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신유행 광고를 제재하는 입법적인 게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미 시청자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통해 가지고 재핑광고를 안 보도록 하는 게 리모컨으로 설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유료방송 관련한 시청자들의 시청권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광고에 지금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형태인데? 유료방송 시청자가 5월 기준 30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관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특정 정당이나 정부의 정책 홍보가 무차별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완대책이 빨리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확감 때 다시 한 번 다루기는 하겠지만 재핑광고의 현황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랬는데 법적 근거를 어쨌든 만들지 않으면 광고에 대한 대책을 무방비 상태로 계속 놔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단통법 관련해서 다단계 판매랑 단통법이 과연 동행하고 공존이 가능하냐를 가지고 얼마 전에 단통법 시행 이후에 다단계 판매를 통한 이통시장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상임위원들이 다 계시는데……

김재홍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그리고 허원제 부위원장께서는 다단계와 단통법의 공존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반응이고, 그다음에 최성준 위원장님과 이기주 상임위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어쨌든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게 다단계 판매가 굉장히 여러 가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다단계 판매로 인해서, 특히 청년 실업이 높은 상황에서 일확천금으로 유혹해서 어떻게 보면 별로 좋지 않은 시장에 청년들이 유입되는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에 관련해서는 단통법과의 관련성 부분에서 법적 보완 조치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대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김재홍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허원제 부

위원장님도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해 주시고, 고삼석 위원도 얘기해 주시고, 찬성하는 입장의 이기주 상임위원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마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확감 때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놔둘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다단계 판매에 대한 조치가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에 유혹을 다 느끼지 않습니까? LG유플러스는 이것으로 돈을 상당히 이렇게…… 소비자 수를 늘렸는데 다른 KT라든지 SKT 같은 경우도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김재홍 저는 다단계 판매가 이통시장에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고요. 단통법과 공존하기 어렵다, 부적합하다 하는 견해를 이미 밝혔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단통법의 취지는 크게 봐서 현재 5700만 대의 휴대폰, 국민 필수품 거래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 취지는 그래서 공공성과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단계 판매, 이것은 일대일로 만나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개별계약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나고, 이용자 차별이 음성적으로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 크고요. 투명성이 없다는 것은, 예를 들면 단통법상 법규로 이통사와 대리점의 사전승낙서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원금공시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용자, 소비자가 가서 요청해서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누구나 볼 수 있게 공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단계 판매원들은 과연 사전승낙서 게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마에다 걸고 다닙니까, 가슴에 걸고 다니겠습니까? 지원금공시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단계 판매원 개인이 이행하겠습니까? 가슴에 달고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단계 판매원은 투명성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단통법상 판매원과 이용자는 신분이 구분되어 있는데 다단계 판매 조직상 처음 가입할 때는 이용자 신분이었다가 그다음에 하위 이용자를 모집할 때는 판매원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요. 이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시장에 혼란을 주는 거여서 양자 병립하기가 어렵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승희 위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혹시 없으시면……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고삼석 제 입장은 이번 LG유플러스 다단계에 대한 조사와 제재는 단말기유통법에 따라서 합법이나 아니면 법을 위반했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단말기유통법상 다단계 판매 방식이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는 허용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다만 불법이나 합법이나, 이 차원의 문제와 그리고 앞으로 차후에 이것과 별개로 계속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다단계 판매 방식은 이통시장에서 불허할 거냐, 이것은 추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운영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위법적 요소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앞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비자원에도 지금 현재 다단계 판매, 특히 이동통신의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 소비자들의 피해 가능성은 대단히 높기 때문에 향후 허용·불허, 이 결정에 앞서서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 운영이라 할지라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제 의견은 일단 다단계 판매라고 하는 것이 방판법에 의해서 합법화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과연 단말기유통법과 정합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자에 대한 우리가 차별을 못하게 해 놓은 것이 단통법의 기본 정신인데 한 이통사가 다단계 판매를 통해서 판매하고 또 정상적인 유통구조를 통해서 할 때 이 두 구조 자체가 과연 차별이 생기지 않고 같이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기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편법상에 다단계 판매의 기본적인 구조가 있거든요. 최초에 가입할 때 5만 원 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 구조라든지 또 판매금액이 160만 원을 상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구조와 이 단말기의 판매 구조가 과연 일치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다단계 판매는 어쨌든 합법적이거나 단말기유통법이 신법으로서 제정되고 난 이후에 과연 이 단말기유통법 정신에 다단계 판매가 정합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이기주 늦었기는 했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주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결국 위원님들 간에 많은 논의를 했지만 시정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이렇게 최종 결정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방편법이 먼저 제정·시행이 됐고, 단말기유통법은 시행된 지 1년이 됐는데 두 법 간의 정합성이나 서로 그레이 에어리어(gray area)가 반드시 존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법 간의 현행 실정법상의 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만 이번엔 지적을 하자라는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이 모두 지적하신 그런 사회적인 문제, 우려 이런 부분들은 시정조치 방안 외에 추가적으로 이동통신사들과 저희 방통위하고 일종의 행정지도, 권고 형태로 반드시 사회적인 문제는 시정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위원 우선은 제도적이고 법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뭐라 그럴까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냐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건지, 그다음에 또 그것과 별개로 여러 가지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소비자 피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결함 문제는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거고, 우선 위원장님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확감까지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 상의해 가지고 또 이통사하고도 다양한 논

의를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되는 방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확감 때까지 확실히 해 주실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LG유플러스에서 하고 있는 심쿵클럽, 단말기 보험상품입니다. 이것은 이미 방통위가 제재조치를 했던 제로클럽의 시즌2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만 9000원 이상 요금을 쓰는 이용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같은 위반을 중복하면 가중 제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심쿵클럽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확감 때까지 답 주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저희 부분도 있고 미래부에서 이행약관 개선을 권고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같이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제가 기 공개한 건데 SBS와 마이크로와 지역민방 간 방송법 위반 의혹 문제, 제가 2012년에 문제 제기했습니다만 그때 이 자료를 못 얻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이미 제가 공개했기 때문에 이것도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만약에 방송법 위반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처리해야 되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자료를 받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최민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확감 때까지 어떻게 하실지 방침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어느 영역이든지 갑을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국가기관은 을이 손해 보지 않도록, 그런 마음으로 검토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민희 위원 그다음에 섭섭한 말씀 드립니다, 부위원장님.

광고방송을 산업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광고를 풀어야 한다는 것과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침해해서 짜증나게 하지 말아야 한다가 늘 충돌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짜증난다, 국가기관은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예.

○최민희 위원 제가 협찬에 대해서 섭섭한 말씀

드리는 거 부위원장님은 아시지요?

지난 4월에 협찬 관련해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때 방통위와 저희 의원실이 이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방통위가 그때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협찬의 광고효과를 엄격히 규제하겠다. 믿어 달라.” 그래서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협찬고지규칙 개정안 보고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 첫 번째 제목에 협찬사 쓸 수 있다, 두 번째 보도 프로그램에도 협찬 허용하겠다, 세 번째 협찬고지자막을 사업자가 원하는 위치 어디서든 튀어나올 수 있게 하고, 최대 30초 노출시키겠다, 이것 정말 제가 배신감 느끼는 것 너무 타당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님? 저 너무 섭섭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우선 위원님께 협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과 조금은 상치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민희 위원** 그게 아니고요, 부위원장님 제 말씀은 앞으로 협찬의 광고효과를 엄격히 규제하겠으니 믿어 달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협찬고지규칙은 협찬의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하셨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달았었는데 그 부대의견을 어기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곤란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아니요.

○**최민희 위원** 왜 안 곤란하세요, 약속 어기서 놓고?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원제** 위원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협찬을 보다 더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그 내용에 사실은 담겨 있고요.

○**최민희 위원** 투명성은 그런데, 핵심이 뭐냐? 시청자를 짜증나게 하지 않으면서 투명성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행히 행정예고했던 개정안에 대해서 좀 더 의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논해서 확감 때 알려 주시고요.

마지막 것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홍문종** 하시지요.

○**최민희 위원**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방심위원장님, 제가 왜 질문 안 하나, 좀 이상하셨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최민희 위원** 이것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중편 4사 방심위 제재를 행정지도와 중징

계를 비교해서 분석한 자료, 이것만 받아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TV조선, 채널A, MBN, JTBC가 있으면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중편은 경징계가 많아요. 제재 건수가 적은 JTBC가 가장 중징계가 많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더 들여다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방송위원회에서 일을 해 봤습니다마는 방심위의 일반적인 심의는 처음에 위반을 하면 낮은 수위의 제재를 주다가 같은 것을 반복하면 사실은 높은 수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저 추가질의 할까요?

○**위원장 홍문종** 하세요.

○**최민희 위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 의견제시, 권고더라고요. 반대로 JTBC에 대해서는 표적 심의를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아주 중징계를 했어요. 그중 하나 ‘다이빙벨’은 법원에서 뒤집히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 볼게요.

2014년 3월 12일 ‘황금편치’라는 데서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국정원 전 간부가 나왔는데 정말 기분 나쁘게 이런 말을 했어요. “김한길 대표가 과거 중앙정보부 기관원이었던 나한테서 용돈을 받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거꾸로 김한길 대표님이 아니고 김무성 대표님이라면 이 방송사 문 닫았겠지요? 그리고 아주 중징계 내리고, 관계자 징계까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견제시라는 가장 낮은 수위의 제재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너무 예가 많아서 부끄러워서, 제가 일부 중편이 하는 말도 안 되는 야당 음해—돌아가신 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음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음해, 우리 당 유력 주자들에게 대한 음해—를 보면 낮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인데 방심위에 가면 다 의견제시 내지 권고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심위원장님하고요, 장낙인 상임위원님하고 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위원님의 지적하신 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JTBC나 이런 데 대해서 아주 편파적으로 심의를 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직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저는 다만 원하건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제3기 위원회가 출범해서 1년 되고 그랬는데 가능하면 합의제 정신을 가지고 운영하고자 했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조금 나뉘진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2기 때는 합의로 된 것들이 한 사십 몇 프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1년 뒤에는 그게 육십 몇 프로로, 사실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편파적으로 심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저희 심의위원회가 저희들만 있을 때만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품위 있는 심의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꼭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엄정한 심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상임위원 장낙인 지금 위원장님 말씀 교과서적인 답변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3기 초기에 종편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심의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음영을 KBS에서 두 번을 썼습니다. 한 번 권고를 받았고, 제시봉과 관련된 그 프로그램에서 권고를 받았고, 이번에 다시 같은 음영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서 권고가 나왔습니다. MBC에서 그 음영을 썼을 때 처음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가 재심 신청이 들어왔을 때 주의로 낮춰 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같은 음영을 같은 방송사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소위에서 권고로 의결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이번 경우에는 방심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적용을 해서 위원장님께 전체회의에 올려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회의에

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3기 들어와서 그 말씀을 처음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례로 볼 때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최근의 결과들은 상당히 불만스러운 그런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고민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최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식 위원님!

○최원식 위원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최민희 위원께서 방금 지적하신 협찬고지 규칙 행정예고에 대해서 여쭙 볼게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 중심의 규제 완화이고 시청자 권리를 무시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방통위가 광고주와 일부 방송사업자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창구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건 아닙니다.

○최원식 위원 말씀드릴게요.

방송프로그램은 시청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지요. 또 광고주나 협찬 기업도 마찬가지로 시청자가 있기 때문에 협찬광고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방통위가 방송광고 제도 개선에 있어 시청자들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도리어 방송의 산업화를 부추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실상 방송 제목광고까지 허용하고 또 보도·시사·논평·토론 프로그램에도 사실상 협찬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은 시청자 권리를 무시하는 거라고 보이고요. 또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방통위가 추진하는 안대로라면 이미 광고인지 드라마인지 모르는 영상물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은 이제 오히려 광고 사이사이에 예능이나 시사토론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위원장님이기 전에 한 명의 시청자로서의 입장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규제를 풀기 전에 간접광고와 협찬에 대한 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그에 따른 광고 수익 배분체계, 군소 방송 지원체계, 사후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광고를 허용한다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광고주의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간접광고와 협찬의 규제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제목광고는 광고시장의 불균형을 가속화시키고 인기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의 쏠림이 심화되는 등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지역방송이나 기타 매체에 미칠 영향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통위가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지 말고, 특정 방송사의 이익과 편의를 앞세우지 말고, 간접광고와 협찬, 광고판매와 사후 규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원식 위원** 선진국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국가 경쟁력을 위한 주요 요소로 보면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또 우리 역시 방송법에 근거해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략과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시청자미디어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관별, 매체별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각 기관별 특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이나 평가 지표가 없어서 우리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인 교육 지표,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해서 계획을 장기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미디어의 범위, 미디어 리터러시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통위에서 2012년 정책용역사업을 통해서 지수 측정 도구를 개발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못 쓰고 있어요. 그 이유도 한번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또 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을 보니까 주로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최근 인터넷이나 SNS, 메신저 사용이 느는 것을 감안하면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전 연령층,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정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홍문종** 예.

○**최원식 위원** 그래서 우리 미디어 보급 수준과 정보 유통 및 또 우리가 IT 강국이라는 걸 감안하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게 정부의 의무일 것 같고요. 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중복 사업 정비, 기관 간 협력 필요성을 검토해서 확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고, 더불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대상자 및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 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정책과 전략을 마련하는 데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유승희 위원** 저……

○**위원장 홍문종** 말씀하시지요.

○**유승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 질의에 방송통신심의위원장께서 ‘편파 심의는 결코 없다. 직을 걸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장낙인 위원께서는 ‘3기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으나 최근 이후에 납득할 수 없는 심의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로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상반된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방송통신심의위원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중** 저는 하여튼 저의

철학과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 또 상임위원님께서…… 완전한 조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제시를 하셨다면 또 그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반대되는 의견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고언을 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3기 위원회는 물론 6 대 3의 구조라고 하는 이런 원천적인 문제는 있지만 같이 가겠다고 하는 이 철학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희 위원** 우선 그 다른 입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일단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홍문종**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아까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지요.

○**전병헌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우리 박효종 방심위원장께서 서울대학교 출신의, 존경 받는 지식인 출신의 방심위원장으로서는 ‘품격 있는 방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아주 바람직스럽고 모범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낙인 상임위원께서 같은 음영을 쓴 문제와 같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두 차례씩이나 반복해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와 같은 심의의 기준이 대단히 차별적이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재범의 경우에는 좀 더 가중 처벌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님?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전병헌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장낙인 상임위원께서 박효종 위원장께 품격 있는 방심위원을 위해서라도 아까 장 상임위원께서 제기한 그 사안에 대해서 전체회의에 올려줄 것을 사실상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효종 심의위원장께서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시고 오늘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제가 밝히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적으로 만나서 우리 상임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 제가 전체회의에 올리겠다고 하는

뜻은 이미 밝혔고 또 지금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전체회의에 올려서 아홉 분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문종** 감사합니다.

이제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료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방송과 통신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인 만큼 위원님들의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하기관인 KOBACO,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해 보면,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및 이사 선임 등에 관한 사항, 협찬주명을 프로그램 제목에 사용하는 문제,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1년간의 경과에 대한 평가, 독립PD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문제, 포털사이트의 뉴스별 공정성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되었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종편의 반복적인 심의규정 위반 문제, 명예훼손 게시글의 제삼자 심의 신청에 관한 사항, 유해 사이트 및 SNS 유해 게시글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이 미비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실하게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즉각 시정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 김무성 위원, 장병완 위원, 강길부 위원, 최원식 위원, 조해진 위원, 민병주 위원, 우상호 위원, 박민식 위원, 권은희 위원, 송호창 위원, 류지영 위원, 전병헌 위원, 유승희 위원, 문병호 위원, 최민희 위원, 서상기 위원으로부터 서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관 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확인감사는 10월 6일 화요일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시청자미디어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아침부터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국정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20시2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21인)

강길부	권은희	김무성	류지영
문병호	민병주	박민식	배덕광
서상기	송호창	우상호	유승희
이개호	장병완	전병헌	정호준
조해진	최민희	최원식	홍문종
홍의락			

○청가 감사위원(1인)

유일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전문위원	김부년

○피감사기관 참석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		
부위원장	허원제		
상임위원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기획조정실장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전영만		
이용자정책국장	박노익		
방송기반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박효중		
부위원장	김성묵		
상임위원	장낙인		
사무총장	허의도		
기획조정실장	조기진		
방송심의1국장	이종대		
방송심의2국장	김인곤		
통신심의국장	조광휘		
권익보호국장	박우귀		
인터넷피해구제센터장	이은경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곽성문		
감사	강태진		
전무이사	홍지일		

광고진흥본부장	이민주
미디어사업본부장	신성용
영업본부장	민원식
기획조정실장	김종량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이석우
경영기획실장	최수영
시청자진흥본부장	박태욱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장	이상조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장	배승수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장	신현상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장	홍미애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장	이충환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장	류위훈
직무대행	

○출석 참고인

김보라미((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고문변호사)
 진모영(독립 PD)
 복진오(독립 PD)
 김영미(독립 PD)